

누구나 알기쉬운 품목분류 e-Guide Book

□ 용어해설 및 완전도해(圖解) □

- ◆ HS의 개념과 관세율표의 法源
- ◆ 기계류 및 전자기기 분류통칙
- ◆ 기계와 부분품의 개념 및 분류원칙
- ◆ 기계류에 대한 세부 분류원칙
- ◆ 전자기기에 대한 세부 분류원칙

관 세 평 가 분 류 원

머 리 말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HS 코드는 관세, 무역통계, 보험, 운송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국제 상품분류 코드로서, 관세분야에서는 HS 코드에 따라 적용세율, 적용법령, 감면·분납 및 간이징액환급액과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HS 코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 코드는 수출입 신고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질 즉, 기능이 같아도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같아도 기능이 다를 경우 또는 반가공품 및 반제품, 범용성 물품 및 전용물품, 완제품 및 부분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품목분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 하겠습니다.

특히,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로 새로운 첨단 기술제품이 급증하고 있고, 상품의 Life-Cycle 또한 단축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환경 및 마약관련 물품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등 품목분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품목분류 수요가 많은 전자제품 등 첨단 기술제품(HS 84, 85류)을 중심으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圖式化하여 용어해설은 물론 제외 품목 및 포함품목, 관련 號간의 연계도 및 차이점을 기술한 『누구나 알기 쉬운 품목분류 e-Guide Book』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e-Guide Book이 첨단 기술제품의 관세율표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품목분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정확한 수출입 통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12월

관세평가분류원장 류 시 율

목 차

제1절 HS의 概念

1. 국제통일품목분류표 변천과정	1
2. HS협약의 구성	2
가. HS의 개념	2
나. HS의 기본구조	3

제2절 관세율표의 法源

3. 관세율표의 法源	6
가. 관세의 4대 과세요건	6
나. 관세율표의 法源	8

제3절 제16부(기계 및 전자기기)의 개요

1. 부의 주	12
2. 분류체계	13

제4절 기계와 부분품의 개념 및 분류원칙

1. 기계와 부분품 및 부속품의 개념	15
2.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원칙	20
3. 기계의 분류원칙	27

제5절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의 세부 분류원칙

1. HS 84류의 주	33
2. HS 84류의 분류체계	36
3. HS 84류 물품의 세부 분류내역	42

제6절 전기기기 및 이들 부분품의 세부 분류원칙

1. HS 85류의 주	86
2. HS 85류의 분류체계	87
3. HS 85류 물품의 세부 분류내역	96

<일러두기>

- ◇ 본 지침서는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기계류 및 전자기기(HS 84~85류)에 대해 난해한 관세율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소송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상품학 관련 책자의 발간을 목적으로 무단 복제할 수 없음.
- ◇ 본 책자 내용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042-930-3634; 편저자 노명환)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기 바람.

제1절 HS개요

1. 국제통일품목분류표 변천과정

구분	시행 년도	원명(原名)	특징 및 용도
제네바 관세 품목표	1931	League of Nations Draft Customs Nomenclature	-21부, 86류, 991호로 구성 -관세목적으로 사용
BTN	1950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유럽을 중심으로 이용 -관세목적으로 사용
CCCN	1976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BTN을 CCCN으로 명칭변경 -관세목적으로 사용
HS	1988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21부, 97류, 1,244호, 5,225 소호, 444개 주(Note)로 구성 -관세, 무역, 운송, 통계 등 다목적·다용도 품목분류표

HS의 모태는 1931년의 제네바 관세 품목표이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상품의 출현과 기존의 유행하던 물품이 소멸됨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표도 일정 주기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HS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BTN의 경우 EC공동체의 본부가 브뤼셀에 있으며 EC공동체의 관세율표가 BTN을 기초로 작성된 점 등 때문에 BTN이 EC의 공통 관세율표로 인식되는 오해가 있어 국제적인 공용의 의미를 담고자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이름을 사용하여 1976년에 CCCN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CCCN 이전의 품목표는 주로 관세 목적으로 작성되어 운용되고 있었으며 통계나 상업용으로는 별도의 SITC(국제표준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라는 품목표를 이중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SITC와 CCCN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작업의 결과로서 1988년 1월1일자로 발효되어 현재 **국제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 목적외에 무역, 운송, 보험, 통계 등 다목적·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표가 **WCO¹⁾**에서 관장하고 있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품목표이다.

한편, WCO에서는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관세율표를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2년에 개정하였고, 2007년에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 예정에 있다.

1)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는 관세분야(품목분류, 통관절차, 관세평가 등)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임

2. HS 협약의 구성

가. HS의 개념

품목분류란 국제적인 기준인 HS협약에 의해 정해진 상품분류 코드(HS Code)를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에 근거하여 수출입 물품에 부여하는 업무를 말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간이징액환급액·감면대상·적용법령·원산지 등이 결정되는 관세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품목분류 업무가 과거에는 다변화라든가 수출입 제한 품목에 대한 업무 때문에 중요하였다면, 현재는 IT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적용 때문에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는 FTA협정의 일반화에 따른 원산지 판정(원산지 판정의 70%이상이 품목분류 기준) 업무에 있어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HS코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²⁾라 한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한편,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재질, 구조 및 작동원리, 기능 및 용도를 파악해야 하나 첨단 기술제품의 급속한 출현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품목분류 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2) 4단위는 1,244개, 6단위는 5,225개, 10단위로 2004년 현재 11,261개임.

나. HS의 기본구조

1)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GRI)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HS 코드 결정시 적용하여야 할 HS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一意性) 분류원칙을 위한 통칙1~4까지의 일반적인 분류원칙과 포장·용기와 소호에 대한 개별적인 분류원칙인 통칙5 및 6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순위	통칙명	내용	비고
1	통칙1	①號(Heading)의 용어에 의한 분류 ②部(Section)와 類(Chapter)의 註(Note)에 의한 분류	최우선 분류원칙
2	통칙2	a ①불완전·미완성 물품의 분류원칙 ②미조립·분해물품의 분류원칙 b 단일물품과 혼합물의 분류기준(단일물품의 확대범위)	종속적 분류원칙
3	통칙3	a 협의 표현 분류원칙 b 주요특성 분류원칙 c 최종호 분류원칙	
4	통칙4	유사물품 분류원칙	
별도	통칙5	포장·용기 분류원칙	
	통칙6	소호 분류원칙	보완적 분류원칙

2) 주(Note)³⁾

주는 부와 류 및 소호에 설정되어 있으며 통칙, 호의 용어와 함께 법적 구속력을 갖는 HS의 3대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HS협약주, 임의(任意)주⁴⁾, 국내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설정		①部(Section), ②類(Chapter), ③小號(Sub-heading)에 설정 ☞號(Heading)에는 주가 없음
종류	HS협약 주	○HS협약에 의해 설정된 주와 HS협약 내에서 각 나라가 설정할 수 있는 국내 주로 구분할 수 있음.(국내주 근거: HS협약 제3조 제3항)
	국내주	○우리나라 설정 국내주 : 총 6개 - 37류 주 3, 4, 5, - 90류 주 7, - 91류 주 5, 6
기능		①통칙, 호의 용어와 함께 법적 구속력 있음 ②지정 部, 類, 號, 小號의 분류범위 및 분류지침 예)-부의 범위 : 17부 주1에 이부에서는 9501,9503,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류의 범위 : 84류 주1에 84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나열 -호의 범위 : 85류 주3에 8509호(가정용 전기기기)에 분류되는 물품의 범위 정의 ③특정 용어 정의 예) 85류 주4에 8534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에 대한 용어정의 ④정합물품이 분류되는 호의 명시 등: 제외품목, 포함품목 명시

3) 號 및 小號의 용어

호(Heading)⁵⁾란 2단위인 類를 품목에 따라 세분한 것으로서 HS 코드 앞부분 4자리를 말하며, 호의 용어란 4단위의 코드 번호와 연결하여 설정된 구체적인 품목들로서 통칙 및 주(Note)와 함께 법적 구속력을 갖는 HS의 3대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소호(Sub-heading)란 4단위인 號를 품목에 따라 세분한 HS코드 앞부분 5,6자리를 말하며, 소호의 용어도 통칙6의 규정에 의거 호의 용어와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HS 3대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HS코드는 소호(6자리)까지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며, 7단위부터는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6단위 소호의 범위내에서 통계 등의 목적으로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한다.

3) 부·류·소호의 주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Legal Note라 하며,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HS 해설서(HS Explanatory Note)와의 구분을 위해서이다.

4) 71류 주2의 “가”항의 후단 부분 : 다만, 주1의 나의 규정은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주는 각국에서 선택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주로서 우리나라는 채택하였음.

5) 호에는 계약국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의(任意)호가 있으며, 현재 관세율표상 임의호는 2716.00호(전기에너지)로서 우리나라는 이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4) 部와 類 및 節의 표제

HS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3대 구성요소인 ①통칙, ②주(Note), ③호와 소호⁶⁾의 용어 외에 참조의 편의와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一意性 분류원칙을 위해 거시적으로는 수직적 분류, 미시적으로는 수평적 분류의 관점⁷⁾에서 비슷한 物品群을 그룹화한 대분류인 部(Section)와 중분류인 類(Chapter) 및 한정된 류에 단지 이해의 목적으로 설정된 節(Sub-chapter)이 있다.

구분	구성	법적 구속력	일반적 분류기준
부(Section)	1~21부	없음	○ 1~15부(12부 제외) - 성분별, 가공도별 분류구조 ○ 16~21부, 12부 - 용도별 주기능별 분류
류(Chapter)	1~97류(77류는 유보)	없음	○ 동일 물품은 동일류에 분류 ○ 류내에서는 생산, 가공단계별 분류 - 원재료→반제품→완제품
절(Sub-chapter)	28,29,39,63,69,71,72 류에 설정	없음	○ 류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한 형상 또는 유사한 가공단계 등의 물품을 그룹화

6) 수직적 분류관점에서 부는 대분류, 류는 중분류, 호는 소분류에 해당함.

7) 수평적 분류란 가공정도(원재료,반제품,부분품,완성품,고품,폐품등) 및 구매목적(생산재, 소비재)등에 따른 분류를 말하며, 수직적 분류란 거시적 관점에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형식으로 계층화하는 분류방식을 말한다.

제2절 관세율표의 法源

1. 關稅의 4대 課稅要件

관세법상 납세의무란 과세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관세법령에 의한 4대 과세요건인 ①과세물건, ②납세의무자, ③과세표준, ④관세율이 충족되는 때에 성립한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은 두가지 방법에 의한다. 첫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방법과 둘째는 과세관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의하여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확정시기는 납세신고에 의한 경우는 신고서 제출시점, 부과고지에 의한 경우는 고지서 도달시점이 된다.

확정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①납세신고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충당하는 경우, ②부과를 취소하는 경우, ③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관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되는 물품이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수입한 화주가 되고,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고, 세율은 관세율표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가. 과세물건

관세법상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수입물품은 유체물에 한하며, 무형물은 관세법상 과세물건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특허권, 상표권등 권리에 대한 지급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권, 상표권 등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⁸⁾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나. 과세표준

관세법상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과 수량(총량세)이며, 비디오 테이프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과세액의 산출을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예: 특허제품, 상표부착 물품등), 권리사용료 지급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종가세 적용물품

- 실제거래가격(CIF 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

☞과세환율은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일의 전주 외국환 배도율을 평균하여 산출.

② 종량세 적용물품

$$\text{수입물품의 수량} \times \text{관세율표상의 일정금액} = \text{관세액}$$

☞적용대상 품목 : HS 3706호의 영화용 필름, HS 8524.53호의 비디오 테이프(녹화된 것)가 있음.

관세평가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1방법~6 방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 납세의무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크게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확장 납세의무자로 대별할 수 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수납세의무자로 나눌 수 있으며, 확장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보충적 납세의무자(납세보증자,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납세의무 승계자로 나눌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	원칙적 납세의무자	-수입화주 -수입화주 불분명시 ①수입 위탁자, ②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 ③수입신고전 양도의 경우 양수인
		특별 납세의무자	-관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감면,분납물품 등에 대해 추정 사유 발생하여 추정시 당사자
	확장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수입신고인
			분할납부 업체의 합병, 분할 등의 경우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
		보충적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승계	-상속 또는 합병

라. 관세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순위	기 타
관세	국정관세	기본관세	관세법 별표(49) : 법	6	
		잠정관세	관세법 별표(49) : 법	5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51) : 재정부	1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법상 산업 피해구제제도
			상계관세(57) : 재정부		
			보복관세(63) : 대통령		
			긴급관세(65) : 재정부		
			특정국물품긴급관세(67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 급관세(68) : 재정부	3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적용)	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관세법상 산업피해구 제제도
			조정관세(69) : 대통령		
			할당관세(71) : 대통령		
			계절관세(72) : 재정부		
			편익관세(74) : 대통령	2 (3,4,5,6보다 낮은 경우 적용) 다만, WTO "나" 방콕 협정 "다"는 5,6보다 고 세율임에도 우선적용	
	협정관세	국제협력 관세(73) : 대통령	WTO 일반협정세율(가,나,다)		
			WTO 개도국협정세율		
			방콕(ESCAP)협정 세율(가, 나,다,라,마)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 (GSTP) 양허관세		
			특정국가와 쌍무협정에 의 한 양허관세		
		일반특혜 관세(76)	대통령	4	

2. 關稅率表의 法源

가. HS 협약의 法的 地位

HS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은 수출입 물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사용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서 전문과 부속서(호와 소호의 관련번호, HS해석에관한일반통칙, 부·류·소호 註)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 4월에 WCO 가입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아, 1968년 10월2일에 기본 3개 협약(WCO 설립조약, 품목분류조약 및 평가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關稅率表의 法的 地位

HS협약 제1조 “나”항에 “관세품목분류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라고 정의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법 별표로 HS협약의 통칙(1~5) 및 주의 내용과 함께 일부 호 또는 소호 단위로 관세품목분류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HS협약상 통칙(1~5)과 주 및 일부 호와 소호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협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관세법 별표 형태로 수용되어 국내법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겠다.

또한, 관세법 별표에 계기되지 않은 HS협약상 통칙6과 일부 소호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법 별표에 의해 국내법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관세법 별표상의 통칙6에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HS협약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HS협약 사항 전반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고 하겠다.

☞ HS협약 및 관세법 별표상 통칙6의 내용

- ① HS 협약상 :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물품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면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 ② 관세법 별표상 :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다. HSK의 法的 地位

HS협약 제1조 “다”항에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⁹⁾”란 수입품목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라고 정의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관세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10단위¹⁰⁾로 세분하여 재정부장관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9)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 품목분류표는 HSK(HS of Korea)라 한다.

재경부장관은 HS협약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호(6단위)의 범위내에서 10단위로 세분하여야 하며, 6단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10단위에 계기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며, HSK는 관세율표, 통합공고, 무역통계작성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라. HS 해석 지침 자료의 법적 지위

HS협약 제7조에 통일체계위원회는 “통일체계의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 해설서, 분류의견서 또는 기타의 조언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HS협약과 관련된 지침 자료로서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HS 해설서

HS해설서는 WCO의 HS 품목분류와 관련한 공식적인 해설서로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류,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WCO의 통일체계위원회에서 품목분류 결정시에는 해설서 개정 또는 분류의견서 형태로 공표가 되며 각국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HS해설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 고시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2) HS 분류의견서

HS 분류의견서도 HS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의 성격을 갖는 자료로서 해설서가 부,류,호 등에 대한 해설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WCO의 개별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 의견서로서 품목분류 코드와 분류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HS해설서와 같이 HS 분류의견서도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 고시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10) HS협약은 국문보다 영문이 우선하나, HSK는 국문이 영문보다 우선한다. 다만, HSK중에서도 협정에 의해 양허된 품목은 영문이 우선한다 하겠다.

3) 기타 자료

기타 WCO에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발간 또는 공표한 자료로서 HS인덱스와 HS data base on CD ROM이 있으나, 색인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료로서 단지 참조용에 불과하며 해설서나 분류의견서와 같이 관세청장 고시 등으로 수용하여 운용되는 자료가 아니다.

- HS 인덱스 : 해설서 등에 계기된 물품의 품목명과 HS 코드가 계기된 색인서
- HS data base on CD ROM : HS인덱스와 유사한 색인자료로서 CD-ROM에 수록된 자료임.

3절 제16부의 개요

Ⅰ. 部の註

1. 내용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가.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
- 나.기계용 기타 공업용의 가죽제품, 컴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 다.보빈, 스푸울, 코프, 코운, 코어, 리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例 : 제39류, 제40류, 제44류, 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 라.자카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카드(例 : 제39류, 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 마.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 또는 벨팅(제5910호)과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
- 바.제7102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및 반귀석 또는 제7116호의 제품으로 전부가 이들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것. 단,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제8522호),
- 사.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 아.드릴 파이프(제7304호),
- 자.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차.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 카.제17부의 물품,
- 타.제90류의 물품,
- 파.제91류의 시계와 기타의 물품,
- 하.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제9603호) 또는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例 : 제40류, 제42류, 제43류, 제45류, 제59류, 제6804호 또는 제6909호),
- 거.제95류의 물품 또는
- 너.스풀에 감기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은 제9612호에 분류한다.)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제8544호, 제8545호,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 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기타의 각종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 전동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 기계류, 설비, 장비, 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

2. 구성내역

16부 주(Note)의 구성

주 1	주 2	주 3	주 4	주 5
제외물품	부분품 분류규정	다기능,복합기계	Functional Unit	기계의 범위
①범용성 부분품 ②플라스틱 또는 고무제의 전동용 벨트 ③회환성 공구 등	<분류순서> ①특계호 분류 ②전용기기 부분품의 분류호에 분류 ③다용도 분류 -비전기식: 8485호 -전기식: 8548호	<분류순서> ①주기능 분류 ②최종호 분류 ③8479호 분류	-특정호에 해당되는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 -구성기기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	84류 또는 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 기계류, 설비, 장비, 장치 또는 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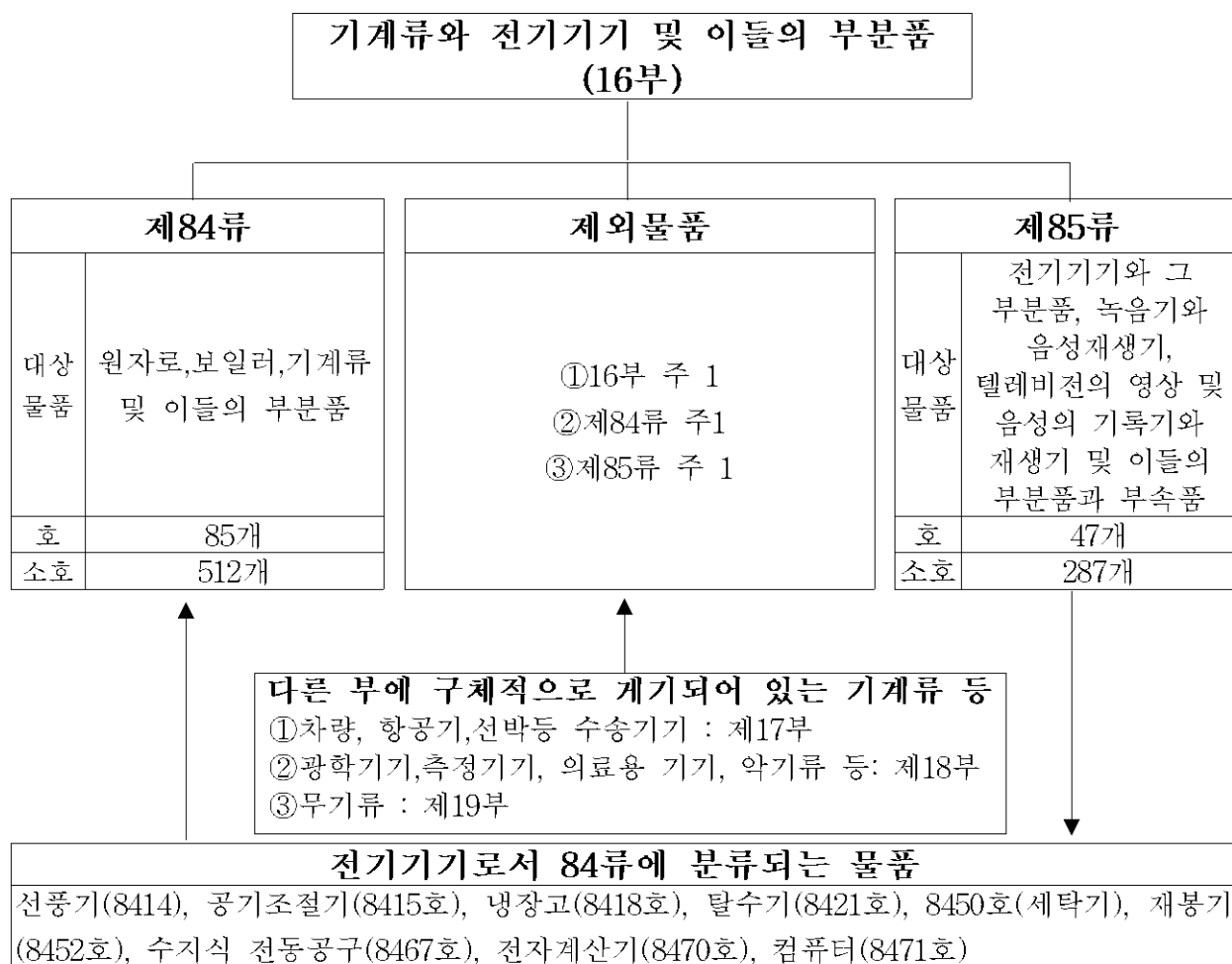
II. 分類體系

1. 분류대상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部로서 제84류와 제85류의 2개의 類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37개의 4단위 號(8508호 2002년 HS 개정시 삭제됨)와 799개의 6단위 소호로 구성되어 5,225개의 소호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類	류의 표제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 분류구조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하며,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제이지만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있다.

제4절 기계와 부분품의 개념 및 일반적 분류원칙

1. 기계와 부분품 및 부속품의 개념

1. 기계의 개념

가. 사전상의 기계¹¹⁾의 정의

- 1) 국어사전 :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장치
- 2) Webster dictionary¹²⁾ : ①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힘, 움직임, 에너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부품의 조립품 또는 ②동력, 힘, 움직임을 전달하고 변환하도록 설계된 계기 또는 ③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작동되는 장치(예: 전자계산기, 카드분류기 등)
- 3) 백과사전¹³⁾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일정한 상대운동에 의해 유용한 일을 하는 동적(動的) 장치로서 넓은 의미로는 에너지를 변환시키거나 전달시키는 장치의 총칭이다. 실험이나 측정 등의 일정한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은 기기(器機)로 표시하여 구별하며 특히 간단한 구조의 것은 기구(器具)¹⁴⁾라고 한다. 기계는 그 종류도 많고 복잡하지만, 크게 ①원동기, ②작업기, ③전달장치 3가지로 구분된다.

구분	개념	종류
원동기	수력, 풍력, 증기, 전기,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전동기, 내연기관 등
작업기	원동기로부터 공급한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기계	공작기계, 방직기계, 직물기계, 인쇄기계, 압축기계, 압연기계 외에 기관차나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동기계들이 포함
전달장치	동력과 작업기의 중간에서 동력 · 운동 등을 전달하는 기계	기어전도장치, 마찰전도장치, 벨트, 체인 등에 의한 전도장치

11) 독일의 F.루르는 『운동학상 기계』의 정의를, “기계란 저항 있는 물체의 조합으로 한정된 상대운동을 하고, 공급된 에너지를 유효한 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톱 · 드라이버 · 끌 · 대패 등은 상대운동을 하지 않으므로 기계가 아니다.

12) (1)an assemblage of parts that transmit forces, motion, and energy one to another in a predetermined manner (2) : an instrument (as a lever) designed to transmit or modify the application of power, force, or motion f : a mechanically, electrically, or electronically operated device for performing a task <a calculating machine> <a card-sorting machine> g : a coin-operated device <a cigarette machine>

13)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4) 기기라고도 하며, 인간이 가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 일을 행하지 않는 점이 기계와 다르지만 꽤 복잡한 운동기구를 가진 것이 있어 현재로서는 기계와 혼용된다. 예) 사진기기, 측정기기, 의료기기, 전화기 등(실용 도해 기계용어사전; 일진사)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기계의 발달은 특히 두드러져 자동공작기계인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이나, 전자계산기의 원리를 응용한 수치제어 공작기계인 메카트로닉스¹⁵⁾등도 오늘날 실용화하고 있다. 또 원자력 관계의 기계도 많이 제작되어 획일적인 개념의 기계에 대한 정의가 어렵게 되었다.

4) 기계용어사전¹⁶⁾

저항력이 있는 물체의 조합으로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각부는 일정한 상대운동을 하여 유효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 종류로는 ①작업기계, ②원동기, ③전달장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①동력을 받는 부분, ②동력의 변환 또는 전달 부분, ③유효한 일을 하는 부분, ④전체를 보지(保持)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나. 관세율표상 기계의 범위

1) 관세율표 16부 주 5

제84류, 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machine), 기계류(machinery)¹⁷⁾, 설비(plant)¹⁸⁾, 장비(equipment)¹⁹⁾, 장치(apparatus)²⁰⁾ 또는 기기(appliance)²¹⁾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단순한 개별기기뿐만 아니라 개별기기 등의 집합체인 공장설비 등에 대해서도 복합기기 및 기능단위 기기의 규정에 의해 단일의 기계로 확대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관세율표상 기계류의 종류

- ① 기능 및 산업별 일반적 기계류 : 84류
- ② 전기기기 : 85류
- ③ 차량, 항공기, 선박등 수송기기 : 제17부
- ④ 광학기기, 측정기기, 의료용 기기, 약기류 등: 제18부
- ⑤ 무기류 : 제19부

15)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 기구(機構;mechanism)와 전자공학(electronics)의 합성어로서 종전의 기계는 기계와 기계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서보단위(servo unit)로만 되어 있던 것이, 최근에는 기계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구인 전자기술이 밀착되어 있다. 이 두 기술의 결합으로 최신회의 기계는 그 구실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다루는 새로운 용어로서 메카트로닉스라는 용어가 생겼다. 앞으로의 기계기술은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전자기술과, 그 정보를 받아 정확하게 서보모터를 구동시켜 주는 서보제어기술의 2가지 기능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기계 본연의 기술을 하나의 기계기술 시스템으로, 그리고 기계는 기계와 전자·제어의 삼위일체로 된 종합체로 다루어야 한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16) 실용 도해 기계용어사전(일진사; 기계용어편찬회; 1993.1.20)

17) machinery: 기계 또는 기계장치의 총칭

18) ① 장치, 설비, 시설. ② 공장, ③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건물이나 장치·기물 따위를 갖추는 일, 또는 그런 물건

19) 설비, 장치, 방비

20) ① 기기 장치, ②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설치함, 또는 그 설치한 물건

21) ① '기계'와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② (가정용) 기구; 장치, 설비; 전기 제품[기구]

3) 일반적인 구분

가)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

- ① 단일기기 : 하나의 개별 단위기기로 구성된 기기
- ② 복합기기(Composite Machine) : 여러 개의 개별기기가 특정목적에 의해 일체구조로 구성된 기기
- ③ 기능 단위기기(Functional Unit) : 여러 개의 복합기기 또는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특정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기계

나) 기능 및 용도에 따른 분류

- ① 다기능 기계 : 금속가공 공작기계와 같이 공구의 교환을 통해 여러 가지 작업(드릴링, 볼링, 밀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
- ② 다용도 기계 :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예: 목재, 비금속, 광물가공 등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쇄기)

다) 주요 기능 수행여부에 따른 분류

- ① 주기기 : 필수적인 또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 ②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²²⁾ : 당해 기계의 기능 또는 작동,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며, 보완적인 기능 작동을 하는 호환성 및 대체성이 있는 물품

2. 부분품과 부속품의 개념

가. 부분품의 정의 및 종류

1) 부분품의 정의²³⁾

(가) 사전상의 정의

- ①국어사전 : 기계 따위의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물품
- ②Webster dictionary²⁴⁾ : ①전체를 함께 구성하는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부분 또는 본질적인 부분이나 필수적인 요소, ②함께 구성되는 또는 분리할 수 있는 몇 개의 또는 많은 동일한 유니트 중의 하나

22) 관세공무원교육원 '89공통교재 : HS 관세율표의 248페이지

23) 관세율표상 부분품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음.

24) ①one of the often indefinite or unequal subdivisions into which something is or is regarded as divided and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whole: an essential portion or integral element. ②one of several or many equal units of which something is composed or into which it is divisible

③ 기계요소의 개념²⁵⁾

기계는 복잡해 보이나 세분해 보면 비교적 간단한 기계요소²⁶⁾인 부품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①연결용 부품(나사 · 편 · 리벳 등) ②동력전달용 부품(회전축 · 마찰차(friction wheel) · 기어 · 벨트 · 로프 · 체인 등과 같이 동력을 전하는 것). ③지지부품(미끄럼베어링 · 볼베어링 · 롤러베어링 등과 같이 축을 지탱하는 부품) ④운동 전달부품(레버 · 크랭크기구 등에 사용되는 링크(link) 또는 복잡한 운동을 전하는 캠 등의 부품)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브레이크 · 플라이휠 · 스프링 · 파이프 · 파이프 이음 · 밸브 등이 있다.

(나) 관세청 예규상의 정의²⁷⁾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

2) 부분품의 종류

부분품은 크게 기계부품과 전자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성질에 따라 범용성 부분품과 전용부품, 관세율표상 특계 여부에 따라 특계 부분품과 비 특계 부분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기계부품과 전자부품

㉠기계부품: ①연결용 부품, ②동력전달용 부품, ③지지부품, ④운동전달부품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브레이크 · 플라이휠 · 스프링 · 파이프 · 파이프 이음 · 밸브 등이 있다.

㉡전자부품²⁸⁾

구분	개념	종류
①능동부품	그 자신이 電子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서 필요한 신호의 발생과 입력신호를 포함한 신호의 정류, 검파, 증폭, 제어, 에너지 변환, 각종 처리 등 능동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총칭	메모리소자, 집적회로, 개별소자 ²⁹⁾ 및 화합물 반도체 등
②수동부품	능동부품처럼 자신이 직접적인 전자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나 능동부품의 작동을 보완·연결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출력이 입력신호에 따라 정해지는 부품을 총칭	저항기, 축전기, 트랜스포머, 인덕터, 수정진동자 등
③기구부품	磁氣的·기계적 입력을 받아서 점점부분에 회로의 스위치 작동과 접속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총칭	스위치, 커넥터, 릴레이, 인쇄회로기판 등
④기능부품	상기한 이외의 부품으로서 독자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가진 부품을 총칭	자기헤드, 소형모터, 스피커, 전지, 축전지 등

1) 개별소자(Discrete Device):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처럼 전기적,기능적 구성요소로 쓰이는 단일소자

25) 두산세계대백과사전상의 기계요소 설명 내용

26) 기계요소: 기계를 구성하는 부분을 분해할 때 최소 단위의 부품(기계용어사전;일진사)

27) 관6-1-19...140; 수입기계류부분품및부속품검사감정지침

28) 통신개발연구원(정부통신 핵심부품산업 지원·육성방안 연구논문; 이영섭, 강홍열); 영남대학교 금속 및 재료공학부 전공입문 Chapter6 현장강의 및 소개중에서 발췌

29) 개별소자(Discrete Device):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처럼 전기적,기능적 구성요소로 쓰이는 단일소자

(나) 범용성부품과 전용부품

①범용성 부품품: 모든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품으로서 같은 규격에 한해서는 호환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요소부품 (예:베어링,기어,나사,볼트,너트,스프링 등)과 모든 기계 또는 기종에 공통성이 있으나 그 성질이나 특성이 기계별로 약간씩 다른 일반적인 범용성 부품 (예:유압기기, 링, 실, 펌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전용부품: 각 기계별로 특수한 기능과 성질을 갖기 때문에 타 기계와는 전혀 호환성이 없는 부품을 말한다.

(다) 특계(特掲)부품과 비특계부품

관세율표상 호(Heading)에서 부품 명칭을 1개의 상품명 또는 상품군명으로 계기하고 있는 경우 그 부품을 특계부품이라 하며, 특계되어 있지 않은 부품을 비특계 부품이라 한다.

나. 부속품의 정의

1) 관세율표해설서상 부속품의 정의

(가)HS 8448호 관세율표해설서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라 함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면, 급속히 소모되어 버리거나 혹은 상이한 작업을 위하여 상이한 종류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HS 8466호 관세율표해설서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공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정밀도를 높이는 장치·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와 같은 가공기계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보조장치.

(다) HS 8473호 관세율표해설서

이 호의 부속품이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관세청 예규상의 정의³⁰⁾

(가) 부속품 :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나) STANDARD ACCESSORY :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을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

II.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원칙

1. 부분품 분류원칙 개요

가. 일반적 분류원칙

부분품에 대한 분류를 위해서는 먼저 당해 물품이 전술한 부분품 개념에 적합한 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부분품에 해당하면 부분품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면 될 것이다.

즉,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하면 될 것이다.

첫째, 각부·류의 주의 규정과 호의 용어에 의해 분류한다.

둘째, 주와 호의 규정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규정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나. 부분품 분류시 유의사항

1) 당해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당해 기기에 조립되어 제시되는 경우 또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의 규정에 의한 미조립 분해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부분품이 아닌 당해 기기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여분으로 제시되거나 조립 후 남은 부분품은 당해기기와는 별도로 부분품 분류규정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30) 관6-1-19...140; 수입기계류부분품및부속품검사감정지침

2) 부분품이 개별적으로 별도 제시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 부분품이 사용되는 기기와는 별도로 부분품 분류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3) 각부 또는 류의 주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여부 확인

예: 16부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 분류를 위해서는 16부 주 1 및 제84류와 제 85류의 주1의 규정에 의해 각 부 및 각 류에서의 제외품목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2. 부분품 분류원칙

가. 분류개요

16부의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 분류를 위해서는 1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다음 순서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특정 호에 계기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특정기기에 전용되기 때문에 16부 주 2 "a"가 아닌 16부 주 2 "b"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6부 주 2 "a"를 적용하여 특정기기에 전용되지만 특정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³¹⁾

- ① 16부 주1 및 제84류나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여부 확인
-다만, 제8484호, 제8544호 내지 8547호 물품의 부분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 ② 특계 호 분류원칙(16부 주 2 "a")
- ③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분류원칙(16부 주 2 "b")
- ④ 기타 부분품 분류원칙(16부 주 2 "c")

나. 세부 분류규정

- 1) 16부 주1 및 제84류나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여부

가) 관련규정 : ①16부 주1, ②84류 주1, ③85류 주1

31) 예: 모타는 HS 8501호에 특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모터가 HS 8510호의 면도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16부 주 2 "a"의 규정에 의거 HS 8501호에 분류되는 것이며, 면도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16부 주 2 "b"를 적용하여 면도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16부 제외품목

구분	품목	관련규정
16부 제외품목	①벨트나 벨팅,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 : 플라스틱제(39류), 고무제(40류) ②가죽 및 모피제품: 제42류, 제43류 ③支持具(보빈,스풀,코프,코운,코어,릴 등):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 ④기계용의 천공카드: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 ⑤방직용 섬유제 물품 : 제59류 ⑥귀석과 반귀석제의 것: 제71류 ⑦범용성 부분품: 플라스틱제(39류),비금속제의 것(제15부) ⑧드릴 파이프: 7304호 ⑨금속제 엔드레스 벨트: 선이나 대의 것(15부) ⑩제82류 또는 제83류 물품 ⑪제17부 물품, 제90류 물품, 제91류 물품 ⑫호환성 공구(제8207호,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 기계용 부러쉬(9603) ⑬제95류 물품, 타자기용 리본(제9612호)	16부 주1
제84류 제외품목	①제68류의 연마제품 ②제69류의 도자제품 ③제70류의 유리제품 ④비금속제의 비전기식 스토브,레인지,조리기,화로 등 가정용품과 중앙난방용 방열기, 공기가열기와 온풍 배분기(제15부) ⑤가정용 전기기기(제8509호), 디지털카메라(제8525호) ⑥모터를 갖추지 않은 수동식의 기계식 바닥 청소기(제9603호)	84류 주1
제85류 제외품목	①전기모포(제6301호),베드패드,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등 ②유리제의 외피(전구용 등): 제7011호 ③제94류의 전기 가열식 가구	85류 주1

다) 다음 물품의 부분품은 재료 또는 재질에 의해 분류

8484호(가스켓과 조인트), 8544(절연전선), 8545(탄소전극 및 탄소제품), 8546(애자), 8547(전기기기의 절연물품)의 부분품은 재료 또는 재질에 의해 분류한다.

2) 특계호 분류원칙

제16부 주1 및 제84류 또는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이 부의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한 호(제8485호 및 제8548호는 제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비록 당해 부분품이 특정 기계에 전용되도록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각각 당해 호에 최우선하여 분류한다.

예)①냉장고에 전용되는 기계 압축기를 냉장고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8호에 분류하지 않고 기계 압축기가 특계되어 있는 제8414호에 분류

②사설 교환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변압기를 사설 교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8517호에 분류하지 않고 변압기가 특계되어 있는 8504호에 분류

<특정호에 계기되어있는 부분품 예시>

물 품	HS	물 품	HS
①펌프와 기체압축기	제8413호 제8414호	②여과용 기기	제8421호
③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류	제8425호, 제8426호 , 제8428호	④탭 · 코크 · 밸브	제8481호
⑤볼베어링 · 로울러베어링 및 오차 1%이하 또는 0.05mm 이하의 연마장구	제8482호	⑥전동축 · 크랭크 · 베어링하우징 · 플레인샤프트베어링 · 기어 와 기어링 · 플라이휠 · 폴리와 폴리블록 ·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	제8483호
⑦가스켓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	제8484호	⑧전동기	제8501호
⑨변압기와 기타의 기기	제8504호	⑩전열용 저항체	제8516호
⑪축전기	제8532호	⑫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제8535호 및 제8536
⑬보오드 · 패널 · 콘솔 · 데스크 · 캐비넷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	제8537호	⑭램프류	제8539호
⑮열전자관 등	제8540호	⑯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등	제8541호
⑰전기용의 탄소제품	제8545호	⑱각종 재료의 애자	제8546호
⑲전기기계등 용의 절연물품	제8547호	⑳기타: 제8518호 스피커 등, 제8534호 인쇄회로기 판, 제8542호의 IC 등이 있음	

3)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분류원칙

제16부 주1 및 제84류 또는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포함되지 않는 이 부의 특정기계(제8479호 및 제8543호의 것 포함)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예)①살충제 분무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두부(頭部; Spraying Head)는 분무기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호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분무기와 그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HS 8424호에 분류

②유선 전화기용의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전화기 형상으로 몰딩된 Key Pad(플라스틱제의 Key 3개가 부착되어 있고, 하단부에 Dial Key가 부착될 수 있도록 12개의 Hole이 뚫어져 있으며, 동 Hole의 뒷면에 탄소 장착)는 제84류, 제85류의 특정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선전화기용 전용부품이므로 유선전화기와 그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HS 8517호에 분류

그리고 여러 호의 기계에 대한 부분품을 일괄하여 분류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 여러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별개의 독립된 HS >

물 품	HS	물 품	HS
①엔진 부분품(8407, 8408호)	제8409호	②8425~8430호 기계류 부분품	제8431호
③섬유기계(8444~8447호) 부분품	제8448호	④공작기계(8456~8465호) 부분품	제8466호
⑤사무용 기계(8469~8472호) 부분품	제8473호	⑥8501~8502호 기계류 부분품	제8503호
⑦음향기기(8519~8521호) 부분품	제8522호	⑧무선통신기기(8525~8528호), 텔레비전	제8529호
⑨8535~8537호 기기 부분품	제8538호	부분품	

예) 크레인, 불도우저, 굴삭기 등의 무한 궤도식 바퀴용 트랙슈는 HS 8425호 내지 HS 8430호에 분류되는 건설 중장비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 8425호 내지 HS 8430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431호에 분류

다만, 8517호와 8525호 내지 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8517호에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분품 분류원칙

전술한 1)~3)의 규정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이 부의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비전기식의 것은 제8485호에 전기식의 것은 제8548호에 분류한다.

< 제8485호 및 제8548호 분류사례 >

제8485호 분류사례	제8548호 분류사례
①Cable drag chains(Articulated Bands)  ②ships' or boats' propellers  ③drain plugs for engine pumps  ④oil sealing rings  ⑤greasing nipple 	①초전형 적외선센서(Pyroelectric Infrared Sensor) 지름 9.2mm, 높이 4.5mm의 금속제 캔 내부에 적외선 투과를 위한 Filter(유리제의 렌즈), Register, FET, 초전형 Element를 세라믹 판 위에 실장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인체감지(천정취부형), 화재 감지, GAS감지(NDIR), 비접촉 온도계등에 적용이 가능하여 경보기, 자동문, 조명장치, 에어컨, 전자렌지 등의 가전제품, 무인감시카메라, 불꽃 탐지기 등 다양한 전기기기에 사용됨. ②GPS Time Receiver GPS위성에 탑재된 세슘 원자시계의 위성신호를 분석하여 정밀시각을 수신하는 카드형태의 제품으로서 이동통신기지국 장치, 네트워크장비, 기상추적을 위한 번개의 타이밍 측정, 컴퓨터 OS시스템에 정밀시각 공급 등 정밀시각을 요하는 장비에 사용

다. 16부 주1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 분류원칙

1) 범용성 부분품의 범위

① 아래 물품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³²⁾ 제품

HS	분류물품
제7307호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제7312호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
제7315호	체인
제7317호	못·압정·제도용 핀·과형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을 제외)
제7318호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후크·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

② 비금속제의 스프링 및 스프링 판(91류의 시계스프링 제외)

③ 83류의 아래 물품

HS	분류물품
제8301호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열쇠
제8302호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제8306호	비금속제 틀과 거울
제8308호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후크·아이·아이렛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판, 리벳 또는 2고(股)리벳, 구슬과 스팽글
제8310호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2) 범용성 부분품의 분류원칙

가) 분류요건

① 범용성 부분품이 단독 제시되거나

② 미조립, 분해물품을 조립하고 난 후 여분 물품이 있을 때는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범용성 부분품이 제기 된 호에 분류

32) 이와 유사한 비금속이란 15부중에 제74류 내지 제81류에 분류되는 물품중 7307,7312,7315,7317,7318호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말함

나) 관세율표 전반에 적용

- ① 관세율표 제16부~20부까지 각부 또는 각류의 주에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제39류 물품에 대해서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② 제73류~제82류의 부분품에는 범용성 부분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HS 7315호(체인)의 부분품에는 범용성 부분품을 포함한다.

3. 부속품 분류원칙

가. 개요

관세율표 및 HS관세율표해설서³³⁾에는 부속품의 분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면 될 것이다.

나. 분류기준

① 관세율표상 특정호에 계기된 물품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특정호 또는 주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호 또는 주에 규정된 호에 우선 분류한다.

예) 무선 전화기(HS 8525호)용 음향증폭세트인 핸드 프리는 무선 전화기의 효용을 높여주는 부속품으로서 HS 8518호에 계기되어 있으므로 HS 8518호에 우선하여 분류

② 『부속품』으로 계기되어 있는 호가 있는 경우

HS	품명
8448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도비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 교환기) 및 이 호 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스핀들·스핀들플라이어·칩포·코웁·방사니폴·셔틀·종광·종광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8466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가공물홀더·틀홀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틀홀더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
8522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33) 부속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HS 관세율표해설서 HS 8448호, HS 8466호, HS 8473호에 부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세율표상 특정호에 계기되어 있는 물품은 아니나, 상기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기계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서 특정기계의 부속품이 분류되는 호가 특별히 계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기된 호에 분류한다.

예) 타자기(HS 8469호)용 연속 용지 공급장치의 경우 타자기를 구성하는 필수 부품은 아니지만 사용의 편의성 등을 제공하는 타자기의 부속품으로서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특별히 계기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고 HS 8469호의 부속품이 HS 8473호에 계기되어 있으므로 HS 8473호에 분류한다.

③ 기타 부속품

특정기계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서 관세율표상 특정호에 계기되어 있는 물품도 아니고 특정기계의 부속품이 분류되는 호가 특별히 계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예: 목걸이용 휴대전화기 스트랩은 재질에 따라 분류)

Ⅲ. 기계의 분류원칙

1. 분류개요

관세율표 16부 주5에서 기계란 『기계(machine), 기계류(machinery), 설비(plant), 장비(equipment), 기기(appliance)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장 설비(plant) 까지도 기계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적용을 가능토록 해주는 규정이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에 대한 분류규정이다.(16부 주3 및 4)

기계는 구성형태에 따라 단일기기와 복합기기 및 기능 단위기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HS 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부와 각 류의 주에서의 당해 물품 제외여부를 확인하고,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면 되는 것이다.

2. 세부 분류규정

가. 다기능 기계 및 다용도 기계 분류

1) 개념

기능³⁴⁾과 용도³⁵⁾의 개념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분쇄”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고, 분쇄의 기능을 가지고 농업부분, 건설부분, 산업부분에 사용할 때 이를 용도라 한다. 따라서, 분쇄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쇄기를 곡물 분쇄, 암석분쇄, 금속분쇄 등에 사용할 때 이를 다용도 기계라 하고, 하나의 기계가 밀링, 보링, 탭핑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때 이를 다기능 기계라 한다.

2) 다기능 기계 분류기준

가) 관련규정 : 16부 주 3

나) 분류기준

① 주기능에 의해 분류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다기능 기계³⁶⁾, 즉, 16부의 여러 개의 호에 계기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의해 분류한다.

② 통칙3 (c) 적용

주된 기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3 (c)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3) 다용도 기계에 대한 분류기준

가) 관련규정 : 84류 주7, 84류 주2, 16부 주 3

나) 분류기준

(1) 주용도가 명확한 경우: 주용도에 따라 주용도가 계기된 호에 분류

(2) 주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34) 기능 機能 (function): ①어떤 활동분야에서 그 구성부분이 하는 구실 또는 작용(두산세계대백과사전), ② 사물의 작용이나 활용(국어사전)

35) 쓰이는 곳이나 쓰는 법(국어사전)

36) 다기능 기계의 예: 여러 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보링,탭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 공구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

① 84류 주 2 또는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분류

- 다기능 또는 복합기계는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요 기능 우선 확정
- 16부 주3에 의거 확정된 물품 또는 단일 물품이 HS 8401~8424호에도 분류되고 HS 8425~8480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HS 8401~8424호에 분류
- HS 8456호의 물품이, HS 8457~8461호, HS 8464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 8456호에 분류

② 그래도, 주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HS 8479호에 분류

나. 복합기계 및 기능 단위기계 분류

1)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가) 관련규정 : 16부 주 3

나) 개념

복합기계란 ①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기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②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③그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기계를 말한다.

복합기계 분류요건인 일체구조란 하나의 기계로 결합(Incorporated)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착(Mounted)되어 있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장착 또는 장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구조로 보지 않는다. 마루,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칸막이, 천정 등은 당해 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복합기계 예시

- ① 종이를 접기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 제8443호
- ② 네임 또는 간단한 도안을 인쇄하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판지제의 상자 제조기계: 제8441호
- ③ 양하용 또는 하역용 기계와 결합된 공업용 로(爐): 제8417호 또는 제8514호
- ④ 보조적인 포장기계와 결합된 연초 제조기 : 제8478호

라) 분류기준 : 복합기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의 기계로 보아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2) 기능단위 기계(Functional unit: 16부 주4)

가) 관련규정 : 16부 주 4

나) 개념 및 분류기준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 포함)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특정 호에 해당되는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각종 구성기기는 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 동력전달장치, 전력 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되거나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다만,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나,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를 제외한 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 압축식 냉동기의 경우 기능이 상이한 ①압축기(8414), ②응축기(8419), ③증발기(8419)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냉동이라는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기들이므로 냉동기가 분류되는 8418호에 분류한다. 이외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기들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

다) 기능단위기계 예시

품명	구성기기	HS
하이드로울릭 시스템 (Hydraulic system)	①유압동력장치(유압펌프, 전동기, 콘트롤 밸브 및 오일탱크로 구성), ②유압실린더, ③실린더를 유압동력장치에 연결을 위한 파이프나 호스	8412
관개시스템 (Irrigation systems)	①Control station(필터, 주입기, 계량밸브등으로 구성), ②지하배수관, ③지관, ④지상배관시설	8424
냉장설비 (Refrigerating equipment)	일체구조로 결합되어있지 않으나 냉매를 순환시키는 관으로 상호결합된 구성요소로 구성	8418
착유기	①진공펌프, ②교반기, ③유두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오스나 파이프로 상호 결합	8434
양조장 기계	①발아기, ②맥아파쇄기, ③반죽통, ④여과통으로 구성: 병주입기나 라벨인쇄기 등 보조기는 제외	8438
편지 분류시스템	①Coding desk, ②예비분류채널 시스템, ③중간분류기, ④최종분류기	8472
아스팔트 프랜트	①Feed hopper, ②컨베이어, ③건조기, ④진동체, ⑤혼합기, ⑥저장통, ⑦제어장치	8474
필라멘트 전구 조립기계	①컨베이어에 의해 상호연결, ②유리의 열처리용 기구, ③펌프, ④램프테스트 장치	8475
용접기기	①변압기, ②발전기, ③정류기기, ④용접헤드	8515
무선 송신장치	①무선송신기, ②전원장치, ③증폭기	8525
레이다 장치	①레이다장치, ②전원장치, ③증폭기	8526
위성 텔레비전 시스템	①수신기, ②안테나 반사기, ③반사기용 제어 회전기, ④피드혼, ⑤편파기, ⑥LNB, ⑦원격조절기	8528
도난 경보기	①적외선 램프, ②벨을 작동시키는 광전지	8531

다. 부속기기에 대한 분류

- 1) 관련규정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a), 3(b)와 16부 주3 및 주4
- 2) 부속기기 유형 :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 콘트롤 패널, 자동조절기 등

3) 분류기준

① 주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³⁷⁾된 경우에는 주기와 함께 분류하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에는 주기와 분리하여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② 주기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주기에 종속여부 불문하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³⁸⁾한다.

라. 미완성, 미조립 기계에 대한 분류

1) 관련규정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a)

2) 미완성 기계의 유형

미완성 기계란 부분품의 조립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기계를 말한다. 즉, 완성된 기계를 구성하는 물품 중 단지 플라이 휠(fly wheel), 베드 플레이트(bed plate), 툴 홀더(tool holders) 등이 없는 기계나 수직식 전동공구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도 완성기계로 분류한다.

3) 미조립 기계의 유형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거나(예: 기계류, 조립식 건축물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예: 램프, 조명기구 등)등을 포장, 취급 또는 수송 등의 편의에 의해 미조립 또는 분해시킨 것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미완성기계의 미조립 물품도 동일하게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다만,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미조립 구성부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37) 부속기기 자체도 복합기계 또는 Functional unit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38) 예: 압력계는 9026호, 온도계는 9025호, 콘트롤 패널은 8537호, 자동조절기는 9032호에 분류

마. 이동식 기계에 대한 분류

86류 차량 및 89류 선박에 장치된 기기	87류 트랙터 또는 차량위에 장치된 기기
◇열차에 연결하는 데 적합한 화차 또는 트럭위에 장치된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는 8604호 -바퀴달린 플랫폼에 단순 장착되고, 철도 또는 전차의 하부구조에 장착되지않은 것은 84류에 분류 ◇89류 浮구물에 장치된 권양기, 하역기는 89류에 분류	◇트랙터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트랙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트랙터는 8701, 부착장비는 84류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 및 조작장치가 일체 구조로 된 것: 84류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 :8705 -기기의 운전실내에 차량의 주행용 또는 제어용 장치중 하나 이상을 설치 것: 84류

바.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³⁹⁾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 지라도 제9023호의 전사용 또는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16부에 분류한다.

예) 실험실에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축전기 등

39) 일본예규 : 물품의 측정용, 시험용, 검정용, 선별용, 조정용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제16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유형으로 ① 피측정물 또는 피시험물에 대해서 측정 또는 시험을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기기이고, 그 측정 또는 시험의 결과는 그 측정기기 등에 의해서만 표시 또는 검출을 할 수 있는 것(예: 8479호에 분류되는 Turn table이나 8543호에 분류되는 신호발생기), ②측정,시험,검정,선별 또는 조정에 사용하는 기기이고, 피측정물 또는 시험물로부터 소요 수치 또는 양을 검출하는 기구를 갖추고 있고 제16부의 주 또는 각 호에 있어서의 품목, 용도 그 외의 규정에 의해서 제16부에 속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 ③검정 또는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인데 그 기구는 단지 피시험물의 핸들링을 행할 뿐이고 검정 또는 선별을 육안에 의해 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기기(1986.12.24 관입분류1-16; 중앙관세분석소발간 일본 품목분류예규·실무사례집; 2002.1)

제5절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제84류)

1. 84류의 주

1. 주의 내용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가. 제68류의 밀스톤·그라인드스톤 또는 기타의 물품
- 나. 도자제의 기계류(例: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 다. 이화학용유리제품(제7017호), 유리제의 공업용기기 또는 기타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
- 라. 제7321호 또는 제7322호의 물품과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내지 제76류 또는 제78류 내지 제81류),
- 마.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 바.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제9603호)

2.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중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

다만, 제8419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가. 발아용기기·부란기 및 착육기(제8436호),
- 나. 곡물가습기(제8437호),
- 다. 당즙축추용의 침출기(제8438호),
- 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 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

제842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채봉기(제8452호),
- 나.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제842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 또는 제8471호)

3.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 또는 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에 분류한다.

4. 제8457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가.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매겨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 센터),
-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상이한 유니트헤드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의 유니트 콘스택션머시닝),
- 다. 가공물을 상이한 유니트 헤드로 자동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시닝).

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 (가)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 (나)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다)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라)처리진행중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수리적인 모델을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어도 아날로그요소·제어요소 및 프로그래밍 요소를 갖춘 것.

(3)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아날로그요소를 갖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디지털요소를 갖춘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두가지로 구성된다.

나.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 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6.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장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장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7.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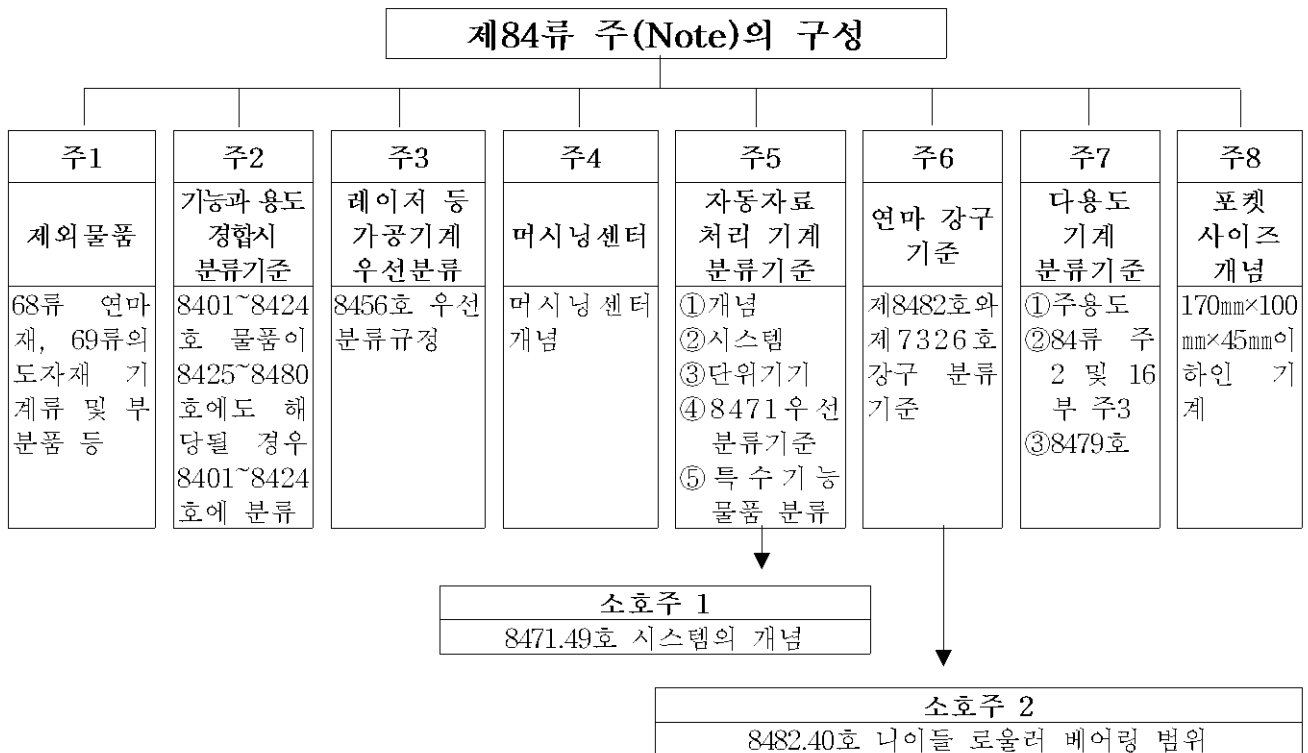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 선, 방직용 섬유사·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우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例: 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8.제8470호에서 "포켓 사이즈"란 용어는 크기가 170mm × 100mm × 45mm 이하인 기계에만 적용한다.

소호주 :

1.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84류 주5 "나"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한개의 중앙 처리장치와 1개의 입력 장치(例: 키보드 또는 스캐너)와 1개의 출력장치(例: 영상디스플레이장치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제8482.40호는 단지 직경이 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이상인 원통 로울러를 갖춘 베어링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로울러의 양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

2. 주의 구성체계



II. 84류의 분류체계

1. 개요

가. 구성내역

제84류 분류물품					
기능별 기계	산업별 기계	다용도 기계	범용성 부분품	기타의 비전기식 부분품	제외물품
8401~8424호	8425~8478호, 8480호	8479호	8481~8484호	8485호	①16부 주1 ②84류 주1

84류는 85개의 호(Heading)와 512개의 소호(Sub-head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5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기능별 분류체계 : 제8401~ 8424호
- ② 산업별·용도별 분류체계 : 제8425~ 8478호
- ③ 다용도 기계 : 제8479
- ④ 범용성 부분품 : 제8481~8484호
- ⑤ 기타의 비전기식 부분품 : 제8485호

하지만, 다음 물품은 84류에서 제외된다.

- ① 16부 주1의 물품
- ② 84류 주1의 물품

HS	제외물품
5911호	공업용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물품
68류	밀스톤, 그라인드 스톤 또는 기타물품
69류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
70류	이화학용의 유리제품(7017호),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7019호 또는 7020호)
73~81류	철강제의 스토프, 중앙난방용 방열기 및 기타의 물품(7321호, 7322호)과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85류	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9603호	모터를 갖추지 않은 수동식의 기계식 바닥 청소기

나. 제84류와 제85류의 분류기준

일반적으로 84류에는 기계류가 분류되고 85류에는 전기식 기기가 분류되나 어떤 기계는 제85류의 각호에 특제(예: HS 8509호의 전동식 가정용 기기)되어 있고,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각종의 기계류가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제84류에 분류된다.

- ①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기기: 8467호의 수지식 전동공구, 8414호의 선풍기, 8421호의 탈수기, 8450호의 세탁기 등
- ②전기가열식의 기계류: 제8403호의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 등
- ③전자식의 기계 또는 전자식 장치를 갖춘 기계: 전자식 리프팅 헤드를 갖춘 크레인
- ④전기식의 기계 또는 전기식 장치를 갖춘 기계: 전자 계산기, 자동자료처리 기계, 각종 전기제어장치를 갖춘 가공기계 등

2. 세부 분류구조

가. 기능별 기기

4단위	주요품명	4단위	주요품명
8401	원자로	8402~8405	보일러 및 가스 발생기
8406~8412	내연기관(엔진) 및 비전기식 모터	8413~8415	펌프 및 공기조절기
8416~8417	노용 버너 및 노와 오븐	8418~8419	냉장고, 가열기, 건조기
8420	캘린더기, 로울기	8421	원심분리기 및 여과기
8422	접시세척기,포장기계 등	8423	중량측정기(50밀리그램 이상)
8424	분사기,소화기 등		

나. 산업별 · 용도별 기기

4단위	주요품명	4단위	주요품명
8425~8431	건설용 기계	8432~8436	농업용 기계
8437~8438	곡물가공기계,양조장,베이커리 기계	8439~8443	펄프,지,인쇄기계
8444~8449	방직용 기계	8450~8452	세탁기,건조기,제봉기
8453	가죽 제조 기기	8454~8455	잉곳 주형기계,금속압연기계
8456~8466	금속가공기계	8467~8468	수지식공구,납땜,용접기기
8469~8473	사무용 기기	8474~8478	기타 각종 산업별 기계
8480호	금속주조용 주형틀, 각종 금형		

다. 다용도 · 범용성 기기(제8479호)

제8479호는 84류 기계의 잔여호로서 타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각종 기계류가 분류되는 호로서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

- ① 이표의 다른 부나 류의 주에 의해 84류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
- ② 이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을 것
- ③ 84류의 다른 특정호에 분류되지 않을 것
 - 품명이나 기능에 의해 타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 및
 - 사용 목적이나 사용산업에 의해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 2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

2) 교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예) 오존발생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제습기
-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
 - 예) 재봉기와 결합되어 실을 끊어주는 체인커터

라. 범용성 부분품

4단위	주요품명	4단위	주요품명
8481	탭,콕크,밸브	8482	베어링
8483	전동축,기어박스	8484	가스켓과 조인트

마. 기타의 비전기식 부분품(HS 8485호)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계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① 특정의 기계(제8479호 혹은 제8543호 또는 제17부·제90류 등의 기계 포함)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히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당해 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 ② 제8481호에서 제848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품.
- ③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1 혹은 제84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부분품.

3. 분류원칙

가. 일반적 분류원칙

- ① 제8401~8424호의 물품이 8425~848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8401~8424호에 분류
 - 8419호⁴⁰⁾ 제외 물품: 제8436호의 발아용 기기 등, 8437호의 곡물 가습기, 8438호의 당즙추출용 침출기, 8451호의 방직용 열처리용 기계, 온도변화가 주된 기계적 기능에 대하여 종속적인 것

40) 8419호: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 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

- 8422호⁴¹⁾ 제외물품: 8452호의 재봉기, 8472호의 서류봉투 봉합기계 또는 화폐계수기 또는 포장기계
- 8424호⁴²⁾ 제외물품: 잉크젯방식 인쇄기(8443호, 8471호)

② 8456호⁴³⁾ 물품이 8457~8461, 8464~8465물품에도 해당시 8456호에 분류

③ 8457호⁴⁴⁾ 머시닝 센터의 범위

구분	머시닝 센터	유니트 컨스트럭션 머시인(싱글스테이션)	멀티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시인
개념	○ 본체와 ATC(Auto Tool Changer: 자동공구교환장치) 및 수치제어(NC)장치로 구성된 단일체의 기계로서 ○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ATC가 공구를 자동교환하여 작업	○ 가공물을 고정장치에 고정시켜놓고 ○ 호환성 공구가 장착된 유니트 헤드를 가공물로 이동하여 작업	○ 가공물을 공구에 자동이송 ○ 각 스테이션에서는 해당 유니트 헤드의 공구에 의해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기능	○ 단일 가공물에 여러 가지 기계가공 공작(밀링, 드릴링, 볼링, 태핑)을 하는 기계 ○ 단일의 기계가공을 하는 기계는 제외(8459~8461호에 분류)		

※선반: 공작물을 주축에 고정회전시켜 바이트로 절삭하는 공작기계

나. 17부 물품과 84류 물품의 분류기준⁴⁵⁾

86류 차량 및 89류 선박에 장치된 기기	87류 트랙터 또는 차량위에 장치된 기기
◇열차에 연결하는 데 적합한 화차 또는 트럭위에 장치된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는 8604호 -바퀴달린 플랫폼에 단순 장착되고, 철도 또는 전차의 하부구조에 장착되지 않은 것은 84류에 분류 ◇89류浮구조물에 장치된 권양기, 하역기는 89류에 분류	◇트랙터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트랙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트랙터는 8701, 부착장비는 84류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 및 조작장치가 일체구조로 된 것: 84류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 :8705 -기기의 운전실내에 차량의 주행용 또는 제어용 장치중 하나 이상을 설치 것: 84류

41) 8422호: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시일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42) 8424호: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43) 8456호: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마이크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44) 8457호: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니트 컨스트럭션 머시인(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시인

45) HS 8426호 설명 부분중 자주식 및 이동식 기계 분류기준 참조

다. 자동자료처리기계 분류기준

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개념

가) 관련규정 : 제84류 주 5 “가”

나) 개념

자동자료처리기계에는 디지털형,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이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유형은 대부분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이다.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 요건을 갖춘 기기를 말한다.

- ①처리중인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필요한 자료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 ②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 ③사용자가 지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 ④처리중에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처리 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 시스템 인정기준

가) 관련규정 : 제84류 주 5 “나”

나) 개념

84류 주 5 “마”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보아 HS 8471호에 분류한다.

- ①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고
- ②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이상의 기기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고
- ③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신호 또는 부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고 전송할 수 있는 기기

3) 단위기기와 관련제품 분류기준

가) 단위기기(84류 주5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도 8471호에 분류

나) 84류 주5 라: 84류 주 5 나의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코디네이트 입력장치와 디스크 저장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8471호에 분류

4)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 또는 연결되어 특수기능 수행기계 분류기준

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Incorporated)하여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당해 기계의 기능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며, 해당호가 없을 경우에는 잔여 호(Residual heading)에 분류하며, 8471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기계로서 16부 주4, 90류 주3의 규정에 의거 Functional unit을 구성하여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분리하여 HS 8471호에, 기타의 기기는 기능에 따라 각각 해당 호에 분류

라. 산업용 로봇⁴⁶⁾의 분류기준

산업용 로봇은 용접 · 페인팅 · 하역 · 적하 및 양하 · 절단 · 조립 · 금속의 트리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봇은 악조건의 환경(유독성물, 먼지 등)에서나 또는 힘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성의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작용 때문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툴 호우더 및 투울을 갖추고 있다(例 : 집게, 그립퍼, 용접 헤드).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수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와 같은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例 : 제8424호, 제8428호 또는 제8515호)

46) HS관세율표해설서 8479호: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업분야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활동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사람의 팔과 비교될 수 있는 관절형의 구조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수평 또는 수직의 상태로 Base에 장착되어 있으며, 그 맨 끝에는 투울 호우더(수직형 로봇이라고 부른다)용의 이동성의 홀더를 갖고 있다. 그들은 또한 때때로 작동장치의 terminal part를 형성하는 호우더의 수직축 위를 이동하면서, 때로는 수평축(수평 로봇)위를 이동하는 선형구조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들 로봇은 동일하게 비입(비입 로봇)위에 장치될 수 있다. 이들 구조의 상이한 부분은 전동기나 또는 액압식 또는 압축공기식의 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Ⅲ. 84류의 세부 분류내역

1. 제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가. 분류물품

- ① 원자로
- ② 핵연료체(카트리지)
- ③ 방사성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나. 제외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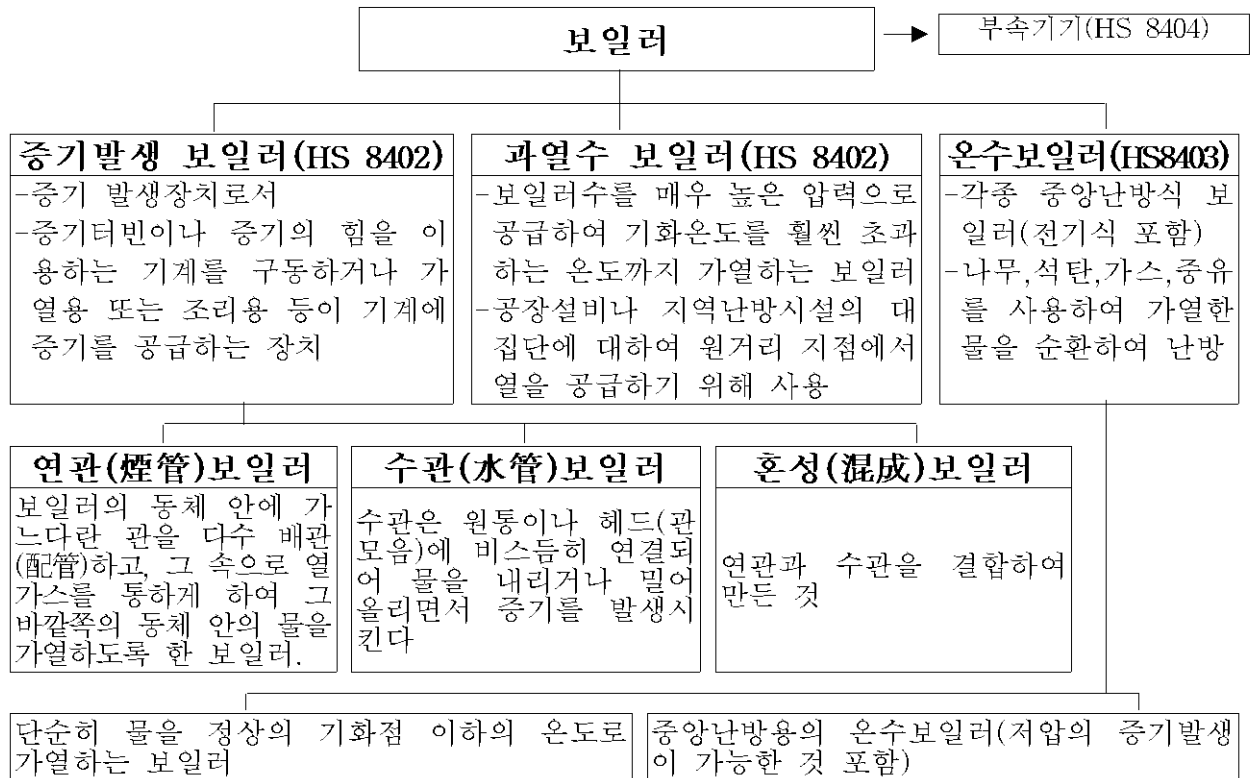
- ① 건식 정련법에 의하여 조사(照射)된 핵연료의 분리용 노(爐)(경우에 따라서 제 8417호 또는 제8514호).
- ② 분류(分溜)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사된 핵연료용 또는 폐수처리용의 분리기(중수생산용의 것은 제외한다)(제8419호).
- ③ 방사성 먼지를 제거하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에어필터(air filter)(물리적 또는 정전기적형), 방사성 沃素(옥소)보호용의 활성탄 청정기, 방사성 원소 분리용의 이온교환장치(전기투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핵연료용 또는 폐수처리용의 분리기(이온교환작용의 것인지 또는 화학적 작용의 것인지 불문한다)(제 8421호).

2. 제8402~8405: 보일러 및 가스발생기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8403	중앙난방용의 보일러(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다)
8404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405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발생기, 아세틸렌가스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관세율표상 보일러의 종류(HS 8402~8403)



다. 보일러용 부속기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HS 8404)

1) 보일러용 부속기기

품명	기능
연료절약기	여열(餘熱)을 이용하여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공기에열기	여열을 이용하여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
과열기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포화증기를 재가열하여 포화증기속에 함유된 수분을 증발시키고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과열저감기	과열기의 과열온도가 소요 온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증기컬렉터	여러개의 보일러로부터 발생하는 증기를 수집하기 위한 원통형 용기
증기비축기	잉여증기를 저장하기 위한 대형 원통형의 고압단열용기
열비축기	증기발생보일러로부터 나오는 여열을 비축하는 장치
기타	그을음 방지기, 가스회수기, 슬러지 제거기 등

2) 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배출증기의 냉각 및 응축에 의하여 증기원동기내의 배압을 저하시키고 또한 증기원동기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①표면 응축기, ② 혼합응축기, ③ 공기냉각식 응축기가 있다.

3) 제외물품

- ① 펌프(8413, 8414호), 송풍기, 팬
- ② 8416호의 爐용 버너 등
- ③ 8419호의 응축기
- ④ 8421호의 여과기 및 청정기

라. 가스발생기(HS 8405)

가스발생기			
-모든 가스(발생로 가스, 수성가스 및 이들의 혼합가스 또는 아세틸렌 가스 등)의 자장식 발생장치 포함 -조명용,공업적 가열용,가스엔진 공급용,금속 용접용, 절단용, 화학합성용 등			
발생로 가스 발생기	수성가스	습식 아세틸렌가스	기타 가스 발생기
석탄 및 코크스 등을 공기와 소량의 수증기 등으로 불완전 연소시켜 가스발생장치	백열(1200K)된 석탄 또는 코크스에 수증기를 통과시켜 가스발생 장치	-주수식 발생기 : 카아바이드에 물을 작용시켜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는 발생기 -투입식 발생기 : 다량의 물 속에 카아바이드를 소량 투하하여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는 장치 -침지식 발생기 : 카아바이드 통에 들어있는 카아바이드가 수실의 물에 잠겨 아세틸렌을 작용시키는 장치	-산소발생기 -에틸렌가스 발생기

제외물품 : 가스터빈용 Free-piston식 가스발생기(제8414호), 비치료용으로 설계 제작된 전기식의 오존발생장치 및 확산장치와 이산화질소,황화수소,청산 발생용 전기분해 가스 발생기 (제8543호), 오존요법용기기(제9019호)

3. 제8406~8412: 기관 및 비전기식 모터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06	증기터빈
8407	불꽃 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10	수력터빈,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1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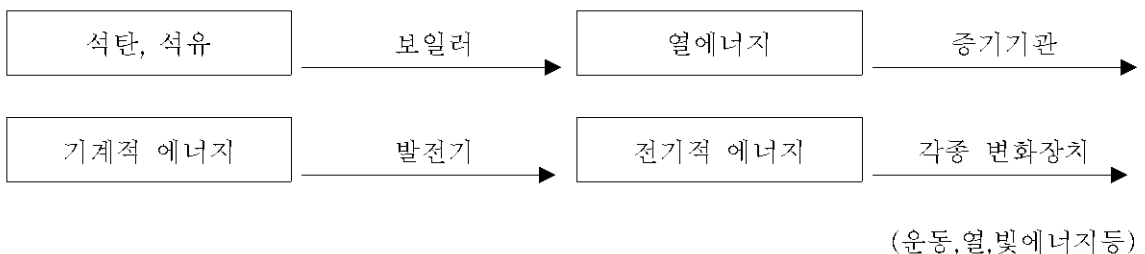
나. 기관의 분류

1) 에너지⁴⁷⁾의 개요

①에너지 자원 :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구분	종류
재생 불가능	나무, 석탄, 석유, 원자핵 등
재생 가능	풍력, 수력, 조력, 태양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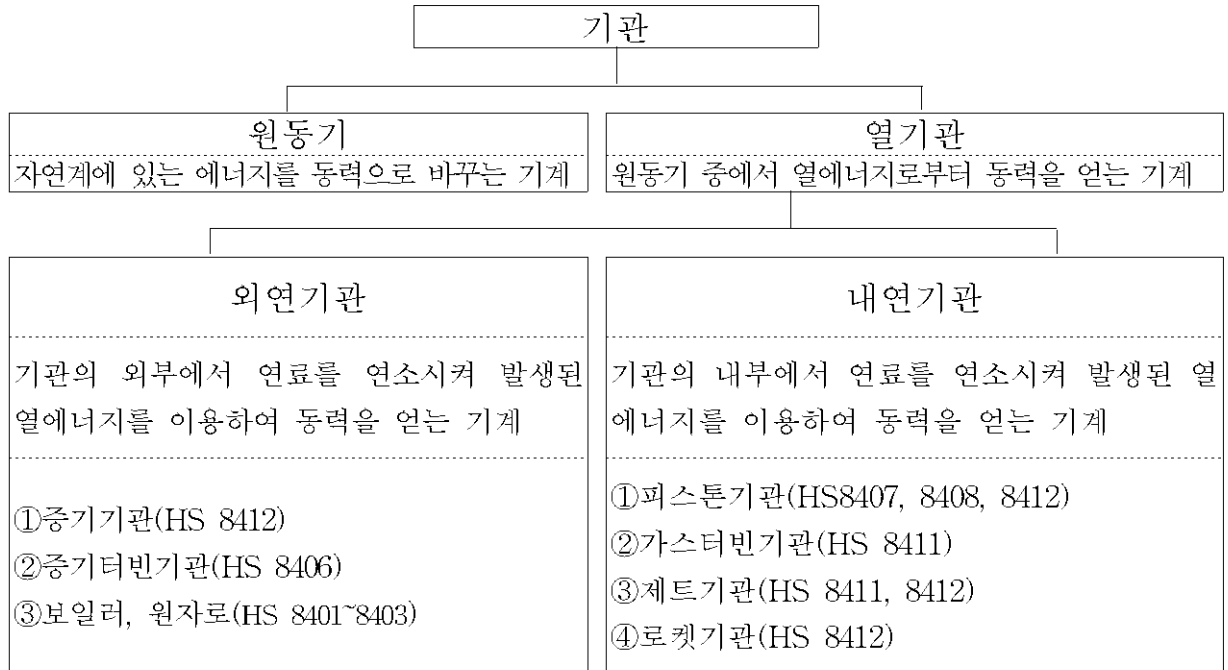
②에너지의 형태 변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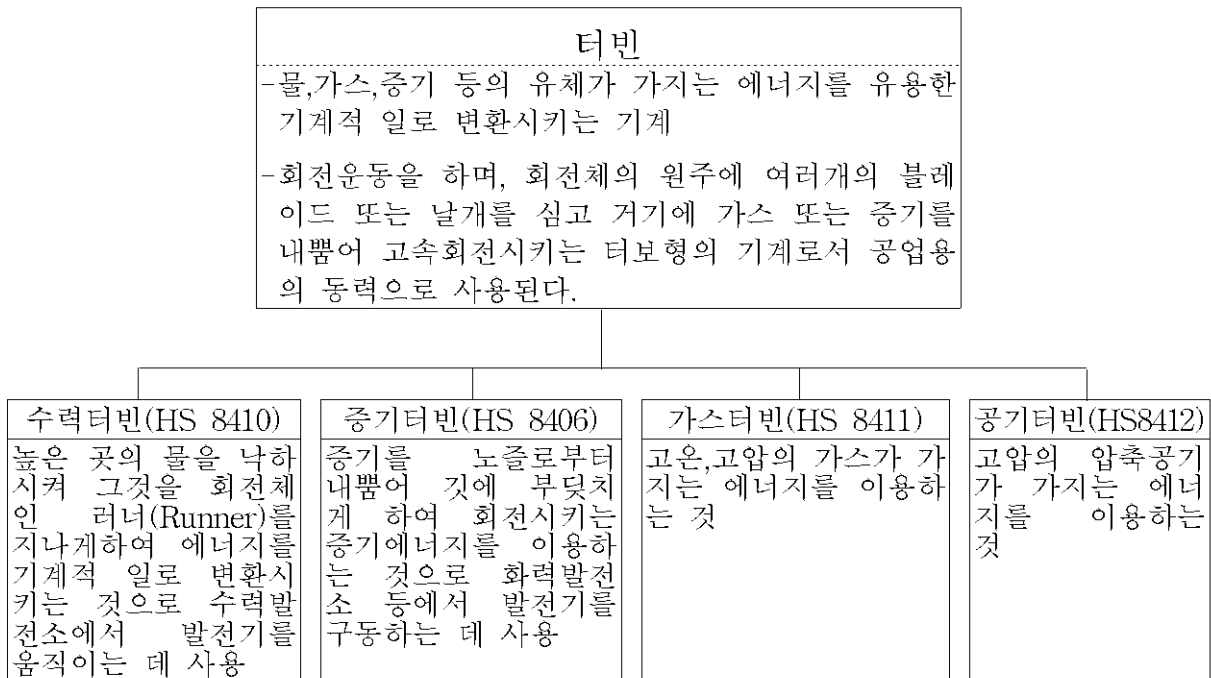
47)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2) 기관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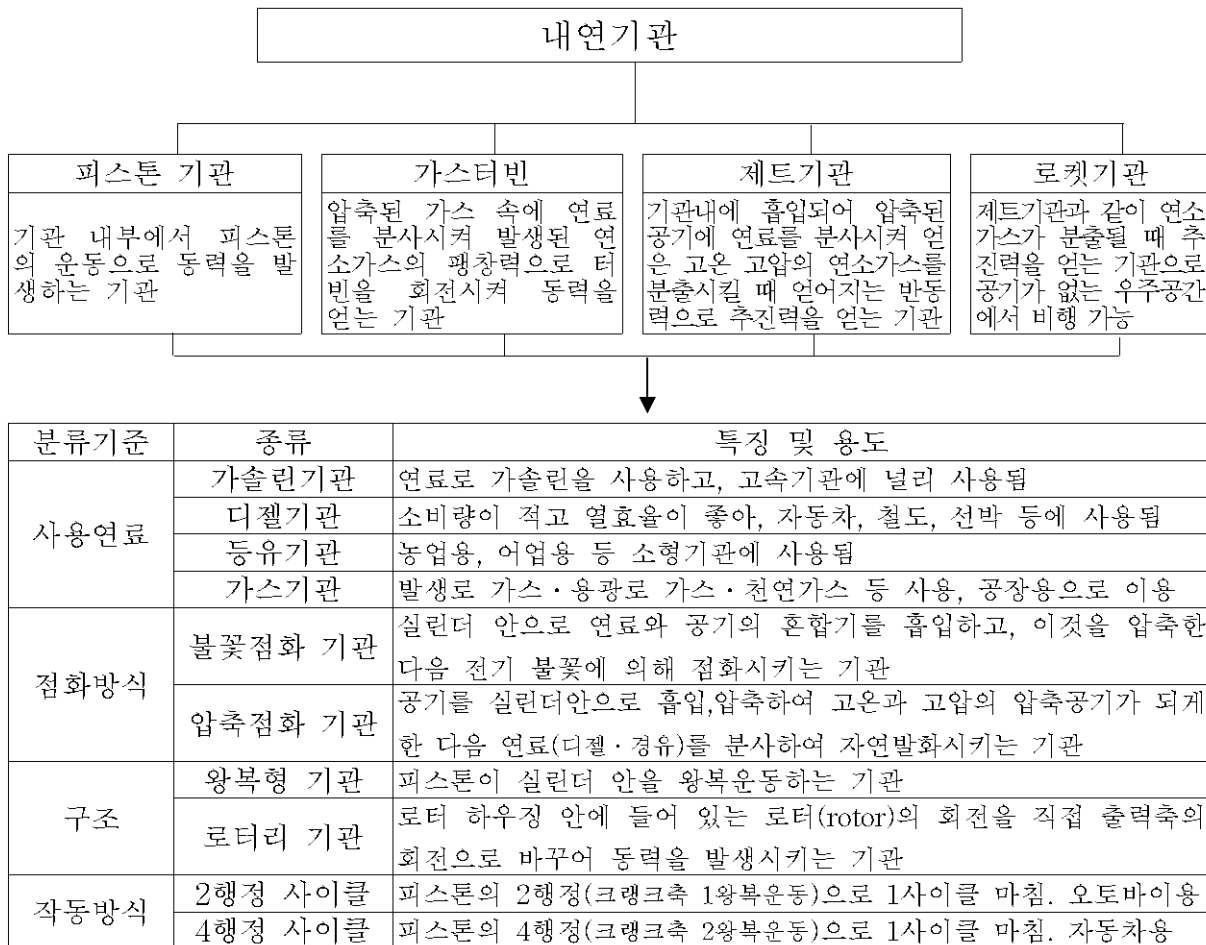
가) 개 요



나) 터빈의 분류



다) 내연기관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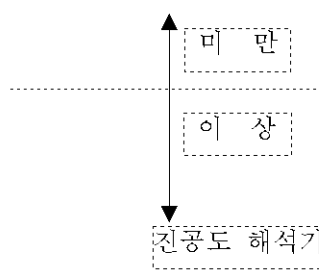


4. 제8413~8415: 펌프 및 공기조절기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13	액체 펌프와 액체 엘리베이터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8415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나. 펌프의 분류

종류	개념 및 기능	종류 및 제외
액체펌프 (HS 8413)	-대상물질: 액체, 용융된 금속,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 -기능: 압력작용에 의하여 상기한 액체 등을 관을 통해서 수송하거나, 저압의 용기 속에 있는 유체를 관을 통하여 고압의 용기 속으로 압송하는 기계 -구동방식: 수동식 또는 동력 구동식 포함 ※액체엘리베이터: 액체등을 일정한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기기	<종류> ①왕복펌프,②회전펌프, ③원심펌프,④기타펌프 <제외> -도자제 펌프: HS 6909 -수동식 오일캔과 그라이스 건: HS8205 -압축공기식 그라이스건: HS8467 -액체 분무용 기기: HS8424
기체·진공펌프 (HS 8414)	-기체펌프(Air pump):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펌프. -진공펌프(Vacuum pump): 대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기체를 흡입하여 대기압에서 배출하는 데 사용되는 압축기 저진공: 760~1토르 중진공: $1 \sim 10^{-3}$ 고진공: $10^{-3} \sim 10^{-7}$ 초고진공: 10^{-7}이하  -진공펌프 용도: ①감압하에서 비등,증류 또는 증발용,②전구 등의 배기용, ③공기 타이어의 팽창용 등 -구동방식: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	<제외> -유리로 만든 확산펌프: 70류 -에멀존 펌프(Emulsion pump): HS 8413
반전가능 열펌프 (HS 8415)	모터 구동용 팬과 온도와 습도의 양쪽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구성된 반전가능 열펌프	
열펌프 (HS 8418)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고온의 열원에 열을 주는 장치로서, 증발기·압축기·응축기로 구성된다. 주로 빌딩의 난방용 또는 가정의 온수 공급용으로 사용된다.	

다. 기체압축기와 팬 등(HS 8414)의 분류

1) 기체 압축기(Compressor)

기체를 압축시켜 그 압력을 높이는 기계적 장치를 말하며, 왕복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압축기의 용도로는 압축가스충전용 실린더의 가스 압입용(壓入用), 화학반응 공정용, 냉장고용 등에 사용된다. 가스터빈의 연소실과 압축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스터빈용 Free-piston식 가스발생기도 HS 8414호에 분류된다.

2) 팬(Fan)

공기의 유동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로서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기체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형식으로는 ①배기용 기계 또는 송풍기로써 작용하는 것과, ②간단한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단순히 대기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된 것이 있으며, 가정용의 선풍기와 컴퓨터용 냉각팬 등 소형으로부터 대형 공업용 송풍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 팬(Fan)을 결합한 환기용 또는 재순환용 후드

팬을 결합한 요리용 후드, 이화학용 또는 산업용 후드가 포함된다.

라. 공기조절기(Air conditioning machine; HS 8415)의 분류

1) 개념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로서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2) 분류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HS 8415호의 공기조절기로 분류된다.

- ① 동력 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 ②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기구 또는 두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 또는 건조 기구 또는 두가지 기구를 갖춘 것)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 ③ 상기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경우

따라서, 동력 구동식의 팬을 결합하고 있는 기기일지라도 공기의 온도 또는 습도 어느 하나만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갖춘 것은 HS 8479호 또는 HS 8516호 등에 분류한다.

5. 제8416~8417: 爐용 버너 및 爐와 오븐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16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화격자·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나. 노용 버너(HS 8416)

버너란 가스·기름·미분체(微粉體)와 같은 기체·액체·분체 연료를 고속으로 내뿜는 연소장치로서, 공업용의 대형버너는 가스나 공기를 폐(廢)가스의 열로 예열(豫熱)하는 경우가 많다. 중유·등유 등을 연소시키는 것을 오일버너(중유버너)라고 하며, 압축공기나 고압수증기 등으로 기름을 안개처럼 내뿜는 일종의 분무기라고 할 수 있다. 또, 미분탄을 연소시키는 것을 미분탄 버너라고 하며, 공기로 미분탄을 분무상태로 하여 연소시킨다.

<HS 8416호 분류사례>			
품명	물품설명	결정세번	근거및종류
Igniter	Gas-Oil혼합형 대형 산업용 Boiler에 사용되는 착화용 Pilot Burner로 약16초간 운전되어 Main Burner에 점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Burner의 구성요소인 Garaner, Sloenoid Valve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것	8416.90-1000	사전심사: 감정 2201-1051 (90.04.04)

다. 기계식 스토커, 기계식 火格子⁴⁸⁾, 灰 배출기 등 (HS 8416)

1) 기계식스토커

서로 다른 각종의 형이 있으나 보통 여러가지의 공급장치와 함께 결합된 석탄흡퍼로 구성되며 이들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석탄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석탄을 화상(火床)에 공급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때로는 균일한 크기의 석탄을 공급시키기 위한 분쇄기가 설치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중앙난방식보일러(가정용의 것을 포함한다)용의 기계식 스토커가 포함된다.

2) 기계식 화격자

이들은 석탄을 火床위에 살포하고 균일한 연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석탄이 앞으로 옮겨지도록 설계된 기기로서 여러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 화격자에는 잔사(殘渣) 또는 회를 배출하는 장치가 부속된 경우가 있고 분리된 기계장치에 의하여 배출되는 것도 있으나 이들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공업용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비기계식의 화격자봉 또는 화격자는 이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48) 격자(格子): 대오리(가느다란 가닥)나 나무오리 또는 쇠 오리 따위를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도록 성기게 짠 물건, 또는 그러한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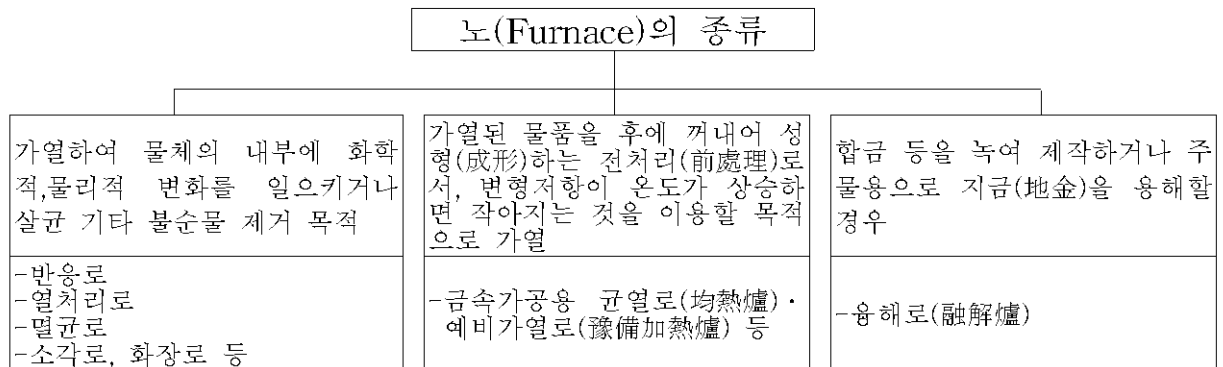
라. 비 전기식 공업용, 이화학용 노와 오븐 (HS 8417)

1) 노(Furnace)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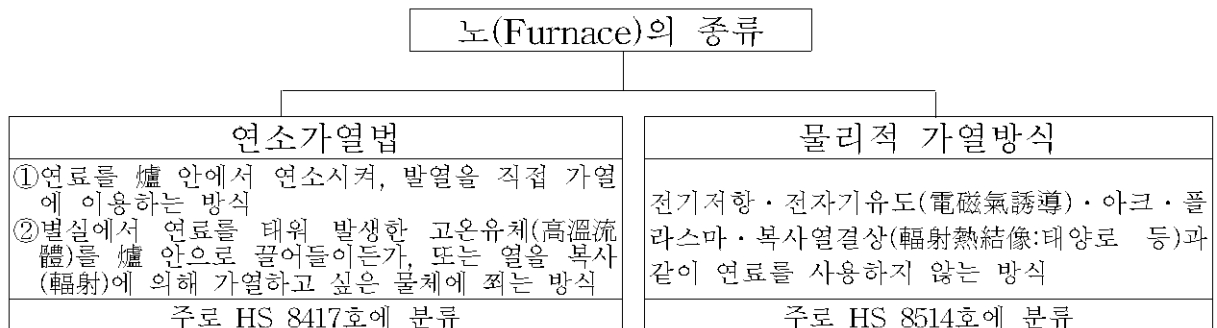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용해로라 한다.

2) 爐와 오븐⁴⁹⁾의 일반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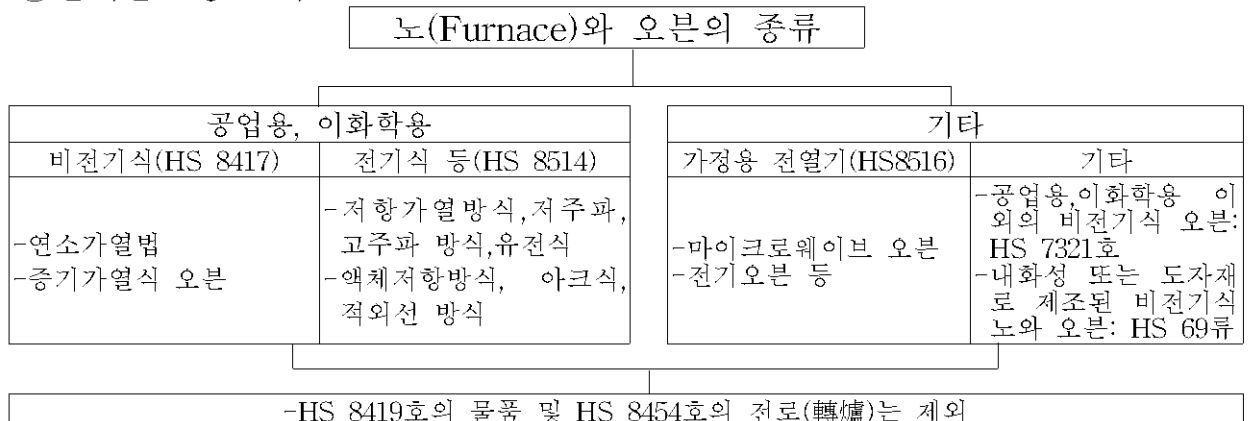
①가열 목적에 따른 분류



②가열방법에 따른 분류



③관세율표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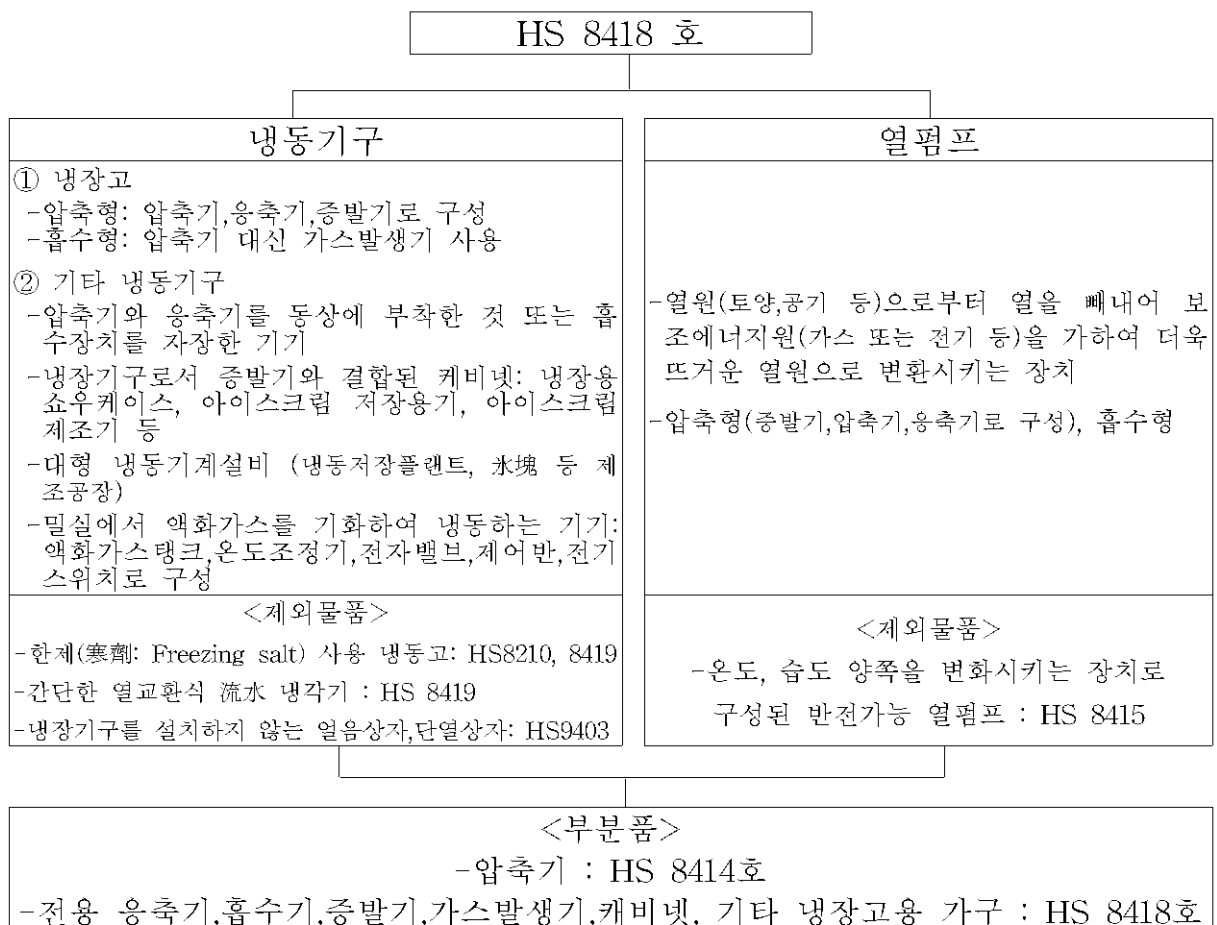
49) 조리재료를 밀폐한 후 가열하여 건열(乾熱)로 음식을 익히게 설계된 조리기구

6. 제8418~8419: 냉장 · 냉동고, 가열기 · 건조기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18	냉장고 · 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8419	가열 · 조리 · 배소 · 증류 · 정류 · 살균 · 저온살균 · 증기가열 · 건조 · 증발 · 응축 ·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나. HS 8418호의 분류구조



다. HS 8419호의 분류구조

HS 8419 호	
-재료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기 ①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 ②온도 변화(가열, 조리, 배소, 증류, 정류, 살균, 건조, 증발, 응축, 냉각공정)의 결과로 재료를 변형시키기 위한 것 -석탄,기름,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해 가열됨 -비가정용 기기가 분류됨.(전기식이 아닌 순간 탕비기와 저장식 탕비기는 제외)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 처리 기계	즉시식 또는 저장식 가열기
<분류물품> ①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 -각종의 가열, 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 : 가열 및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제14, 15부), 냉각기계로서 증발기와 결합된 것(8418호),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가열수단을 갖추지 않은 범용성의 용기(8479호)는 제외 -열교환기 -가스 액화용 응축기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 조리장치 등 ② 증류용, 정류용 기기 ③ 증발 및 건조장치 -건조기: 저온탈수, 동결, 가열 회전건조기 등 -병 또는 용기의 건조용 기계(제8422) 제외 -직물제품의 전용 건조기(제8451호) 제외 ④배소장치 ⑤증자장치 ⑥살균장치: 증기 또는 비등수, 가열공기 이용 ⑦공기 액화장치 및 이화학용 특수장치 ⑧금전을 받는 장치가 없는 자동 온냉음료 지급기계	-비전기식의 가열기
<제외물품> -15부의 가정용 스토브, 조리기기 -7322호 비전기 가열식 에어히터, 온풍 배분기 -보일러(8402~8403호)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 : 8417, 8514호 -발아용,부란기,양육기 : 8436 -곡물 가습기: 8437 -직물용 열처리용 기계류 : 8451호 -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 등	<제외물품> -8516호의 전기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 토양 가열기

7. 제8420~8424 : 켈린더기, 원심분리기, 중량측정기, 분무기 등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20	켈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422	접시 세척기·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강통·상자·자루 기타 용기의 충전·봉합·시일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423	중량측정기기(감량 50밀리그램이내의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나. 켈린더 및 로울기(HS 8420호)

구분	켈린더 및 로울기
기능	직물·종이·비닐시트 등의 마지막 다듬질 공정(工程)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제품의 표면을 매끈하게 함과 동시에 광택을 내는 장치 등
원리	2개에서 4개 정도의 주철로 만든 중공(中空) 롤러를 포개 놓고, 그 사이를 제품이 차례로 통과하는 동안에, 롤러 내부에서 보내진 증기의 열과 롤러 상호간의 누르는 압력이 작용
종류	①가소 상대하에서 로울러에 보내진 재료(제빵·제과·비스켓 제조용의 연분·초코렛·고무등을 포함한다)를 延展하여 쉬트상으로 하는 것. ②로울러 사이를 통과한 판상재료(금속 및 유리를 제외한다)에 어떠한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것(例: 평활화·광택화·염출·연마·형압등). ③완성가공도장 또는 표면도장. ④직물을 접착하는 것.
제외	①직물·지류등의 실린더식 건조기(제8419호 또는 제8451호). ②포도주·사이다제조용 프레스(제8435호). ③파쇄용 또는 마쇄용의 로울기(제8436호·제8474호 또는 제8479호). ④제분용의 실린더기(제8437호). ⑤세탁용의 水絞機(제8451호). ⑥금속압연기(제8455호). ⑦금속판의 플레트닝기계(제8462호) 및 금속판의 압형기(제8463호) ⑧압연법에 의한 판유리제조기 및 유리가공용의 켈린더(제8475호).

다. 원심분리기 및 여과기와 청정기(HS 8421호)

HS 8421 호

원심분리기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기,청정기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 <분류물품> ①세탁용·염색가공용·펄프공장용·제분공장용 등의 원심건조기. ②설탕정제용 원심분리기. ③크림세퍼레이터 및 우유의 원심청정기. ④유·포도주·알코올등의 원심청정기. ⑤식유제품의 원심탈수기 또는 탈납기. ⑥포도주·우지·전분등의 원심탈수기. ⑦면화약제조용의 원심탈초산기 ⑧이스트 배양용의 원심분리기. ⑨화학공업용 원심분리기(例: 항생물질용고속추출기). ⑩주로 이화학용으로 사용되는 원심분리기(경사법을 쓰기 위하여 액체를 적층상태로 분리하는 것). ⑪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원심분리기. ⑫방사성 침전물의 건조용 원심분리기. ⑬원심분밀추출기.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적·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 <분류물품> ①액체용 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 포함).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피(例: 포·펠트·철망·관·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 분·석면·펄프·셀룰로우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 ②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有價物(例: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 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例: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제외물품> ①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용의 "가스"원심분리기에 부르는 특수원심분리기(제8401호). ②액체용의 원심펌프(제8413호). ③원심식 공기펌프 및 송풍기(제8414호). ④제분공업에서 사용되는 원심식 불팅(또는 체로 치는것) 기계(제8437호). ⑤금속용(例: 주철관용)(제8454호) 또는 경화되지 않은 시멘트(콘크리트관주조용) 용의 원심주조기(제8474호). ⑥원심분쇄기(제8474호)	<제외물품> ①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용의 가스확산기기(제8401호) ②제8415호의 에어컨 또는 제8479호의 공기제습기. ③단순히 금속망 또는 기타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여과용 누두(깔때기)·우유 여과기·탱크 등은 제외되며, 또한 다용도용기·탱크 등으로서, 예를 들면, 자갈·모래·목탄 등을 적층상으로 넣어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도 제외
<부분품> -원심분리기 부분품: 플레이트·드럼·바스켓·보울 및 콜렉터 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기,청정기: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압, 필터 프레스용의 사시·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됨	

라. 접시 세척기, 포장용 기계 등(HS 8422호)

HS 8422 호		
접시세척기	병 또는 용기의 세정, 건조, 충전, 봉합, 씰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캡슐취부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상품의 판매, 운송, 저장을 위한 포장용 기계
-건조장치 결합여부 불문 -전기작동형식 포함 -가정용 여부 불문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소독, 살균장치 결합여부 불문 -레이블 첨부용 기계: 레이블의 인쇄,절단,폴칠용의 것 포함	-성형,인쇄,결부,스테플링,탭핑,호부,봉합 기타의 포장의 완성 가공용 장치 갖춘 것 포함 -통조림,병조림 등을 외장용의 용기에 포장하는 기계 포함 -베일링기와 밴딩기: 수동식의 휴대용 기계 포함, 포장된 물품위에 당해 기계를 놓아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
<제외물품> ①가정용의 병조림 또는 통조림 기계와 기타의 가정용기기로서 중량이 10kg이하인 것(제8210호). ②벧짚 또는 건조용 곤포기(제8433호). ③지대 및 지상자 제조기(제8441호). ④포대에 충전한 후 결합하기 위한 재봉기(제8452호). ⑤금속설을 압축하여 베일로 하는 기계(제8462호). ⑥목상자용정타기(제8465호). ⑦봉투에 편지를 삽입하는 기계 또는 이들을 종이밴드로 싸는 기계(제8472호).		

마. 중량측정기와 각종의 저울 추(HS 8423호)

저울	
50 밀리그램 이내	50밀리그램 초과
HS 9016 ①분석용천칭(例:미량화학천칭,미량천칭,비진동분석천칭): 주로 정량화학분석에 사용된다. ②시금천칭: 귀금속의 시금에 사용된다. ③귀석용 천칭: 캐럿의 등급을 매기는데 사용 ④약제사용천칭, 섬유용천칭, 견본용천칭(종이, 직물 등의 중량을 측정하는데 사용). ⑤비중(또는 특수비중)천칭: 액체 또는 고체의 특수 비중측정에 사용된다.	HS 8423 ①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②중량을 측정하는 원리로 작용하나 중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다른 단위(例: 용량,수량,가 격 또는 길이)로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기. ③제품의 균등성을 검사하거나 무게에 의하여 제품의 부족을 지시하거나 또는 포장하고자 하는 상품을 기준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설정기

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분무용 기기(HS 8424호)

HS 8424 호				
-분사,살포(drip식 여부 불문),분무 형태로 증기, 액체, 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는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 등	제트 분무기	주수기,분말살포기	관개시스템
소화재 충전여부 불문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로서 노즐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 또는 밸브가 부착되어있음.	-증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	-농업용,원예용,가정에 있어서 살충제 등의 분무 -수동식,족답식 포함	①control station,②지하배관시설,③지상배관시설로 구성

<제외물품>	
①수동식유주입캔·그리스건(제8205호) 및 압축공기식 그리스건과 기타의 강력공급 유탄장치(제8467호). ②보일러용 증기분사식 그을음 제거기(제8404호). ③노용버너(제8416호). ④물·증기·모래 등을 분사하여 통 또는 기타의 용기를 세정하는 기계(제8422호). ⑤잉크 제트방식 인쇄기(제8443호 또는 제8471호) ⑥주화구동식 향수분무기(제8476호). ⑦모울타알이나 콘크리트의 살포용 또는 도로위에나 이와 유사한 표면에 자갈을 뿌리는 기계(제8479호). ⑧제8515호의 금속 또는 세메트 열분사용의 전기기기. ⑨제트식치과용드릴(제9018호) 및 에어로졸식 치료기(nebulisers)(제9019호). ⑩향수용 분무기 및 이와 유사한 화장용분무기(제9616호). ⑪화물자동차에 탑재하도록 설계.제작된 제설용 소금 및 모래 살포기(HS 8479)	

8. 제8425~8431 : 건설 및 하역용 기계 등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25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양하대 · 스트래들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8428	기타의 권양용 · 하역용 ·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리프트 · 에스칼레이터 · 콘베이어 · 텔레페릭)
8429	자주식의 불도저 · 앵글도저 · 그레이더 · 레벨러 · 스크레이퍼 · 메카니컬셔블 · 엑스카베이터 · 셔블로우더 ·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30	기타의 이동 · 정지 · 지균 · 스크레이핑 · 굴착 · 탬핑 · 콤팩팅 · 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 · 광석 또는 광물성의 것에 한한다), 향타기와 향발기 및 스노우 플라우와 스노우 블라우어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나.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 윈치와 캡스턴 및 잭(HS 8425호)

구분	물품설명	형태
폴리태클과 호이스트	-권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 장점을 취하여 설계된 다소 복잡한 폴리(도르레) · 케이블 · 체인 · ropework(例 : 직경이 다른 수 개의 폴리 · 치차열을 사용)로 구성 <분류물품> ①폴리 원주상의 특별히 설계된 돌기부에 체인을 끼우도록 된 태클과 호이스트. ②폴리기구를 내장한 드럼 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되어 있는 드럼형의 폴리 호이스트. ※내장형 호이스트는 보통 공기식 또는 전기식으로서 고가 레일위를 주행하는 트롤리 또는 그랩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③호이스트는 잭장치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어 크랭크핸들 또는 레버에 의하여 조작되는 쇠차의 전동장치위를 주행하는 롤러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하여 제시되는 폴리 와 폴리블록은 제외된다(제8483호). -다빋도 이 호에 포함되며 이것은 경사진 또는 회전가능한 2개의 지주로 되어 있고 본선탭재보우트가 이 지주에 매달려 활차형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승강된다 -스킵 호이스트 : 8428호에 분류	①폴리태클  ②호이스트  ③다빋 

구분	물품설명	형태
원치와 캡스턴	-원치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으로 구성된다. -캡스턴도 이와 유사하나 드럼이 수직으로 되어있다. <분류물품> ①하역·발착·조타·어망예인·준설 등을 위한 선박용의 원치와 캡스턴, 이러한 구동장치는 내장되어 기계와 일체로 되어 있다. ②트랙터용 원치등. ③실질적으로 대마력 동력 구동원치로 구성되어있는 갱구 권상장치. ④회전반 조작용 또는 전철 등 용의 캡스턴 : 전철을 위하여는 보통 견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베어링으로 자유로이 회전하는 여러 개의 볼러어드를 따라 케이블이 통과하며 이러한 볼러어드(bollards)는 제7325호 또는 제7326호에 분류된다. ⑤신선기용의 견인장치	  <원치>
잭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분류물품> ①자동차 등 用의 휴대잭. ②대차가 붙은 개라지용잭·크레이트리프팅잭등. ③가래이지용 내장식잭장치(보통 유압식임). ④화물자동차경사장치의 잭. ⑤정차중의 기중기차,중량화물자동차,공작차,대포 등을 지면에 고정하기 위한 잭. ⑥철도궤조를 들어올리기 위한 잭. ⑦철도차량을 들어올리기 위한 잭. ⑧빌딩구조물 등의 일부 또는 거어더(girders)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작동잭	 <hydraulic jack>  <screw jack>

다. 선박의 데릭, 크레인,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 등(HS 8426호)

1) 자주식 및 이동식 기계의 분류기준

가) 제86류의 차량 위에 장치된 기계

구분	HS 8604호	84류
분류 물품	-분류요건: 철도 및 궤도차량에 장착 	-분류요건 : 철도 및 궤도차량의 사양에 적합하지 않은 트럭 또는 플랫폼위에 장치된 것

나) 제87류의 트랙터 또는 차량 위에 장치된 기계

①트랙터에 장치된 기계

구분	HS 8701호	84류
분류 물품	-분류요건: 작업현장에서 장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작업기기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84류에 분류하며, 트랙터는 8701호에 분류	-분류요건 : 기계의 주행부로서 주행부, 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 및 동작조작장치가 일체구조인 경우

②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구분	HS 8705호	84류
분류 물품	-분류요건: 주행용 원동기, 기어박스, 변속용 제어장치, 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 -HS 8704호 분류물품: 본래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자동적재장치를 갖춘 것	-분류요건 : 차량 샤시에 장치한 양하기 또는 하역기의 운전실내에 차량의 주행용 또는 제어용 장치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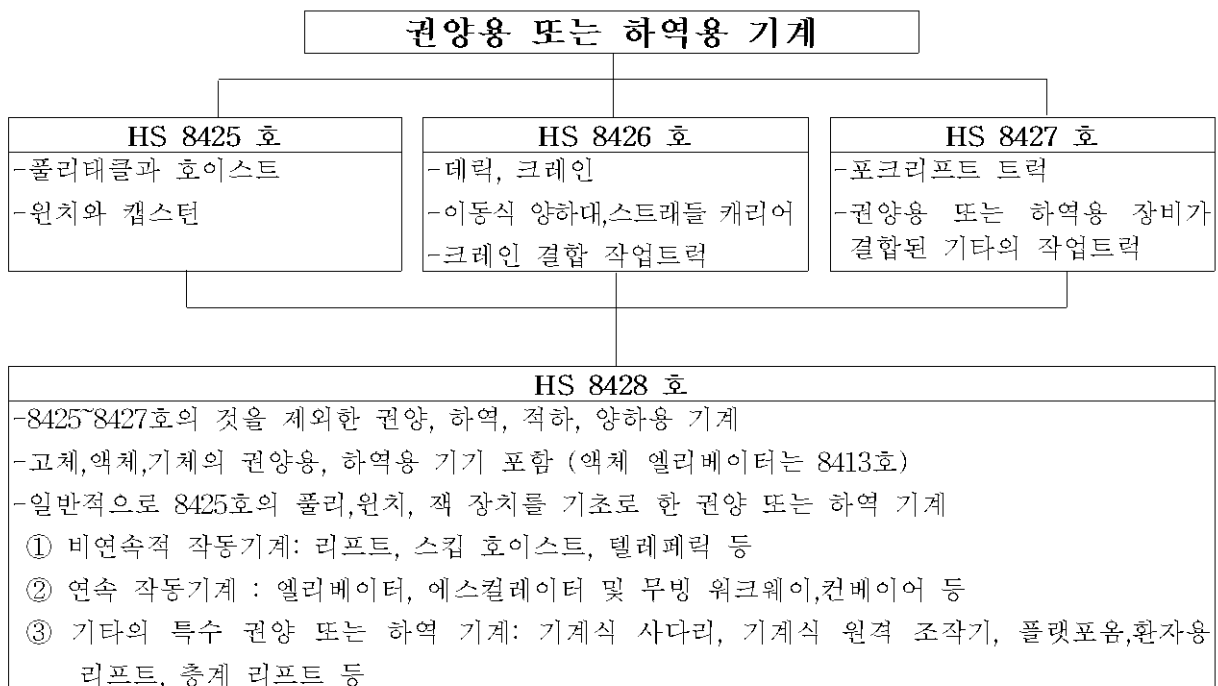
다) 제89류의 浮구조물상에 장치된 것 : 자주식 여부 불문하고 제89류 분류

라. 포크 리프트 트럭, 기타의 작업트럭(HS 8427 호)



마. 기타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HS 8428 호)

1)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 분류구조



바.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엑스카베이터 등 (HS 8429 호)

구분	물품설명	물품형태
① 불도저와 앵글도저	주행부(때로는 무한궤도식이다)와 전면에 부착된 큰 blade가 일체구조로 결합된 기계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파쇄물의 제거 및 거칠게 땅을 고르는데 사용된다. 어떤 종류의 형은 주로 땅을 파헤치거나 토지 개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있다.	
② 그레이더와 지균기	보통 전후 양자사이에 장치된 조절가능한 그레이딩 판에 의하여 지균작업 또는 평활화 작업(평탄면 또는 경사면의 위에서)을 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계	
③ 스크레이퍼	표면의 상층을 깎아내기 위한 예리한 절삭 날을 갖추고 있으며 깎기운 흙은 스크레이퍼의 동체내에 보내지거나 컨베이어에 의하여 배출된다. 모-터 추진장치와 스크레이퍼가 일체의 기계장치로 형성되는 스크레이퍼만을 포함한다	
④ 기계식 셔블	부움 또는 지브의 선단으로 직접 작동하거나(셔블굴착기·드래그셔블 등) 또는 작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브로부터 현수된 케이블의 선단 또는 하이드로울릭 잭에 의하여 작동하는(드래그라인) 굴착용버킷트·그랩기 등에 의하여 지면의 고저에 관계없이 토양을 굴착하는 것	
⑤ 멀티 버킷 엑스카베이터	수개의 굴착용 버킷트가 앤드리스 체인 또는 회전륜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기계는 굴착된 토양을 배출하기 위한 컨베이어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 많으며 보통 차륜식 또는 무한 궤도식 차시위에 장치되어 있다. 특수한 형의 것은 참호·하수구·도랑 등 노천채굴<노천광>에 이용된다.	
⑥ 자주식 셔블 로더	바퀴가 달렸거나 전면에 버킷트가 달린 기계로서 물체를 퍼담아서 수송한 다음 쏟아내는 장비임. ☞ 불도저와 로더의 차이점 -형태는 유사함 -불도저는 굴착장비이며, 로더는 적재장비임.	
⑦ 로다 트랜스포터	하역이 주기능이고 수송은 하지 않으며 전면에 버킷트를 붙인 것으로서 벌크상의 물질을 퍼담아서 기계본체에 쏟아낸다	

사.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템핑,채굴, 천공용 기계, 향타기, 스노우 플라우와 스노우 블라우어 등 (HS 8430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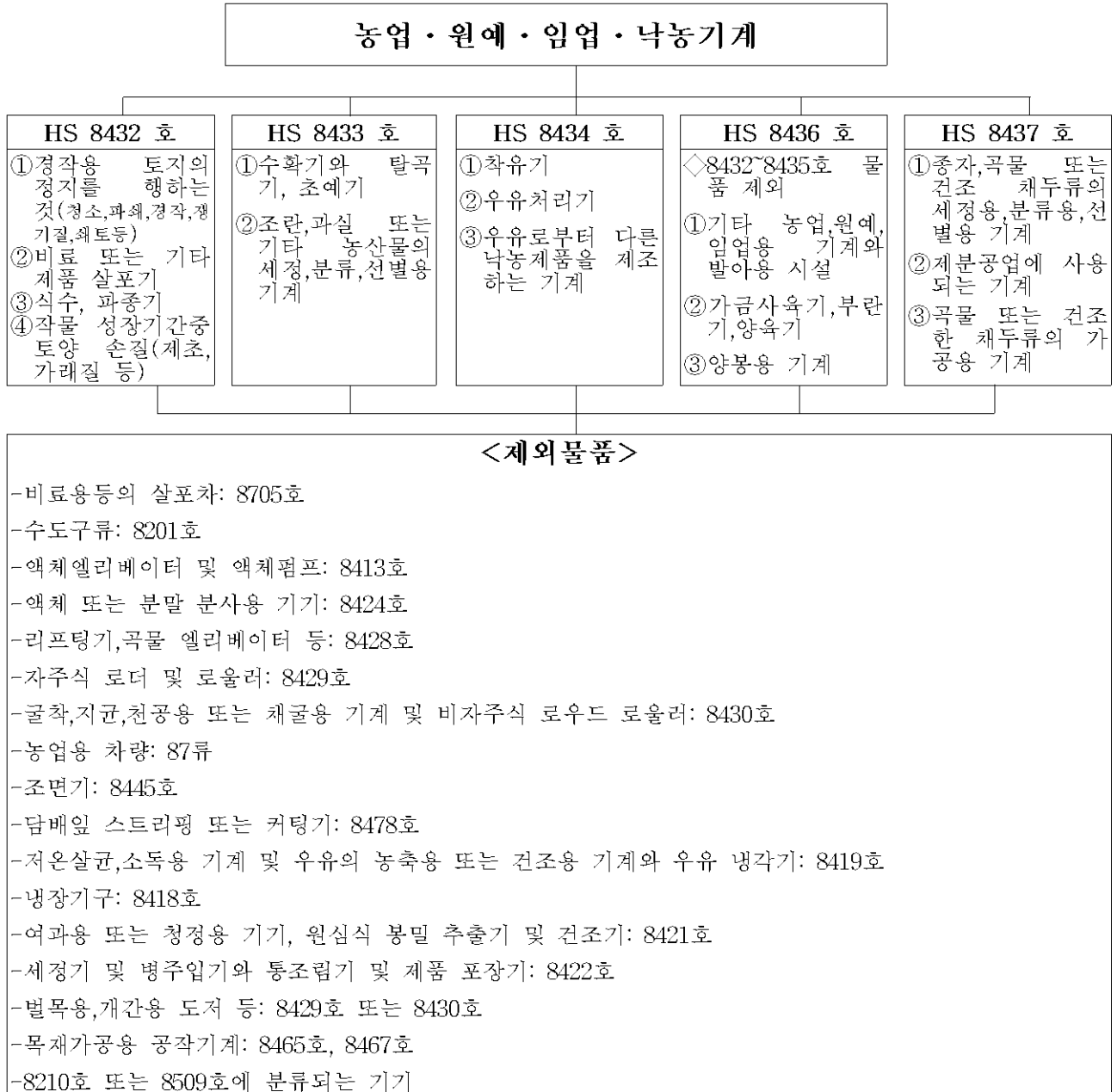
HS 8430 호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 지형의 정비, 매전용 기계 -향타기,향발기, 스노우 플라우 및 스노우 블라우어				
토양 굴착용,스크레이핑용 또는 지균용 기계 -자주식이 아닌 굴착용 기계 -준설기 -철도선로용 자갈을 굴착하면서 채질하는 기계 -립퍼,루어터 등 -스키머어	템핑 및 콤팩팅기 -로드롤러 -템핑용 기계 -제방등의 측면을 다지기 위한 뉴우머티식 기계	채굴용, 절삭용 또는 천공용 기계 -채광, 우물파기 -터널 굴진, 암석절단, 점토층 절삭	향타기 및 향발기	스노우 플라우 및 스노우 블라우어 -로리나 트랙터에 부착되도록 설계 제작되어 밀거나 끌어서 작동
<제외물품> -8429호의 자주식 기계 -8432호의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 -8604호의 것 -8705호의 것 -8467호의 것				

9. 제8432~8438 : 농업·임업용 기계, 식품·음료 제조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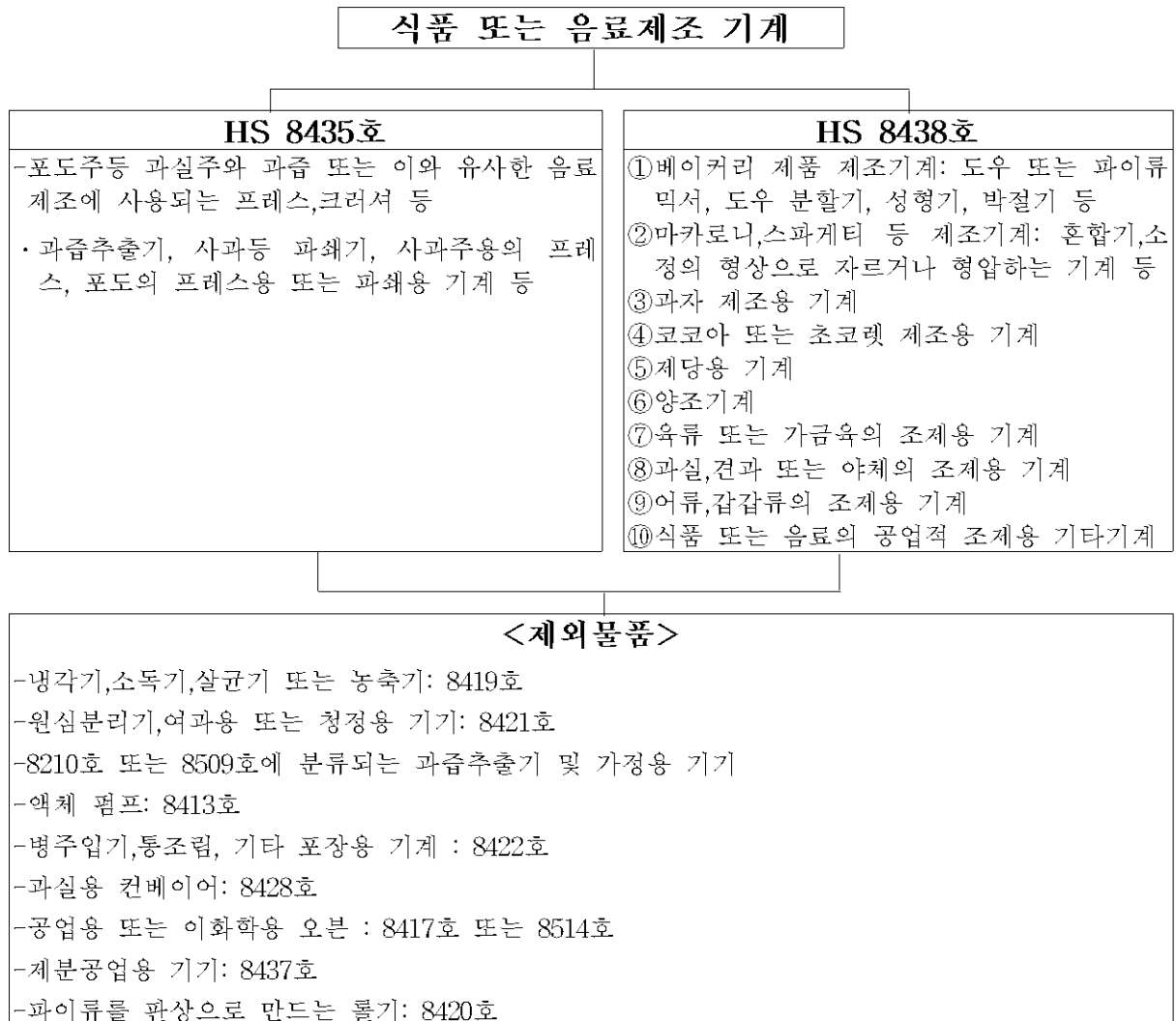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8433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크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8436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 또는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 기계(농장형의 것을 제외한다)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

나. 농업·원예·임업·낙농기계의 분류구조



다. 식품 또는 음료 제조기계의 분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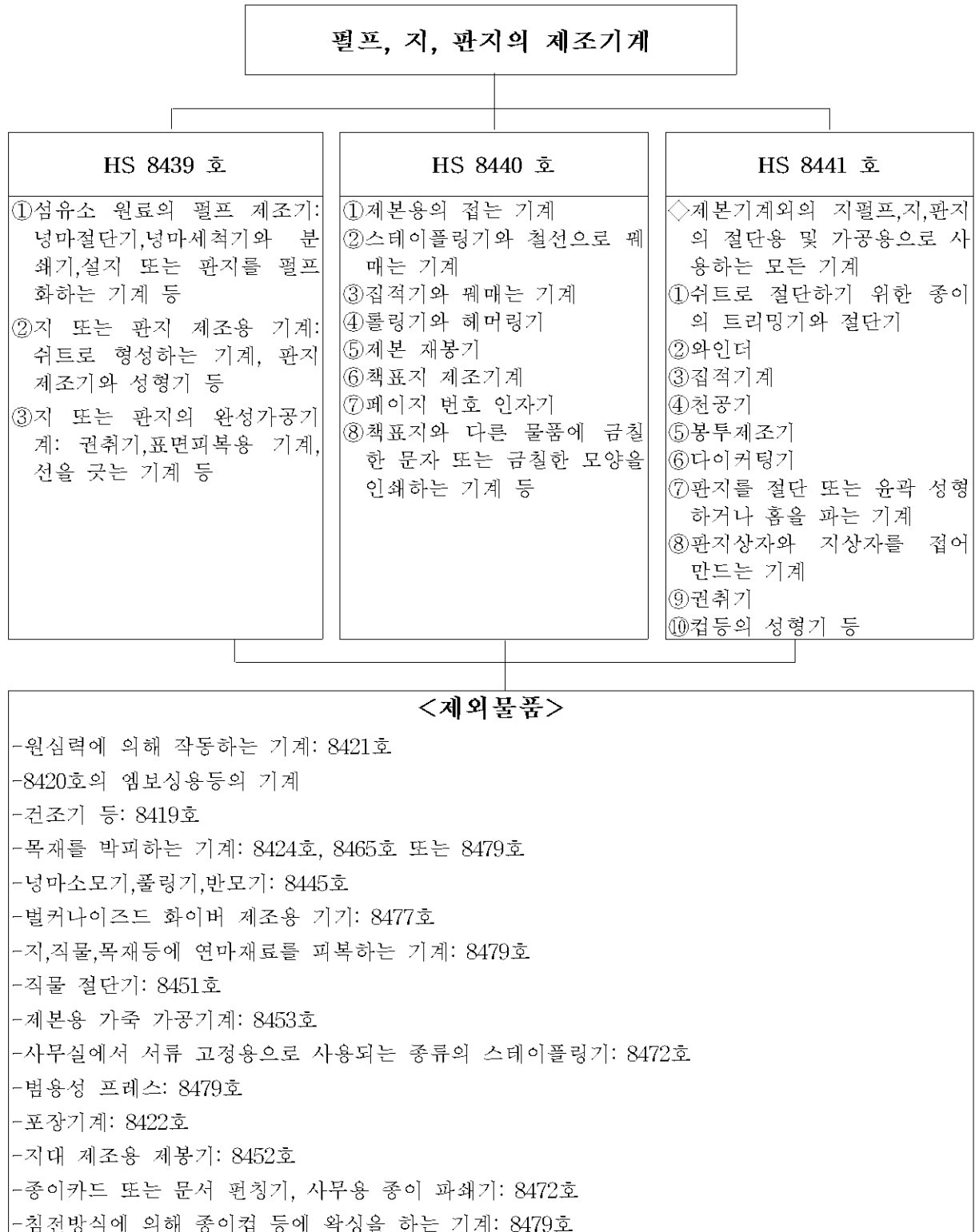


10. 제8439~8443 : 펄프,지 제조용 기계와 인쇄용 기계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
8440	제본기계(제본용 채봉기를 포함한다)
8441	기타의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2	활자의 주조 또는 식자용 기기 및 인쇄용의 블록·플레이트·실린더 기타 인쇄용 부분품의 조제 또는 제조용 기기(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한다),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기타 의 인쇄용 부분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例 : 평삭·그레인 또는 연마)한 블록·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3	인쇄용의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17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나.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조기계의 분류구조



다. 인쇄용 기계 분류구조

1) 인쇄의 개요

인쇄의 개념	문자·그림·사진 등을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방법으로 옮겨 찍어서 여러 벌의 복제물을 만드는 일
인쇄의 요건	인쇄물을 만드는 데는 ①원고, ②판 (활자의 매개체), ③색재(잉크), ④피인쇄체 (용지), ⑤인쇄기 등 다섯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판(板): 인쇄에 복제의 기본이 되는 원고를 재현하여 잉크를 종이 등 피인쇄체에 옮기는 매개물을 말한다. 원고로 판을 만드는 공정을 제판이라고 하며, 판면에 있어서의 화선부(잉크가 묻는 곳)와 비화선부(잉크가 묻지 않는 곳)의 구성에 따라 불록판, 평판, 오목판 등으로 나뉜다.
인쇄 방식	①불록판(철판:凸版): 불록판 인쇄는 판화의 원리와 같아 잉크가 묻는 화선부가 묻지 않는 비화선부 보다 높게 되어있고, 活版, 線畫, 불록판, 사진판, 복제판(연판)등이 있다. ②평판: 화선부와 비화선부가 같은 평면 위에 있고, 평판인쇄는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다. 석판, 사진석판, 오프셋 인쇄(고무판을 거쳐서 종이에 인쇄하는 방법)에 의한다. 스텐실링 인쇄도 포함된다. ③오목판(요판:凹版): 불록판 인쇄와 반대로 잉크가 묻어야 할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깊이에 따라 인쇄되는 잉크의 농담이 다르게 된다. 조각 오목판과 그라비아 오목판으로 나뉘어진다. ④공판: 판이 유지(특수종이)로 되어 있어 타자기로 타자를 하면 타자된 곳만 잉크가 침투되어, 인쇄가 되는 형식이며 프린트 인쇄도 이 경우와 같다. 마스터인쇄, 공판, 스크린인쇄, 등사판 인쇄가 해당된다. ⑤정전(靜電)인쇄: 전자인쇄(전자복사기의 복사방식)와 같이 인쇄시에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쇄 방식
인쇄기 종류	①평압식: 인쇄판이나 압력을 주는 장치가 서로 평면으로 만들어진 가장 원시적인 구조로서, 인쇄속도는 시간당 1,800장 정도이며, 불록판인쇄의 소량 인쇄, 즉 명함·카드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②원압식: 인쇄판은 평면이고, 압력을 주는 부분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평압식보다 인쇄속도가 빨라 시간당 3,600장 정도를 인쇄할 수 있다. 불록판인쇄의 중간 정도의 부수 1,000~1만 장의 인쇄물을 인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③윤전식: 인쇄판과 압력을 주는 부분이 모두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인쇄기. 이 종류의 인쇄기에는 낱장 종이를 사용하여 한 장씩 들어가는 매엽기(枚葉機:sheet-fed offset press)와, 두루마리종이를 사용하는 웹 윤전기(web-fed offset press)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윤전인쇄기라고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 The diagram illustrates three printing methods. 1. 평압식 (Flat Press): Shows a flat ink plate and a flat rubber plate being pressed together. 2. 원압식 (Cylinder Press): Shows a cylindrical ink plate and a cylindrical rubber plate being pressed together. 3. 윤전식 (Offset Press): Shows a complex system with multiple rollers and a sheet of paper being fed through them. ④잉크젯트방식 인쇄기: 잉크방울이 도트 매트릭스를 통과하여 분사됨으로서 원하는 문자를 종이위에 나타냄

2) 인쇄기계의 분류구조

가) 8442호와 8443호의 분류체계

인쇄용 기계	
HS 8442호 <분류요건>	HS 8443호 <분류요건>
-블록판(철판)인쇄, 평판인쇄, 오탁판(요판) 인쇄에 사용되는 장치 <분류물품> ①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등 인쇄용 부분품 ②활자의 구조용 또는 식자용 기기, ③인쇄용 블록·플레이트·실린더 등 인쇄용 부분품 제조용 기기 <제외물품> ①감광성 플레이트: 3701호 ②8456호~8465호의 금속가공기계 ③지형 건조기: 8419호 ④등사기,주소인쇄기용 커팅 또는 각인기계: 8472 ⑤8469~8472호의 타자기,계산기,기타 기계의 활자와 기타의 인자 부분품: 8473호 ⑥활자구조기의 필수부품을 구성하는 활자 모형과 주형이외의 주형: 8480호 ⑦자동구조 식자기에 사용되는 유.무선 송수신장치: 8517호, 8525호, 8527호 ⑧디지털 형식을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감광성 필름위에 잠상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 포토 플로터: 9006호 ⑨90류의 측정장치 등 기타 물품	①8442호의 인쇄용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 ②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 ③인쇄보조용 기계 <분류물품> ①인쇄기계 ②실린더식(원압식) 인쇄기계 ③윤전식 인쇄기계 ④잉크젯방식 인쇄기계 ⑤인쇄용의 보조기계: 자동급지기,紙송달장치, 일련번호 찍는 기계 등(분리제시여부 불문) <제외물품> ①보조적인 인쇄장치를 갖춘 포대에 물품을 충전하는 기계와 포장기(8442호) 또는 지나 판지를 제조하는 기기(8441호) ②직물제,고무제 등의 실린더 블랭킷과 카버: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③텔레프린터와 이와 유사한 유.무선장치: 8517호, 8525호, 8527호 ④사무용의 젤라틴판 또는 스텐실 등사기, 주소인쇄기와 기타 사무용 기기: 8469~8472호 ⑤사진식 복사기와 열식 복사기: 90류 ⑥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11. 제8444~8449 : 방직용 기계

인조섬유 제조 및 방직준비기계	
인조섬유 제조기계(8444호)	방직준비기계(8445호)
<분류물품> -인조섬유 방사기 -연신기 -합성섬유사의 텍스취용 기계 -스테이플 파이버 절단기 -인열기 등 <제외물품> -인조섬유 원료준비기계 : 8419호 또는 8477호 -유리섬유의 장단섬유 및 사의 방사기: 8475호	<분류물품> -yarn이나 트와인의 방직을 위한 또는 워딩,펠트,스터핑 재료의 제조를 위한 방직용 섬유 제조 또는 준비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 풍력선별기, 조면기, 타개기, 개면기, 카드기,코우밍기등 <제외물품> -제지용 념마 절개기: 8439호 -건조용 기계: 8419호 또는 8451호 -원심탈수기: 8421호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 직기 또는 특수 직물 직기에 사용되는 방직사의 준비기계(8445호)
<분류물품> -정방기, 연사기와 합사기, 권사기, 정경기, 정경호부기 등 <제외물품> -연마용,광내기용, 기타 완성 가공형 기계와 직물 권취용 기계: 8451호 -원피로부터 수모를 예취하는 모절단기계: 8453호 -침포에 식침을 하는 기계: 8463호



직조기와 특수직물 제조기	
직기(8446호)	편직기,자수포 등의 제조용 기계 등(8447호)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기타의 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기기	-편직기, 스티치본딩기 -망,레이스,뉴울,트리밍,자수포,터프팅 등 제조기



보조용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8448호)
펠트(부직포 포함) 제조,완성가공용 기계 및 모자 제조용의 형(8449호)

12. 제8450~8452 : 세탁기, 건조기, 재봉기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1	수세용·청정용·꺾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휴경 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방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재봉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기구·밀판 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나. 세탁기, 건조기, 재봉기의 분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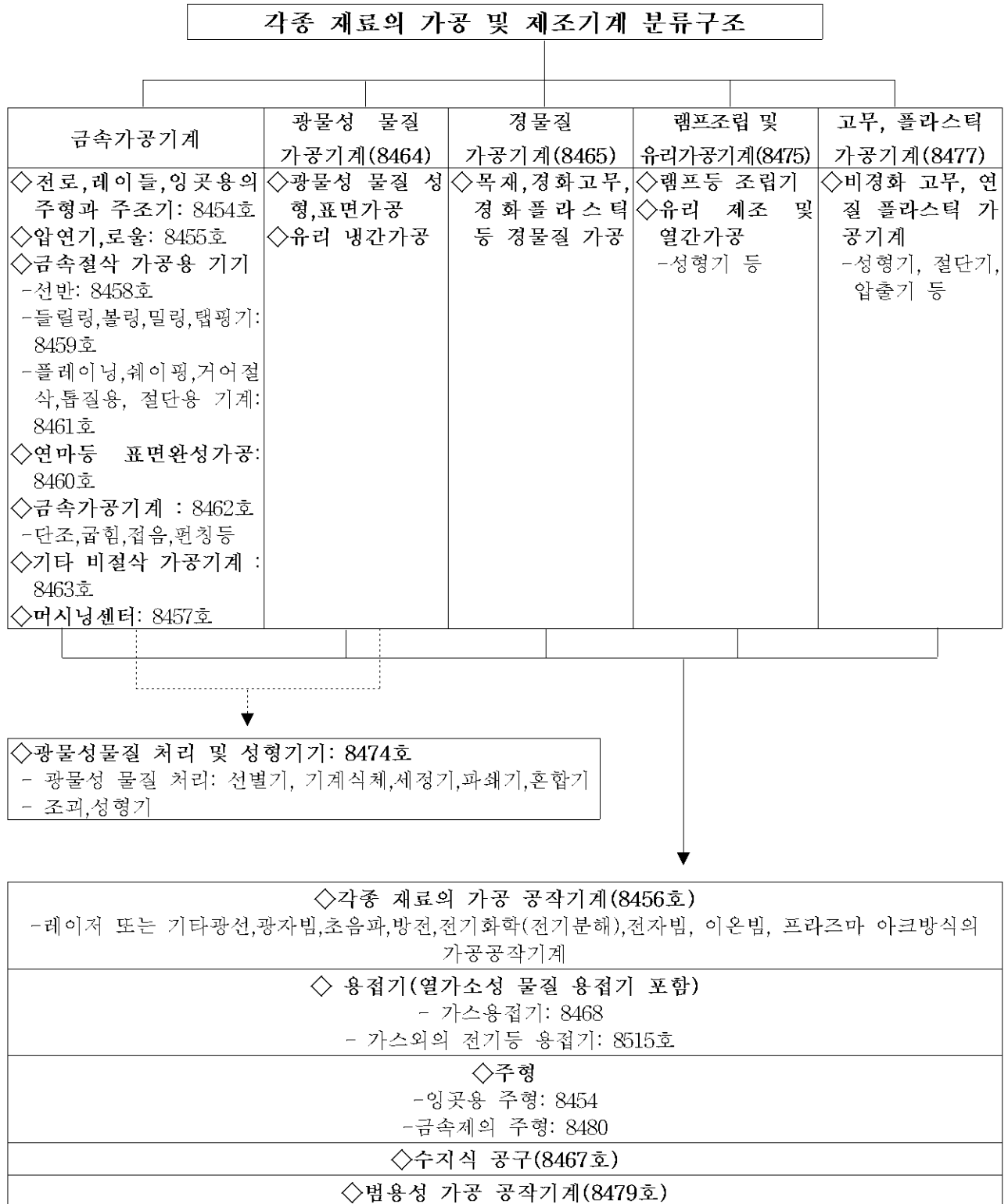
구분	분류물품	제외물품
세탁기 (8450호)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 세탁기 · 전기식 여부 및 중량여부 불문 · 세탁 및 건조 겸용 포함	-드라이 크리닝기: 8451호
건조기 등 (8451호)	①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수세용, 표백용, 꺾어짜기용, 청정용, 다림질용, 염색용, 건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계 ②방직 또는 직조후 외관을 개량(전단, 축용 또는 광택을 주는 것)하거나 특수한 새로운 성질(침투, 도포 등)을 부여하기 위해 사 또는 직물을 드레싱 또는 완성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③방직물의 권취용, 재권취용, 접음용, 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직물 및 옷감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세탁기도 포함됨.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제품을 마무리하거나 직물에 먹인 풀을 제거하는 데 사용.	-캘린더기: 8420호 -원심건조기와 원심분리기: 8421호
재봉기 등 (8452호)	①재봉기 ②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기구, 밀판, 덮개 ③재봉침	-재봉용 재봉기: 8440호 -편직-재봉기: 8447호

13. 제8453 : 원피, 모피 가공기계

분류물품	제외물품
①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계, 유피기 또는 가공기계 -탈모기, 탈육기, 해머링기, 피혁광택기, 그레이닝기 등	-재봉기: 8452호, -8419호 건조기 -캘린더기: 8420호 -원심분리형 건조기: 8421호 -염료 등 분무용 기기: 8424호 -도살장에서 사용되는 탈모기: 8438호 등
②원피, 모피 또는 피혁재의 신발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용 또는 수선용 기계 -피혁을 특정형상으로 절단하는 기계, 천공기, 장화 또는 구두 제조기계 등	-자동식 구두담는 기계와 아일레팅기: 8479호

14. 제8454~8466, 8474~8475, 8477, 8480호 : 각종 재료의 가공 및 제조기계

가. 각종 재료의 가공 및 공작기계 분류 개요



나. 금속 가공 및 제조기계 분류구조

주형, 성형기, 압연기	금속절삭 가공기기	소성(塑性) 가공기기
주형 ① 잉곳용 주형: 8454호 ② 단조 및 프레스 가공 금형: 8207호 ③ 주조용 주형: 8480호 다만, 탄소계, 유리계, 도자재료제의 것은 재질에 따라 6815, 7020, 6903 또는 6909호에 분류	◇선반(터닝센터 포함) -8458호 -선반: 공작물을 주축에 고정회전시켜 바이트로 절삭하는 공작기계 -금속을 변형시키는 스피닝 선반: 8463호 -터닝센터 ◇드릴링, 보어링, 밀링, 나선가공, 탭핑용 기기 -8459호 -drilling: 드릴 또는 비트를 이용하여 제품속에 구멍을 절삭 -boring: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기존 구멍의 내면을 마무리 -milling: 밀링 커터에 의해 평면 또는 윤곽을 가공하는 것 -tapping: 구멍에 나사의 날을 세우거나, 볼트 등의 날을 파는 나선가공기계 ◇금속 또는 서메트의 표면완성 가공기계 -8460호 -연마석, 연마제, 연마물품에 의해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 -deburring: 거치른 주조품 또는 절단금속의 가장자리의 거치른 부분을 트리밍 -sharpening: 공구 또는 커터 연삭기 -grinding: lapping: 공구(lap)를 대고 랩제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다듬질 -polishing: 가공물의 표면을 완성가공 -8459, 8461호를 제외한 조각용 머신 ◇플레이닝, 셰이핑, 슬로팅, 부로칭, 기어절삭, 기어연삭, 기어사상, 톱질, 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공작기계 -8461호 -planing: 절단날을 갖춘 공구로 물품의 외부 평면 또는 단면을 가공 -shaping: 아주 작은 치수의 물품 평면 절삭용 기기 -slotting: 주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 -broaching: 공작물의 표면 또는 구멍 내면에 여러 가지 형태 절삭 -기어절삭, 연삭, 사상기: 절삭방식에 의해 기어를 제조하기 위한 기기 -톱기계 및 절단기계	◇단조, 햄머링, 다이 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 굽힘, 접음, 교정, 펼침, 전단, 편칭, 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 금속가공프레스(HS 8462) -단조: 금속을 성형하기 위해 충격 또는 압력을 가해 가열된 금속을 가공하는 것 -stamping: 다이라고 하는 금속주형의 빈곳을 채우기 위해 충격이나 압력으로 금속을 강압하는 것 -bending: 휨가공 -Folding: 물결모양으로 접는 가공 -Straightening, Flattening: 롤러 등으로 평평하게 고르거나, 인발에 의한 가공 -Shearing(전단기): 한쌍의 전단날이 서로 단려짐으로서 재료를 절단 -Punching -Notching: 금속 굽는 기기 -Extruding press 등 ◇기타 비절삭 가공기기(HS 8463) -Drawing(인발기): 매끄럽게 하기 위해 잡아늘임 -나사전조기: 롤링 및 프레스에 의해 볼트 또는 스크루에 나사날을 세움 -線가공기 -금속선을 나선상으로 감는 기계 -Riveting: 리벳을 구부려 박다 -Swaging: 직경을 작게하기 위해 강압 -Spinning 선반: 제품의 내면 모양에 맞춘 형과 소재판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공구를 밀어붙혀 성형 -磁氣성형기 -와이어 밴딩기
성형기 ① 소결 방법으로 가압하여서 금속분 성형기: 8462호 ② 8474호: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 성형-造塊하여 일정한 형태로 프레스하는 방식 -대형 실린더 방식 -추출방식 -주물용 砂型 성형용 기계 ③ 절단방식에 의한 경화유리 성형기: 8464호 ④ 절단방식에 의한 목재, 경화고무, 경질플라스틱 등 경질물질 성형기: 8465호 ⑤ 롤링 또는 프레스 방식의 연질상태 유리성형기: 8475호 ⑥ 연질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기: 8477호		
압연기 ① 금속압연기: 8455호 ② 금속이외의 재료 압연기: 8420호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8456호)◇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전기분해), 전자빔, 이온빔, 플라즈마 아크방식 가공기 -다만, 초음파세정기(8479호)와 8515호의 용접용기기는 제외
◇머시닝센터, 유니트, 싱글스테이션, 트랜스퍼머신(8457호)◇ ◇용접기 및 수지식 공구◇ -용접기: 8468, 8515호; 수지식 공구: 8467호
◇기타의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8479호)◇ -초음파세정기, 금속제품의 모래·스케일 제거·연마용의 회전드럼, 범용성의 프레스, 선철파괴기·주철스크랩을 파괴하는 특수 스탬핑용 밀, 로우프제조기 또는 금속선체의 연전기

다. 금속이외의 재료 가공 및 제조기계 분류구조

광물성(鑛物性) 물질 가공기계(8464)	경물질(硬物質) 가공기계(8465)	램프 조립 및 유리가공용 기계(8475)	고무, 플라스틱 가공기계(8477)
◇대상물질 ①석,세라믹,콘크리트,석면 시멘트, 귀석 또는 반귀 석 등 광물성 물질 가 공기계 ②유리 냉간 가공기계 ☞액상 또는 가열 유리 가 공기계는 8475호에 분류 ◇분류물품 ①광물가공기계 -기계식 톱, 절단기, 裂斷 (Splitting)기계 -그라인딩,스무딩,폴리싱, 그라인닝기계 -드릴링 또는 밀링 머신 -旋削용, 조각용, 형절단용 기계 -그라인딩 휠 절단기 또는 완성가공기 -도자제품 가공기계 ②경질유리 냉간가공기계 -유리 절단기(휠이나 다이아 몬드 형) -유리절단(성형)기(다면체용 또는 커트글라스 제품용 등) -Trueing: 주로 끝을 매끄 럽게 하거나 底面을 평평 하게하며, 혹은 주입된 물품의 가장자리를 다듬 는데 사용 -연마기, 조각기 -광학용,안경용등 유리의 완성가공기 또는 연마기	◇대상물질 -목재, 코르크, 뼈, 경화고 무, 경질 플라스틱 등을 성형하거나 표면가공 ☞연질 플라스틱, 비경화 고무 가공기계는 8477 호에 분류 ◇분류물품 ①특정공업용으로 특수화 하지 않은 기계 -각종형의 톱기계 -모울딩 및 플레이닝 또는 밀링용 기계 -그라인딩, 샌딩, 폴리싱, 밴딩머시인 -조립기계: 결합제, 못 등 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기 계 등 -Morticing: 끌 등을 사용 하여 비원통형의 구멍을 파내는 것 -스프릴팅(조개는 기기),스텝 핑 등: 목재의 칩을 제거 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 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목재용 박피기, 용이 제 거기 등 ②특정공업용으로 특수화 된 기계 -통제조기, 연필제조공업 용 기계 -목재 조각기계 등	◇대상물질 -외피가 유리제인 램프,튜 브,밸브,후레쉬 밸브 조립 기계 -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 용 또는 열간가공용 기계 ☞경질유리 냉간가공기계 는 8464호 ◇분류물품 ①램프 등 조립기계 -전구의 진공봉지기 -백열전구, 무선용 밸브를 자 동 조립하는 회전식 기계 ②유리제조 또는 열간가 공기계 -평면 유리판 제조용 기계 -병제조기계 -각종 유리제품을 성형하 기 위한 특수한 기계 및 프레스 -유리섬유 제조기계 -광섬유 제조기계	◇대상물질 -비경화 고무나 연질 플라 스틱 가공 또는 제조 ◇분류물품 -고무,플라스틱제의 타이 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 형기 -고무사 절단기기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 프 레스 -압출기 등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8456호)◇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기분해),전자빔,이온빔, 프라즈마 아크방식 가공기 -다만, 초음파세정기(8479호)와 8515호의 용접용기기는 제외
◇용접기 및 수지식 공구◇ -용접기: 8468, 8515호; -수지식 공구: 8467호
◇광물성물질 처리 및 성형기기: 8474호◇ -광물성 물질 처리: 선별기, 기계식체,세정기,파쇄기,혼합기 -조괴,성형기
◇유리,광물성 물질,고무,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8480호)◇
◇기타의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8479호)◇ -초음파세정기, 금속제품의 모래·스케일제거·연마용의 회전드럼,범용성의 프레스, 선철파괴기·주철스크 랩을 파괴하는 특수 스텝핑용 밀, 로우프제조기 또는 금속선제의 연선기

라. 여러 재료의 가공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8456호)	수지식 공구(8467호)	광물성 물질 처리 및 성형기기(8474호)	범용성의 가공공작 기계(8479호)
◇각종 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 가공용 기계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플라스마 아크방식.	-사용중 손으로 지지하도 록 설계된 공구 -작업중 전중량을 지지하는 피로를 제거하기위해 보조 적인 지지구 사용가능 -일시적으로 지지대에 고 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용구사용 가능	◇대상물질 -토양, 점토석, 광석, 광물 성 연료, 슬랙 시멘트, 콘 크리트 등 고체의 광물성 물질 ◇분류물품 -선별, 체질, 분리, 세정, 파쇄, 분쇄, 혼합, 반죽에 사용되는 기계 -조괴기, 형입기 또는 성 형기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초음파세정기 -금속제품의 모래·스케일 제거·연마용의 회전드럼 -범용성의 프레스 -선철파괴기·주철스크랩 을 파괴하는 특수 스탬핑 용 밀 -로우프제조기 또는 금속 선제의 연선기 등

15. 사무용 기기(제8469~8473호)

HS	호의 heading
8469	타자기(제8471호의 프린터기를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 머시인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 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例 :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결사기·천공기·지철기)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사무용 기기

타자기,워드프로세서 HS 8469 호	계산기, 전자수첩 등 HS 8470 호	컴퓨터 및 단위기기 HS 8471 호	기타 사무용기기 HS 8472 호
①자동타자기 ②동일 문자를 타이프하는 기계 ③계산기구를 갖추지 않은 부기 회계용 타자기 ④숫자발신장치 또는 속도시험용 계수장치를 갖춘 타자기 ⑤워드프로세싱 머시인	①계산기,계산기능 있는 포켓 사이즈형 전자수첩 ②회계기 ③금전등록기 ④계산기기를 갖춘 기타의 기계 ※수동입력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천공카드, 천공테이프 등의 부호화된 형태의 자료만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8471호의 ③물품과 다름.	①자동자료처리기계 ②단위기기 ③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광학식 독취기 등	8469~8471호에 분류되지 않는 사무용 기기 -등사기 -주소인쇄기 -표권발행기(계산기구를 갖춘 것은 8470호,코인자동식은 8476호) -화폐분류기와 계수기 -현금자동지불기등

부분품(HS 8473 호)

<분류물품>

8469~847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타자기,회계기 등에 용지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용지 공급장치
- 타자기,회계기 등의 스페이스를 두는 자동장치
- 주소인쇄기에 부착하는 리스트 장치
- 계표기(製表機)용의 보조 인쇄장치
- 타자기에 부착하는 카피 홀더(copy holder)
- 주소인쇄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속제의 주소판
- 타자기,회계기,계산기 등에 결합되는 계산장치
-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의 디스크 드라이브 크리닝용의 디스켓트

<제외물품>

- 커버,휴대용 케이스 및 펠트패드(felt pad): 재질분류
- 가구제품(찬장 및 테이블): 9403호
- 스프링 및 이와 유사한 지지구: 재질분류
- 타자기 등 인쇄용 리본: 9612호

16. 기타의 기기(제8476, 8478, 8479호)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例: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8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나.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 8476호)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HS 8476 호)	
분류물품	제외물품
<분류요건> -하나 이상의 코인, 토큰 또는 마그네틱 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 각종의 기계가 분류된다(다만,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는 기계 또는 류주 혹은 부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는 기계 이외의 것) <분류물품> -기계의 주된 기능 및 용도가 제품의 자동판매에 있는 경우에는 가열장치 혹은 냉장장치를 갖춘 기계 또는 판매하여야 할 제품을 조제하는 장치(例: 과즙 압착기, 커피 또는 밀크의 믹서, 아이스크림 믹서)를 갖춘 기계가 포함된다. -우표, 철도용승차권, 초콜렛, 과자, 아이스크림, 담배, 음료(맥주, 포도주, 리큐르, 커피 또는 과즙과 같은 것), 화장품(향수 뽑는 기계를 포함한다), 양말, 사진 필름, 신문 등 판매용의 코인 작동식의 기계를 포함한다. -네임플레이트(name plate)를 금속의 스트립으로부터 타발(打拔)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화폐교환기도 포함한다	◇코인작동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것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 ①코인작동식의 정(例: 컵보오드용 또는 공중변소용의 것): 제8301호 ②주유소 또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 펌프: 제8413호 ③중량측정기: 제8423호 ④타자기: 제8469호 ⑤코인작동식의 구두닦기기계: 제8479호 ⑥전기면도기: 제8510호 ⑦전화기: 제8517호 ⑧텔레비전수상기: 제8528호 ⑨망원경, 사진기, 영사기: 제90류 ⑩가스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 제9028호 ⑪유희용구: 제9504호

다.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기 (제 8478호)

이 호에는 담배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의 것으로서 이류의 타호에 특게되지 않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은 기계를 분류한다. Stripping은 타작분리기 속에서도 행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① 담배의 잎을 벗기거나 또는 절단하는 기계
- ② 시이거 또는 권연제조기계(보조 포장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기계 (제 8479호)

1) 분류요건

제8479호는 84류 기계의 잔여호로서 타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각종 기계류가 분류되는 호로서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

- ① 이 표의 다른 부나 류의 주에 의해 84류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
- ② 이 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을 것
- ③ 84류의 다른 특정호에 분류되지 않을 것
 - 품명이나 기능에 의해 타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 및
 - 사용 목적이나 사용산업에 의해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 2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

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예) 오존발생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제습기
-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
예) 재봉기와 결합되어 실을 끊어주는 체인커터
 - 다만,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당해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 내연기관용 기화기(기화기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HS 8409호의 엔진 부분품으로 분류), 기계식 또는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

2) 산업용 로봇의 분류기준

산업용 로봇트는 용접 · 페인팅 · 하역 · 적하 및 양하 · 절단 · 조립 · 금속의 트리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봇트는 악조건의 환경(유독성물, 먼지 등)에서나 또는 힘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성의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작용 때문에 로봇트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툴 호우더 및 투울을 갖추고 있다(例 : 집게, 그립퍼, 용접 헤드).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트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수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트는 제외하며, 이와 같은 산업용 로봇트는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例 : 제8424호, 제8428호 또는 제8515호)

17. 범용성 부분품(제8481~ 8485호)

가. 관련 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481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8482	볼베어링 또는 로울러 베어링
8483	전동축(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 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
8484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이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개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카니칼 시일
8485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결연체·코일·접촉자 또는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탭·콕크·밸브(HS 8481호)

<분류요건>

- 기능: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서 액체나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
- 작동방식: 수동식과 자동장치(전동기, 솔레노이드,스프링, 浮遊 레버 등)에 의해 작동
- 기기형태: 탭(꼭지형태), 콕크(Cock) 및 밸브
- ⇒ 비경화 가황 고무제, 도자제, 유리제의 것은 재질별 분류



<기타 물품과 결합시 분류기준>

- 전,콕크,밸브+ 티어머스타드(온도조절기;바이메탈) 또는 manostat(가스 定流量 장치) 또는 9026호나 9032호의 자동조절기
 - ⇒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고 전, 밸브 등에 주요 특성이 있는 경우: 8481호
 - ⇒ 전,밸브 등에 주요 특성이 없는 경우에는 9026 또는 9032호에 분류
 - ⇒ 원격제어장치에 의한 경우에는 전, 밸브만이 8481호에 분류
-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 부분품: 관련 기계 부분품으로 분류
 - ⇒ 내연기관의 흡,배기 밸브(8409호), 증기기관의 슬라이드 밸브(8412호), 기계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8414호), 착유기용의 맥동기(8434호), 비자동식 그리이스용 니플(8485호)



<세부 분류물품>

- 역지(逆止)밸브
- 안전밸브: 압력이 제한된 값을 초과했을 경우에 유체의 일부를 방출하여, 압력의 상승을 억제
- 분기밸브: 하나의 밸브로 여러개의 호스나 관을 조정
- 액면계용의 제어밸브,차단밸브
- 방열기의 배수용 전
- 감압밸브: 유체의 압력을 자동적으로 감압하고, 감압 후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 소화전,소화콕크,소화호스용의 노즐 등 분무를 발생시키도록 콕크,밸브를 부착시킨 것
- 온도 제어식 밸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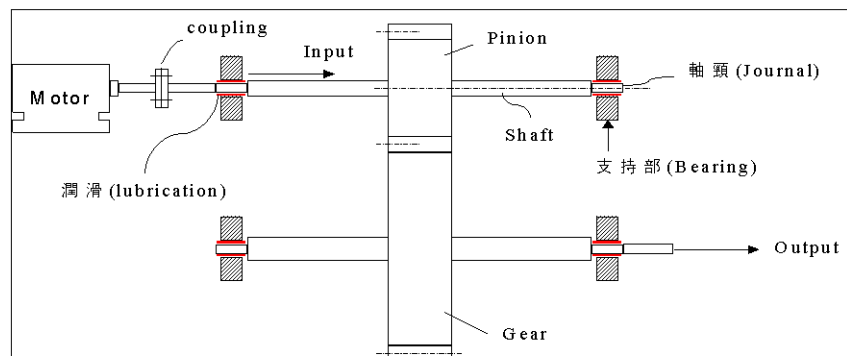
<제외물품>

- ①전(栓)·콕크·밸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것·도자제의 것또는 유리제의 것: 재질에 따라 분류
- ②수채·변소·목용탕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사용되는 폐수용의 U자형밴드와 수세식 변기물통(부착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들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例: 제3922호·제6910호·제7324호).
- ③증기기관용의 원심조속기(遠心調速機): 제8412호.
- ④증기에 의하는 인젝터펌프 및 이젝터펌프(injector and ejector pump): 제8413호.
- ⑤공기식 분무기: 제8424호.
- ⑥뉴우머틱식의 그라이스건(grease gun): 제8467호.
- ⑦가스용접용의 취관(吹管): 제8468호.
- ⑧아이스크림·주류·우유등을 분배하기 위한 계량장치를 갖춘 전(栓): 제8479호.

다. 볼 베어링 및 로울러 베어링(HS 848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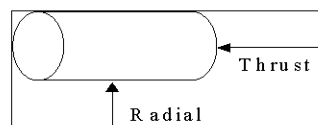
1) 베어링의 개념

베어링(Bearing)이란⁵⁰⁾ 회전축을 지지하고 축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아서 축을 매끄럽게 회전시키는 기계요소를 말하며, 베어링에 둘러싸여 회전하는 축의 부분을 저널(journal)이라 한다.



2) 베어링의 종류

축과 베어링의 접촉방법에 따라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하중의 작용방향에 따라 축에 직각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레이디얼(Radial) 베어링과 축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트러스트(Thrust) 베어링, 레이디얼 하중과 트러스트 하중을 동시에 받는 테이퍼 베어링(원추 베어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50) 실용 도해 기계용어사전(일진사)

<베어링의 종류>

[illegible]

＜세부 구름 베어링의 종류＞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니들 롤러 베어링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	원통·원추·통상(barrel-shaped) 등의 형을 한 로울러가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균일한 직경이 5mm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이상인 원통형의 로울러를 갖춘 베어링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로울러 베어링과는 상이하다(소호주 2)
		

다. 전동축, 기어, 클랭크 등(HS 8483호)

<분류요건>

- ①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 ②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분류물품>

①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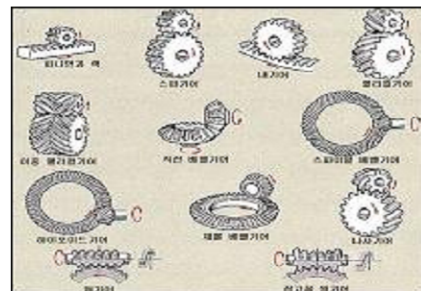
- 전동축: 축과 회전체가 고정되어 같이 회전하면서 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축으로 자동차의 뒤 차축 등에 사용
- 크랭크 샤프트: 직선 운동을 회전운동으로,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는데 사용
- 후렉시블 샤프트: 전동축에 힘 성을 주어서 축의 방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축
- 캠축: 사이클 기관에서, 흡 · 배기 밸브를 개폐하기 위한 캠을 설치한 축.

②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베어링 하우징: 베어링이 결합된 것도 포함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을 말함

③기어 및 기어링



④볼 또는 롤러 스크류: 회전운동을 선운동 또는 그 반대운동으로 변환



<롤러 스크류>



<볼 스크류>

⑤기어박스과 기타 변속기



<기어박스>



<분류물품>

⑥플라이 휠



⑦ 풀리



<풀리>



<풀리블록>

⑧클러치 : 수시로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또는 차단시키는 데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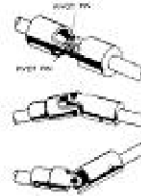
- 전자식 클러치는 8505호에 분류



⑨축연결구(Shaft coupling): 축과 축을 이어주는 장치



<Coupling>



<Universal joint>



<제외물품>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휠 또는 기타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

-똑같은 단면을 갖춘 철강의 봉: 제7214호 또는 제7215호

-후렉시블축 제조용의 연결장치(coupling attachment)를 갖추지 아니한 단순한 연선: 제7312호

-잔디깎는 또는 풀베는 기계의 cutter bar에 동력을 전달하는 진동식 연결봉(連接棒): 제8433호

-탄소제 또는 흑연제의 베어링: 6815호

-둘이상의 풀리블록의 조립품(호이스트): 8425호

-전자식 클러치: 8505호

-단조에 의한 황단조품(荒鍛造品): 7207호

-시계 부분품: 9114호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축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17부에 분류: 전동축(프로펠러축), 기어박스 및 차동치차는 8708호에 분류

⇒기관(엔진)의 내부 부분품은 8483호에 분류: 자동차 기관용 크랭크 축, 캠축

라.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등(HS 8484호)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등(HS 8484 호)

분류물품	제외물품
①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분류요건: 금속이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 -구성요소 · 석면(또는 때때로 펠트·판지 기타의 비금속성재료)의 심을 2매의 금속판 사이에 끼운 것. 또는 ·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 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가스켓 또는 조인트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穴)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싸거나 또는 ·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박을 적층하여 압축시킨 것. -용도: 주로 어떤 종류의 전동기 혹은 펌프, 또는 특정한 관(管)접합에 사용 -가스켓: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가 서로 접촉할 경우, 접촉면에서 가스나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 넣는 패킹(packings).  ②메카니칼 시일: 기계에 장착되어 진동 또는 동작부분에 의해 받는 압력을 견디며, 고압의 누출방지를 위해 평면과 회전면 사이에서 누출방지용 조인트로 작용 	-석면제의 가스켓과 조인트: 6812호 -금속의 판 또는 박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의 것은 일반적으로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기계용의 패킹(예: 석면코오드제의 것은 6812호) -오일 실 링: 8485호 

마. 기계류의 부분품(HS 8485호)

<분류요건>

기계류의 부분품중 다음에 계기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비전기식 부분품

- ①특정의 기계(제8479호 혹은 제8543호 또는 제17부·제90류 등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히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당해 기계와 동일한 호(부분품에 관하여 단독의 호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독의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 ②제8481호에서 제848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품.
- ③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1 혹은 제84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부분품



<분류물품>

①비자동식의 윤활유용 포트

②그리스용 니플



③수동식 휠



④레버 및 손잡이



⑤안전덮개



⑥오일시일링



⑦베이스 플레이트

⑧선박용 또는 보트용의 프로펠러 및 패들휠



제6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전 등(제85류)

Ⅰ. 85류의 주

1. 주의 내용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 매트 패드, 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 가열식의 의류, 신발류, 귀가리개,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 제8512호, 제8540호,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 수는 아아크 정류기는 제8504호에 분류한다.

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청소기(건식과 습식을 포함한다), 바닥광택기, 식품용 그라인더, 식품용 믹서, 과즙 또는 야채즙추출기(수량을 불문한다).

나. "가"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이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의 것.

다만, 팬,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의류용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4.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또는 막(膜)회로 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터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당해 구성부분이 미리 정해진 패턴에 따라 상호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이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 불연속 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터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딕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딕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모듈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6.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분류한다. 이를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 이외의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매체는 이 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라 함은 파손, 절단, 소진 또는 기타 이유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소호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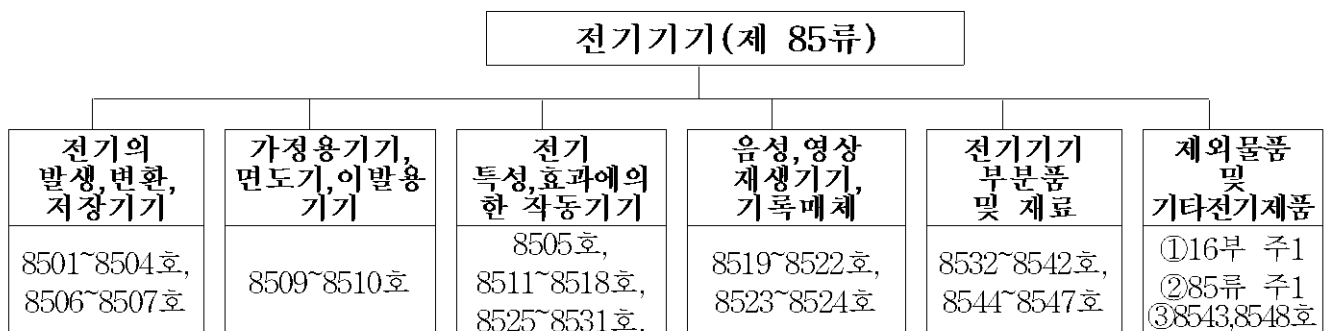
1.소호 제8519.92호 및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카세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을 분류한다.

2.소호 제8542.10호에서 "스마트 카드"란 칩의 형태로서 전자 집적회로(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카드를 말하며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불문한다.

II. 85류의 분류체계

1. 구성내역

가. 개요



85류는 47개⁵¹⁾의 호(Heading)와 287개의 소호(Sub-head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①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된다.

<제84류와 제85류 전기기기의 분류유형>

일반적으로 84류에는 기계류가 분류되고 85류에는 전기식 기기가 분류되나 어떤 기계는 제85류의 각 호에 특제(예: HS 8509호의 전동식 가정용 기기)되어 있고,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각종의 기계류가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제84류에 분류된다.

-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기기: 8467호의 수직식 전동공구, 8414호의 선풍기, 8421호의 탈수기, 8450호의 세탁기 등
- 전기 가열식의 기계류: 제8403호의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 등
- 전자식의 기계 또는 전자식 장치를 갖춘 기계: 전자식 리프팅 헤드를 갖춘 크레인
- 전기식의 기계 또는 전기식 장치를 갖춘 기계: 전자 계산기, 자동자료처리 기계, 각종 전기 제어장치를 갖춘 가공기계 등

이 류에는 전기용품이 아니지만 영구자석(자화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및 영구자석식의 가공물 호올더도 포함된다(제8505호).

또한, 이 류에는 특정형의 전열기기[예: 爐 등(제8514호) 및 난방기기·가정용기기등(제8516호)]만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전기 가열식의 기기는 타류(주로 제84류)에 분류된다.

-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 제8402호
- 공기조절기: 제8415호
- 배소·증류 또는 기타의 기기: 제8419호
- 캘린더기 또는 기타 압연기 및 동질린더: 제8420호
- 가금용의 부란기와 육추기: 제8436호
- 나무 코르크·피혁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낙인기계: 제8479호
- 의료용 기기: 제9018호

②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16부 주1 및 85류 주1에 의한 물품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51) 85류는 8548호까지 호가 있으나 2002년 HS협약 개정시 8508호가 8467호로 통합되어 47개의 호로 구성

<85류 제외품목>

구분	품목	관련규정
16부 제외품목	①벨트나 벨팅,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 : 플라스틱제(39류), 고무제(40류) ②가죽 및 모피제품: 제42류, 제43류 ③支持具(보빈,스풀,코프,코운,코어,릴 등):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 ④기계용의 천공카드: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 ⑤방직용 섬유제 물품 : 제59류 ⑥귀석과 반귀석제의 것: 제71류 ⑦범용성 부분품: 플라스틱제(39류),비금속제의 것(제15부) ⑧드릴 파이프: 7304호 ⑨금속제 엔드레스 벨트: 선이나 대의 것(15부) ⑩제82류 또는 제83류 물품 ⑪제17부 물품, 제90류 물품, 제91류 물품 ⑫호환성 공구(제8207호,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 기계용 부러쉬(9603) ⑬제95류 물품, 타자기용 리본(제9612호)	16부 주1
제85류 제외품목	①전기모포(제6301호),베드패드,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등 ②유리제의 외피(전구용 등): 제7011호 ③제94류의 전기 가열식 가구	85류 주1

나. 세부 구성내역

1)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

HS	호의 해당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3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6	일차전지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 및 면도기와 이발용품과 모발 제거기(제8510호)

HS	호의 해당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8510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 제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

HS	호의 heading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크래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호울더, 전자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식 리프팅 헤드
8511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윈드스크린 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 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러링통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 전화기 및 반송 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 세트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8526	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 조절기기
8527	무선전화·무선전신 또는 라디오 방송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8529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계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30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4) 녹음 또는 음성재생용 기기, 영상기록기 또는 재생기

HS	호의 heading
8519	턴테이블(레코드 턱)·레코드 플레이어·카세트 플레이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 기록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520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비디오 튜너를 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2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5)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유사 기록물용 기록매체

HS	호의 해당
8523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기록이 안된 것에 한하며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

HS	호의 해당
8532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셋)축전기
8533	전기 저항기(가감 저항기와 전위계자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8534	인쇄회로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 억제기·플러그·접속함) 다만, 전압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홀더·접속함) 다만,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39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 램프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예 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 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활상관)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8545	탄소전극·탄소부러쉬·램프용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7)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

HS	호의 해당
8544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8546	애자(재료의 종류여부를 불문한다)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판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낸 것에 한한다)

8) 기타의 전기기기 및 전기 부분품

HS	호의 해당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분류원칙

기계와 부분품에 대한 분류원칙은 2절에서 전술하였기에 여기에서는 85류에 적용되는 분류원칙을 주(Note)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가정용 전기기기(제8509호)

- 1) 관련규정: 85류 주 3
- 2) 분류요건

HS 8509호에 제기된 가정용 전기기기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구분	해당품목
중량무관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은 중량과 관계없이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함. -진공소제기(건식,습식) -바닥광택기 -식품 그라인더 -식품 믹서 -야채즙 또는 과즙 추출기
중량20Kg이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은 중량이 20Kg이하인 것만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며, 20Kg이상인 공업용은 주로 84류에 분류함. -중량 무관 물품 -84류 분류물품: 팬과 후드(8414), 원심식 의류건조기(8421),접시세척기(8422),가정용 세탁기(8450), 로울기 또는 의류용 다림질기(8420,8451호), 재봉기(8452), 전기가위(8467) -8516호 물품을 제외한 것

나. 인쇄회로(제8534호)

- 1) 관련규정: 85류 주 4
- 2) 분류요건 및 기준

구분	내 용
개념	-절연기판 위에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또는 막(膜)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터스·저항기·축전기)을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당해 구성부분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이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 불연속 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터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분류는 아래 제외 부분 참조) 다만,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포함된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종류	-일반적인 인쇄회로: 절연기판위에 수동소자를 형성하여 만든 회로(능동소자가 없어야 함) -기초회로 또는 공회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회로 -이중회로(기판양면에 인쇄), 다층회로(여러층으로 이루어진 회로)
제외	-인쇄공정에서 얻어지는 개별 수동부품(저항기,축전기,인덕터스 등): 각각 해당호에 분류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 또는 접속시킨 회로 : 16부 주2 또는 90류 주2 적용하여 분류

<막회로 기술>

구분	내 용
박막회로 (Thin Film)	기판위에 진공증착법이나 화학적 방법 등(PVD,CVD)에 의해 막을 형성한 후 마스크를 사용하여 또는 식각방법을 통해 패턴을 형성하는 회로
후막회로 (Thick Film)	孔版인쇄방식인 스크린 인쇄[비화선부(非畫線部)가 되는 부분을 형지(型紙) 또는 아교재(材)로 덮어씌운 다음, 그 위에서 잉크를 부여하면 화선부(畫線部)에만 잉크가 스크린을 통하여 인쇄되는 방식]에 의해 패턴을 형성한 후 판을 가열하여 만든 회로

다.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제8542호)

- 1) 관련규정: 85류 주 5
- 2) 집적회로 개념 및 분류기준

구분	내 용
집적회로	<관세율표> -수동 또는 능동소자나 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디바이스이며, 단일 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수동소자로만 구성된 회로는 제외 <백과사전> -많은 전자회로 소자가 하나의 기판(基板:substrate) 위 또는 기판 자체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초소형 구조의 기능적인 복합적 전자소자 -집적회로는 혼성집적회로(混成集積回路:hybrid IC)와 모놀리식집적회로(monolithic IC)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혼성은 박막(薄膜:thin film) 혼성집적회로와 후막(厚膜:thick film) 혼성집적회로로 나눈다.
	<모노리딕 집적회로> -관세율표상 개념: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백과사전상 개념: 칩(chip) 또는 다이(die) 위에 전자회로를 형성시켜 만들며, 이들 칩에 들어 있는 개개의 회로 소자수는 소규모 집적회로(SSI)에서는 약 100개 미만, 중규모 집적회로(MSI)에서는 100~1,000개, 대규모 집적회로(LSI)에서는 1,000~10만개, 그리고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에서는 10만개 이상이다.
	<혼성집적회로> -관세율표상 개념: ①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②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딕 집적회로 등)를 ③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별개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소자는 이론상은 제거하고 대체할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제조 상태 하에서는 비경제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이다. -백과사전상 개념: 막(膜)집적회로에 반도체소자와 개별적 수동회로(受動回路) 부품을 합쳐서 전자회로를 구성시킨 것이며, 막집적회로는 절연성기판 위에 박막 또는 후막의 형태로 여러 개의 회로소자(주로 수동회로소자)를 형성한다.
	제외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된 막회로: 8534호 -혼성집적회로로서 분리 가능한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 ·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를 구성하는 것: 당해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 · 기타의 조립품: 16주 주2 (b), (c) 규정 적용

3) 전자 초소형 조립품 개념 및 분류기준

구분		내 용
초소형 조립 회로	개념/ 기준	-초소형조립품은 초소형화된 개별 능동부품 또는 개별 능동부품 및 수동부품을 조립 또는 상호접속시켜 만들어진 것이다. -개별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전자 구성부품으로서, 단순능동 전기기능(제85류 주5(A)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스)또는 단순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종류	-주형 모듈 -마이크로 모듈

4) 반도체 디바이스 및 집적회로 우선 분류기준⁵²⁾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하여 분류한다.

라. 기록매체 분류기준(제8523, 8524호)

1) 분류개요

기록매체 품목분류 개요		
사진 및 영화용 필름 HS 37 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 -메모리: HS8542호 또는 8473호 (모듈형태의 것) -드라이브 형태의 보조기억장치: 8471호 · 자기 테이프 구동장치· 자기 카드 구동장치 및 자기 디스크식· 자기 드럼식 또는 자기식의 기억장치 등	기타의 기록매체 -자기 테이프, 디스크, CD, DVD, 메모리스틱, 마그네틱스트라이프를 저장한 카드, PET 카드, 멀티미디어 카드 등 -HS 8523호(기록되지 않은 것), 8524호(기록된 것) ※스마트 카드(8542호), 프록시미디어 카드(8543호)

2) 기록매체의 세분 분류기준(85류 주6)

가) 기록매체가 사용기기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매체 : 제8523호
-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매체 : 제85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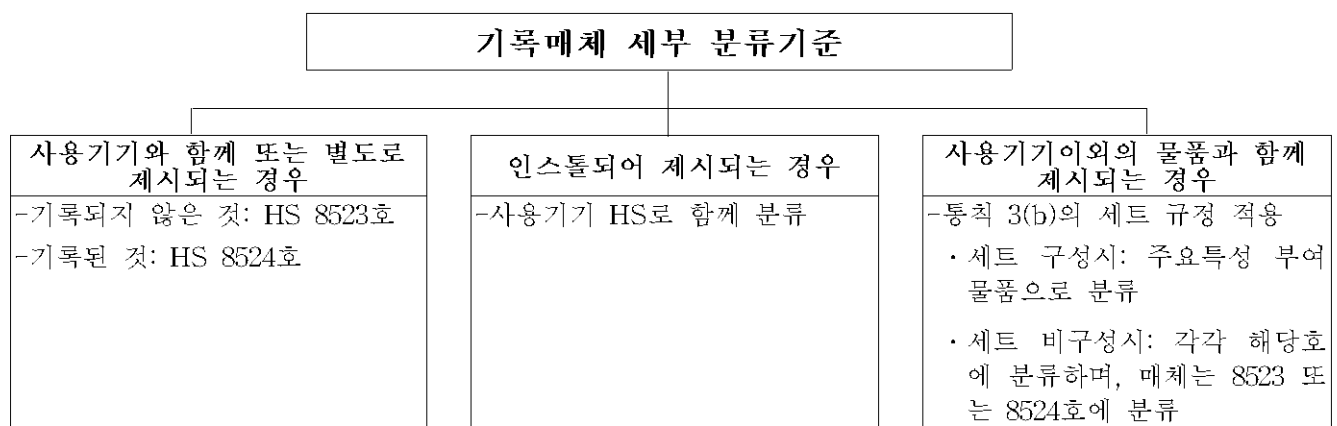
52) 필자주: 85류 주5의 후단 규정으로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제8541호 물품 또는 제8542호의 물품은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에 해당하는 물품이 관세율표의 다른 어느 호에 계기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제8541호 및 제8542호는 기능이 아닌 제조방법 또는 일정 형태의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이므로 8541호 또는 8542호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능에 관계없이 최우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8541호 또는 8542호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기능이 아닌 제조방법 또는 일정 형태의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최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용기기에 인스톨되어 제시되는 경우: 사용기기 HS로 함께 분류

다) 사용기기이외의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 통칙 3(b)의 규정에 의한 Set를 구성하는 경우: 주요특성을 부여하는 물품과 함께 분류
- 통칙 3(b)의 규정에 의한 Set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매체는 HS 8523 또는 8524호에 분류

상기한 분류기준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마. 8501~8504호 물품과 다른 호와의 관계

1) 관련규정: 85류 주 2

2) 내용

8501~8504호(전동기,발전기,변압기 등)의 물품에는 8511호(내연기관 시동용 또는 점화용 기기, 내연기관에 부착되는 발전기), 8512호(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 조명용 또는 신호용 기기 등), 8540호(브라운관 등), 8541호(반도체 디바이스), 8542호(집적회로 등)의 물품을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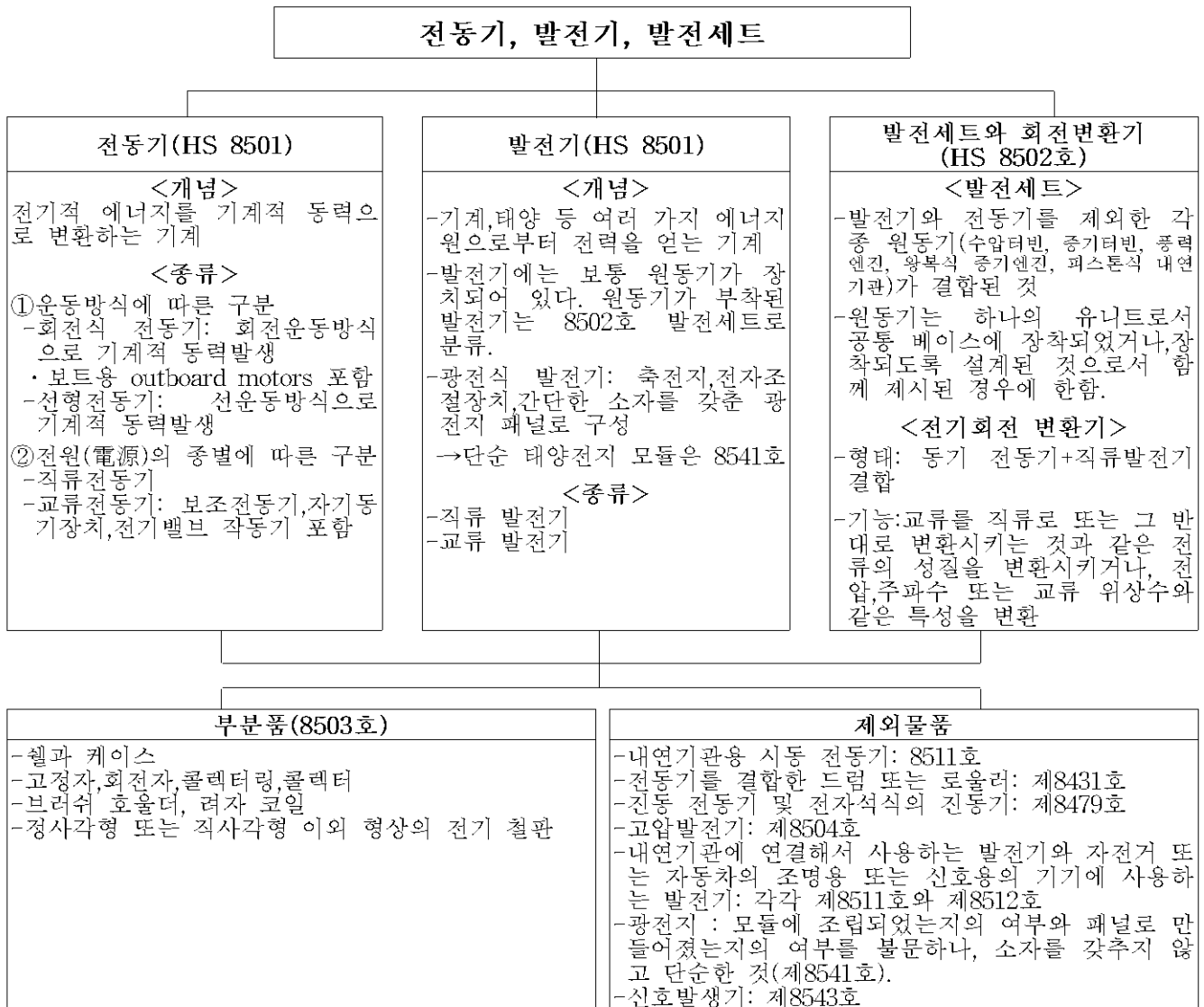
Ⅲ. 85류의 세부 분류내역

1. 전기의 발생, 변환,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

가. 관련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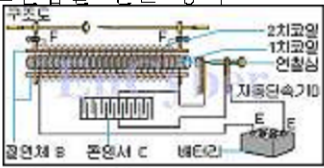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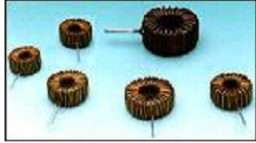
HS	호의 heading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3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6	일차전지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전동기와 발전기 및 발전세트



다. 변압기와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HS 8504호)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유도자(HS 85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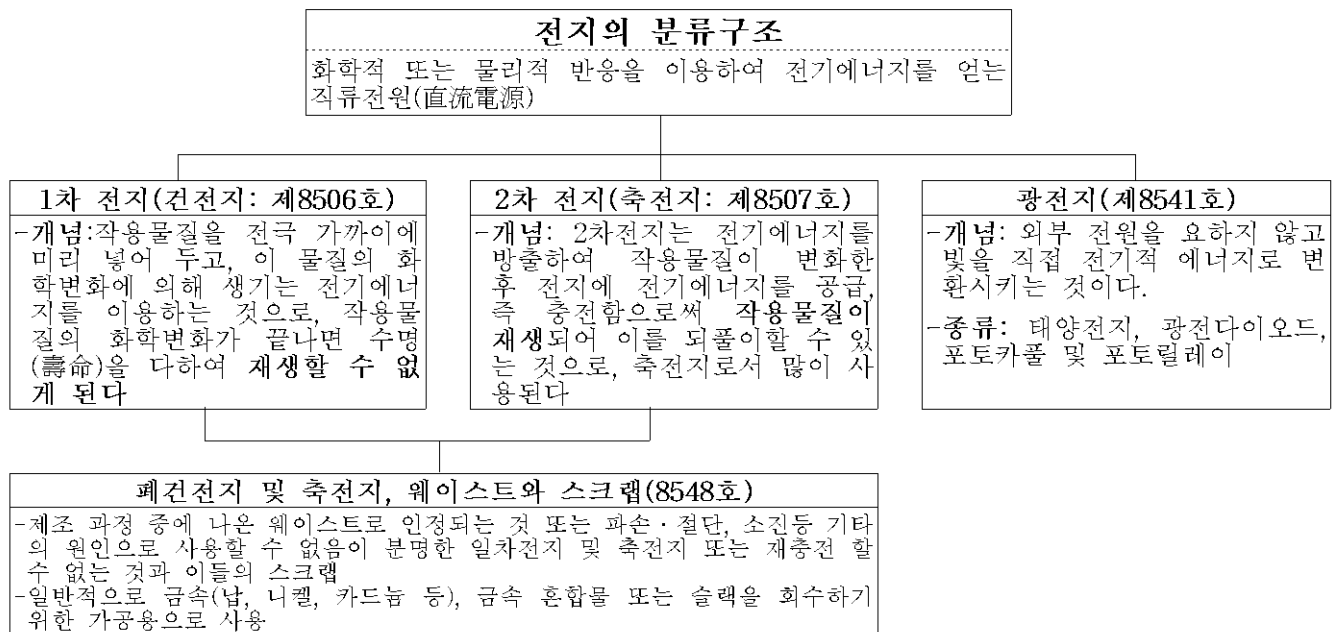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인덕터
-개념: 교류 전압의 크기를 높이거나 낮추어 주는 장치 -원리: 변압기는 자기장이 변할 때에 그 자기장 안에 놓인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 -구조: 얇은 규소 강판을 층층히 쌓아 놓은 철심과 코일로 구성 -종류 - 철심이 내외여부: 내철형 변압기, 외철형 변압기 - 냉각방식: 전식, 유입(자연대류에 의해 냉각시키는 유입식과 강제순환시키는 송유식) -유도코일(Induction coil)도 포함 - 전류의 단속(斷續)에 의한 전자기유도(電磁氣誘導)를 이용해서 고전압을 얻는 장치 	-개념: 전기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벨트)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 결합 가능 -작동원리: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변압하여 작용하는 것에 기초 -유형: ①정류기: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 ①인버터: 직류가 교류로 전환 ②교류변환기 및 사이클변환기: 교류(단상 및 다상)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 ③직류변환기: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 -종류: - 반도체 변환기: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며,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예: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 - 가스방전변환기: 수은아크정류기, 백열음극을 가진 열이온정류기 - 기계적 변환요소를 가진 변환기: 접촉형 정류기, 수은제트 터빈 정류기, 진동정류기 - 전해 정류기: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어떤 용액과 결합해서 전극으로 사용되는 어떤 물품의 결합물이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원리를 근거 -사용례: -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예: 기관차)을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 - 전기공급용 변환기: 축전지용 충전기, 전기도금용 및 전해용의 변환기, 고압직류를 공급해주는 설비용의 변환기, 안정용 전원공급기 등	-개념: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  -용도 및 형태: 무선회로·계기 등에 사용되는 작은 초우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되는(예: 단로대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진 인덕터 또는 인덕턴스도 이 호에 분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일반 전원 또는 예비 전원 등을 사용할 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순간 정전, 과도 전압 등으로 인한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장치

※파워팩: (power pack): 야외 촬영시 조명장치에 사용되는 전원공급을 위한 휴대용 파워 팩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 안정기: 철심에 코일을 감은 초크코일로 형광램프와 직렬로 연결하여 전류의 증가를 방지하는 장치.

라. 일차전지와 축전지(HS 8506호, 8507호)



2. 특정의 가정용 기기 및 면도기와 이발용품과 모발 제거기

가. 관련호의 구조

HS	호의 해당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8510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 제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나. 가정용 전기기기(제8509호)

구분	해당품목
중량무관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은 중량과 관계없이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함. -진공소제기(건식,습식) -바닥광택기 -식품 그라인더 -식품 믹서 -야채즙 또는 과즙 추출기
중량20Kg이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은 중량이 20Kg이하인 것만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며, 20Kg이상인 공업용은 주로 84류에 분류함. -중량무관 물품 -84류 분류물품: 팬과 후드(8414), 원심식 의류건조기(8421),접시세척기(8422),가정용 세탁기(8450), 로울기 또는 의류용 다림질기(8420,8451호), 채봉기(8452), 전기 가위(8467) -8516호 물품을 제외한 것 ◇주요 분류물품 -마루를 쓸고,닦고,씻어내는 기기 및 세척후 오수 또는 비누거품을 흡수하는 기기. -마루를 닦기전에 마루에 광택나는 재료를 살포하는 기기, 이 기계에는 보통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감자용의 탈피기·취피 및 절단기등. -각종슬라이서(예 : 육·소세이지·베이컨·치이즈·빵·과실 또는 야채용의 것). -칼 가는 기계 및 나이프 클리너.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폐기물을 분쇄하는데 사용된다. -전기치솔 -공기가습기와 공기제습기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타앞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 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

이 호에는 분리형의 전동기로 구동되는 기기(후렉시블 샤프트·전동벨트 또는 기타의 전동장치에 의하는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외되며, 또한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예 : 식품공업용·연돌소제용·기계클린용 또는 도로소제용의 기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8210호 또는 제84류에 분류된다.

다. 면도기, 이발기, 모발제거기(제8510호)

<분류요건>

- 전동기 또는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자장한 것
- 사람에게 사용되건, 양모를 깎는데 사용되건, 혹은 말이나 가축에 사용되건, 여하 불문



<분류물품>

- 면도기
- 이발기
- 모발제거기



<제외물품>

- 분리된 전동기로 구동되는 신축성이 있는 축에 의하여 조작되는 이발기: 8214호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

가. 관련호의 구조

HS	호의 해명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 크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호올더, 전자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식 리프팅 헤드
8511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자석발전기 · 점화코일 · 점화플러그 · 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직류발전기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윈드스크린 와이퍼 · 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 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 · 광자빔식 · 초음파식 · 전자빔식 · 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헤어드라이어 · 헤어커일러 · 커어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셋이 있는 유선 전화기 및 반송 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 세트
8525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8526	레이다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 조절기기
8527	무선전화 · 무선전신 또는 라디오 방송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 ·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8529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계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30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 · 안전 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나. 전자식 및 영구 자석과 관련제품(8505호)

<분류물품>

- ①전자식: 주로 연철심의 주위에 전선을 감은 코일로 되어 있으며,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철심 위에 자성이 부여되므로, 인력용이나 반발용으로 사용
- ②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③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호울딩 장치: 피가공물이 가공되는 동안 피가공물을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자석이 사용된 여러가지 형의 장치
- ④전자식의 클러치와 커플링: 어떤 형은 가동식의 전동자의 주위에 고정된 코일로 되어 있다. 전동자는 전류가 통하면 코일내로 끌려 들어지고 전류가 차단될 때에는 스프링에 의하여 다시 코일밖으로 끌어내진다. 이 호에는 또한 변속커플링이 포함된다.
- ⑤전자식 브레이크: 전자식장치로 제어되는 기계적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브레이크는 불포함
- ⑥전자식 리프팅 헤드



<제외물품>

- ①결합제를 가한 자성페라이트로서 분말 또는 펠릿상의 것: 제3824호
- ②기계류·완구·유희구등과 함께 제시되고 또한 그 일부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전자식·영구자석 또는 자석장치: 이들의 기계·장치등과 함께 분류
- ③자기기록용 매체: 제8523호
- ④안과용 또는 외과용으로 설계된 전자식: 제9018호

다.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 부속되는 발전기와 개폐기(8511호)

<분류물품>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등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와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및 동 개폐기가 분류됨.

- ①점화 플러그
- ②점화용 자석 발전기: 점화플러그에 공급되는 필요한 고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
- ③마그네틱 플라이휠: 점화용의 저압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플라이 휠을 부착한 자기장치
- ④배전기: 점화플러그에 대하여 차례로 점화전류를 배전하며 또한 점화코일의 일차권선에 전류를 보내거나 차단시키기 위하여 단속기를 갖추고 있다
- ⑤점화코일: 특별히 만든 유도코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원통형의 용기에 넣어져 있다. 단속기를 거쳐 일차코일을 축전지에 접속하면 고전압이 이차측에서 발생하여 배전기를 경유하여 점화플러그에 유도
- ⑥시동 전동기(starter motor)
- ⑦발전기(직류용 및 교류용):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며,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자동차·항공기등의 조명장치·신호장치·가열장치 기타의 전기장치에 급전을 하기 위하여 사용
- ⑧昇壓코일: 시동시의 기관의 회전속도가 동기관의 자석발전기를 작동시키기에는 너무 낮을 경우에 사용되는 소형 유도코일이며, 주로 항공기에 사용된다
- ⑨Glow 플러그: 점화플러그와 유사하나 전극 및 포인트의 대신에 점화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작은 저항체를 갖추고 있어서 전류가 흐를 때에 그 저항체는 가열된다. 디젤 기관의 시동前 및 시동中에 실린더내의 공기를 가열시키는데 사용
- ⑩Heating coil: 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디젤기관의 공기취입구에 부착
- ⑪직류발전용 개폐장치: 기관이 정지 또는 저속도로 회전할때에 직류발전기가 축전지의 전류를 소비하여 전동기로서 구동되는 것을 방지



<제외물품>

- ①공항등에서 사용되는 내연기관의 시동용기기로서 주로 변압기 및 정류기로 구성된 것: 제8504호
- ②축전지: 제8507호
- ③조명만의 목적으로 자전거에 사용되는 직류발전기: 제8512호

라. 조명, 시각 신호용 기구 및 램프

1) 조명, 신호용 기구 및 램프의 분류구조

조명, 신호용 기구 및 램프의 분류구조

자동차, 자전거용 (8512)	휴대용 램프(8513)	신호등 및 시각신호용기기 (8530,8531)	램프(8539)	조명기구(9405)
◇분류요건 -자동차용,자전거용 ◇기기종류 -각종 헤드램프 -미등,측등,정지등,등록판등 -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등 -내부조명등 -택시표시등 신호기	◇분류요건 -자장된 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전지 램프 ◇기기종류 -포켓 램프 -기타 휴대식 램프 -모르스 신호용 램프 -광부용 안전등 -보석공 등이 사용하는 시험용 램프	◇8530호 분류요건 -정지식 신호가 아니어 야함.(8310,9405) -신호등,점멸등 ◇8531호 분류요건 -정지식 신호가 아니어 야 함.(8310,9405) -항공기,선박,열차용의 점멸,신호등 -표시반: 지도판이나 전기식 광고표지판은 제외	◇여러가지 형상의 유리제나 석영제의 용기로 구성된 전구 ◇필라멘트,방전,적외선 및 자외선, 아크램프	◇램프와 조명기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각종의 광원(양초,기름, 석유,가스,전기등) 사용 -램프홀더,스위치,플러그등이 부착 -열차,선박,항공기용 -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 -광고용 판,광고용 램프

☞ 일반적으로 8539호에는 9405호 조명기구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전구 형태의 것이, 9405호에는 가구의 일부로서 사용가능토록 제작된 형태의 조명기구가 분류됨.

2) 자동차 및 자전거용 전기식 조명 또는 신호용 기기 등(HS 8512호)

자동차 및 자전거용 조명,신호용등(HS 8512 호)

분류물품	제외물품
<분류요건>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함. <분류물품> ①직류발전기: 타이어 또는 바퀴테의 한쪽을 회전하는 마찰차에 의해 전류 발생 ②전지호출터: 자전거의 조명장치용 ③전지식램프: 자전거에 장치 ④각종 헤드램프 ⑤측등·미등·정지등·등록판등. ⑥브레이크라이트·방향지시등·리버싱램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⑦상기램프 몇개를 조합하여 한개의 케이스에 조립 ⑧내부조명등 ⑨외부 feeler에 의해 작동되는 주차장치: 피일러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에 점등 또는 기타의 신호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 ⑩추광신호기: 따라가는 차의 존재를 지시하는 신호를 운전자에게 자동식으로 보내는 것 ⑪기타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택시, 경찰차·소방차 등용의 조명표지 등) ⑫경보기·사이렌 기타의 전기식음향신호용의 기기. ⑬윈드스크린 와이퍼 ⑭제상기 및 제무기	제외물품 ①유리제 렌즈: 제7014호 ②마이크로폰·가청주파증폭기 및 확성기로 구성되는 전기음향증폭세트로서 트레일러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경적 또는 기타의 노상의 음을 견인차의 운전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제8518호 ③제8536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기기를 부착한 배전반·판넬 및 기타 베이스(예: 조종하는 칼럼에 설치하는 스위치류의 조립품): 8537호 ④시일드 비임형 전구유닛을 포함한 제8539호의 전등. ⑤길게 잘랐거나 연결기에 고정되었거나 또는 세트(예: 점화선세트)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절연전선: 제8544호 ⑥제상기 또는 제무기로서도 작용하는 비전기식 자동차용난방장치: 제7322호 또는 제8708호

3) 휴대용 램프(HS 8513호)

<분류요건>

- 자장된 전원(건전지, 축전지 등)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되고
- 휴대용의 전지 램프



<분류물품>

- 포켓 램프
- 기타의 휴대식 램프
- 모로스 신호용 램프
- 광부용의 안전등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용 램프
- 피스톨, 펜등의 형상으로 된 회중전등



<제외물품>

- 자동차용 또는 자전거용 조명용 기기: 8512호
- 고정된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검사용 램프, 이와 유사한 것: 9405호
-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진단용 램프(목구멍, 귀의 검사용): 9018호
- 사진용 섬광기구: 9006호

4)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교통관제기기(8530호)

<분류물품>

-교통관제용의 모든 전기식 기기: 철도,호버트레인 시스템, 도로 또는 내륙수로 교통관제 및 항구에 정박해있는 선박 및 보우트와 공항에 있는 항공기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

①철도용 및 궤도용의 기기와 호버트레인 수송시스템용의 기기	②도로·내륙수로 및 주차시설용 장치	③항만설비 및 공항에서 사용되는 전기식의 교통관제용 기기
-신호 및 안전기기 -궤도제어기기	-자동평면교차신호기 -교통신호등	



<제외물품>

- 小部分이 전기식장치와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기계식으로 조작되는 유사한 기기(예: 전기식의 조명장치를 갖춘 기계식 신호기기,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액압식 또는 기압식의 조절기기)는 제8608호에 분류
- 靜止式的 신호는 전기식으로 조명된다고 할지라도(예: 지표로서 사용되는 조명판) 교통관제용의 기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기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해당호에 분류된다(제8310호, 제9405호)
-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기식의 조명용 기기와 신호용 기기: 제8512호

5)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8531호)

<분류요건>

- 제8512호 및 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호에는 신호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
-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 또는 가시적 표시(램프,플래,조명숫자 등)를 하는 것 또한 수동식 혹은 자동식 여부 불문

<분류물품>

- ①전기식의 벨 · 버저 · 도어차임 등
- ②전기식의 음향신호기기 · 호온 · 사이렌 등 : 공업용사이렌 · 공습사이렌 · 선박용사이렌 등이 포함된다.
- ③기타의 전기식 신호기기: 항공기 · 선박 · 열차 기타의 차량용(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은 제외)의 점멸 또는 단속하는 신호등 등이 포함되며, 제8526호의 무선기기 또는 레이다 기기는 제외된다.
- ④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방의 표시기

-수자표시기

-사무실표시기

-승강기표시기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 열차의 발착시각 및 발착 플랫폼음을 표시

-경마장 · 축구경기장 · 보울링 유희장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

이러한 표시반 등의 어떤 것에는 벨 또는 음향신호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정장소 · 도로 · 구획 또는 루우트가 각 특정의 단추를 누름으로써 조명되게 하는 도로 또는 철도의 공공용 지도판 및 전기식의 광고표지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도난경보기

⑥화재경보기: 눈금이 있는 계기 또는 기록장치를 갖춘 유사한 기기는 제90류에 분류된다

⑦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 위험한 가스혼합물(예 : 천연가스 · 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

⑧화재경보기(화재검출기) : 불이 타거나 또는 꺼질때에 계전기를 통하여 경보기가 작동되는 광전지를 갖추고 있다. 전기식의 음향 또는 가시표시의 경보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검출기는 제8536호에 분류된다.



<제외물품>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기식의 조명용 기기와 신호용 기기: 제8512호

-8530호의 교통판계기

-정지식의 신호는 전기식으로 조명되는 것(예 : 램프 · 랜턴 · 조명반 등)일지라도 신호기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해당호에 분류된다(제8310호, 제9405호 등).

-스위치 또는 스위치 패널로서 간단한 표시등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 불문: 제8536호 또는 제8537호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매연 검출기를 갖춘 화재경보기: 제90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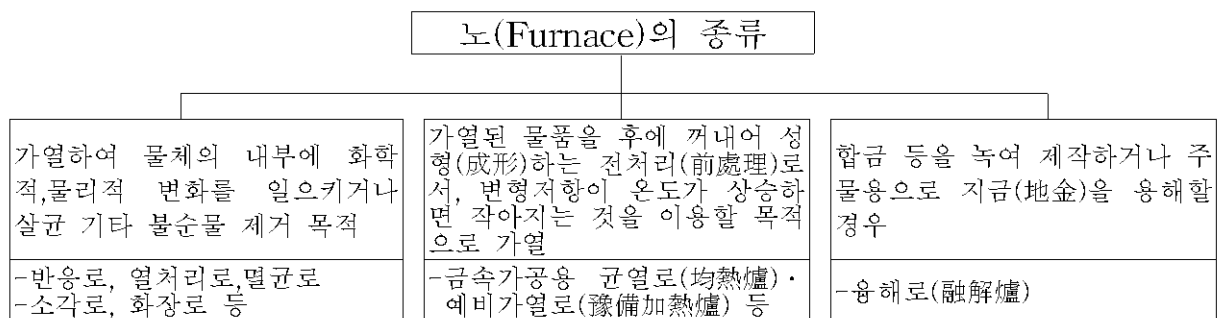
마. 전기식 노와 오븐 등(8514호)

1) 노(Furnace)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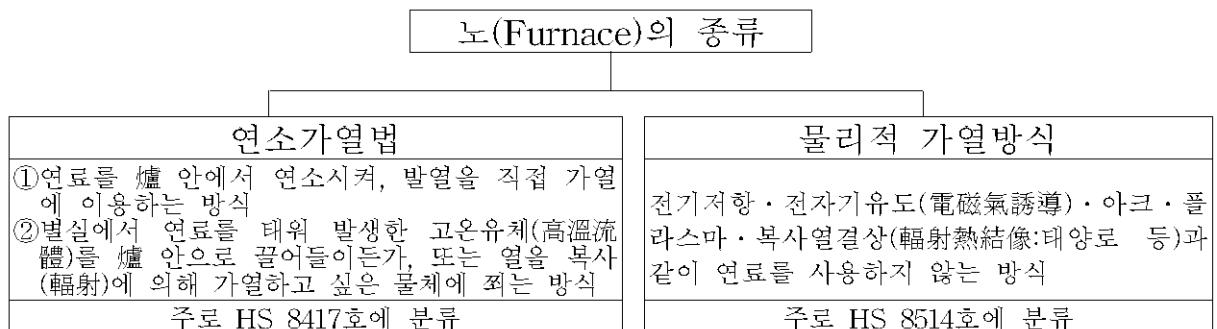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용해로라 한다.

2) 爐와 오븐⁵³⁾의 일반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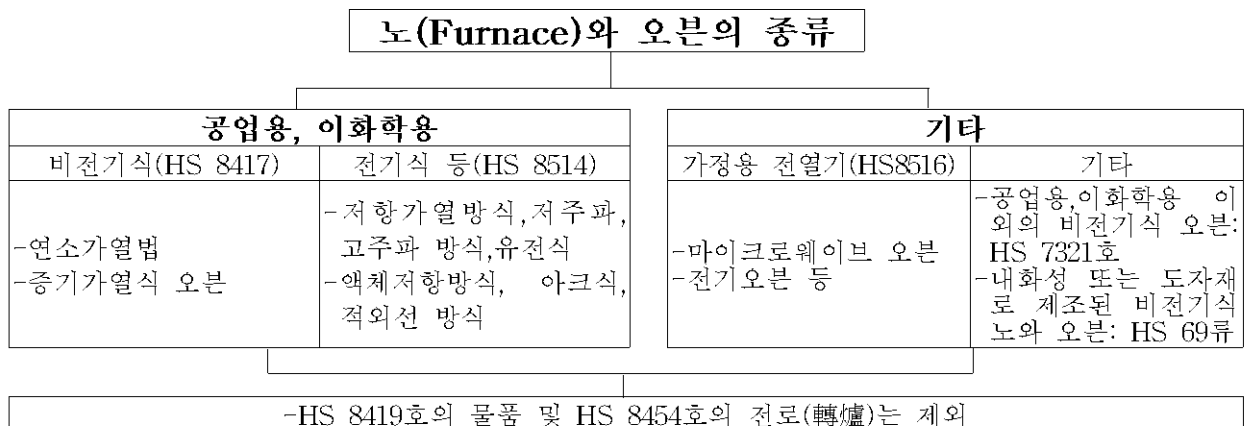
①가열 목적에 따른 분류



②가열방법에 따른 분류



③관세율표상 분류



53) 조리재료를 밀폐한 후 가열하여 건열(乾熱)로 음식을 익히게 설계된 조리기구

3) 8514호의 분류구조

전기식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8514호)

분류물품	제외물품
①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 -저항가열로 및 오븐 -저주파, 고주파 유도로 -유전식 정전용량 노와 오븐 : 이러한 오븐은 플라스틱 등의 건조·해동·주조시에 사용된다. -금속봉 또는 입상물질의 가열용 저항로 -액체저항로, 적외선 방사로 -아크식의 노 : 증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응축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제8419호에 분류 ②전자 유도식 또는 유전 손실을 이용한 기타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가열기 -이 기기(주로 소형물의 열처리에 사용)는 주로 특정한 판 또는 코일을 함께 부착한 고주파진동을 발생시키는 전기장치로 되어 있다. -유도코일을 갖춘 기계: 금속 부분품의 표면경화용 기계, 용해·소결·소둔·소려 또는 금속부분품의 예열용 기계 -축전기(예:관·봉 형상)로 사용하는 전극을 갖춘 기계: 목재건조용 기계, 펄펄트 또는 분상의 재료를 성형하면서 열경화할 수 있게 예열하는 기계	-가정용 전열기기: 8516호 -아크식의 노가 증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응축장치를 갖춘 경우: 제8419호 -건조, 살균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전기식 가열기기: 제8419호 -회전식 변환기 및 고주파 발생기가 분리 제시 되었을 때: 제8502호 또는 제8543호 -전기가열저항기: 제8516호 또는 제8545호 -금속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흑연 또는 기타 탄소계의 전극: 제8545호

바. 납땜 및 용접기기(8515호)

용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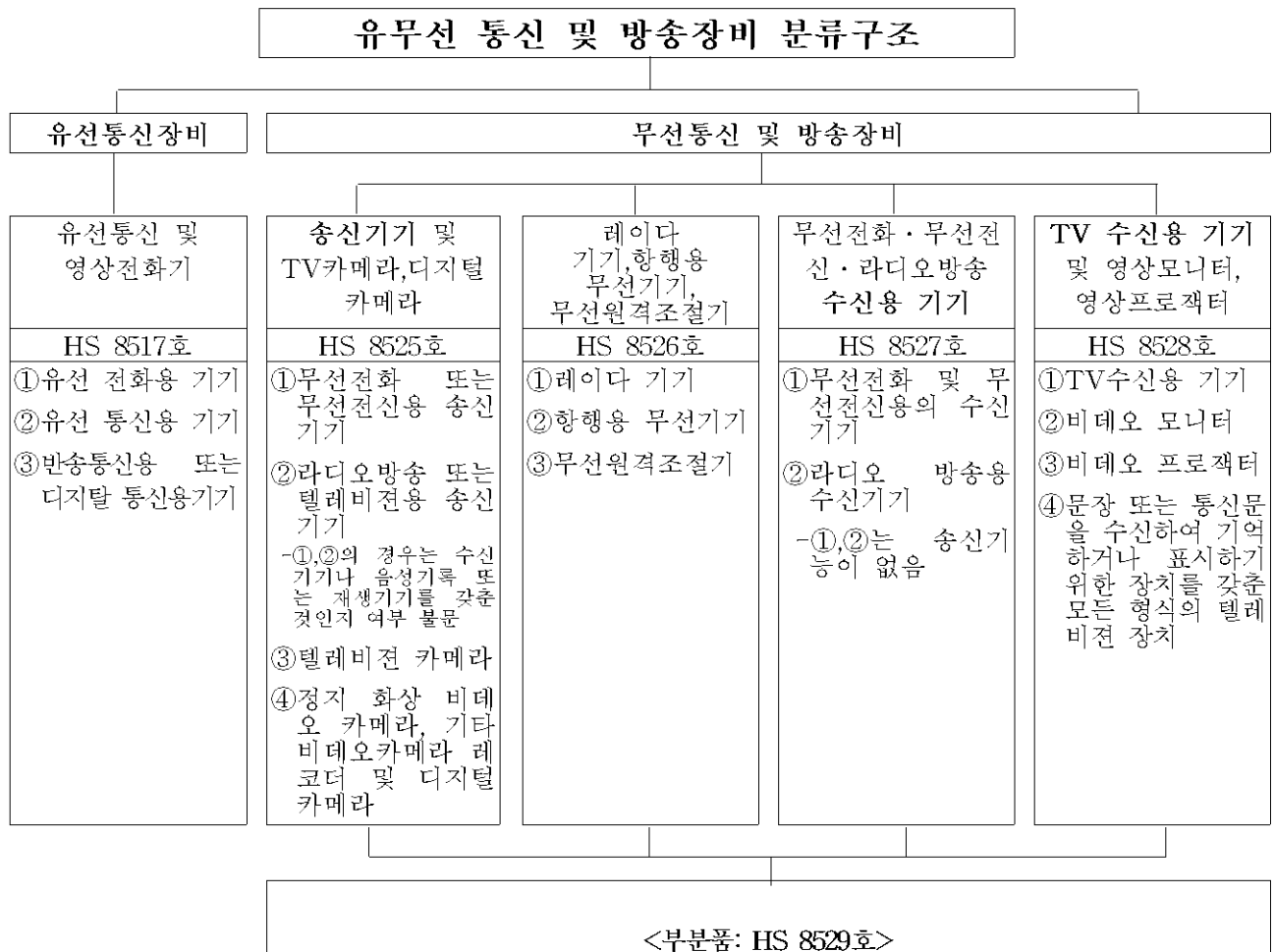
가스 작동식 HS 8468 호	가스 작동식외의 것 HS 8515 호
<분류요건> ①납땜용 또는 용접용기기 -절단가능 여부를 불문(오로지 절단용으로만 설계된 기계는 각각 그 해당 호에 분류) -가스를 사용하거나 8515호의 방식을 제외한 것 ②가스 작동식의 표면 열처리용 기기 <분류물품> ①가스 작동식의 금속가공용 기기 -수동식의 가스 용접기기 -용접용 등의 기계 -표면 열처리용등의 기계 ②가스 작동식의 열가소성 물질의 용접용 기기 ③가스 작동식 이외 용접용 기기 -마찰 용접기 -grooved wheel 또는 heated iron에 의한 용접	①납땜,땜질 또는 용접기기 -전기식·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식 -열가소성 재료의 용접용 기기 ※오로지 절단용으로만 설계된 기계는 일반적으로 8456호에 분류 ②금속이나 서메트의 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전기 아크 기기로서 금속 또는 서메트를 녹임과 동시에 이들을 압축공기로 분사 ③가스식+전기식 겸용 용접용 기기

사. 전기식의 물가열기 및 가정용 전열기기 등(8516호)

전기식 물가열기 및 가정용 전열기기 등(8516호)

분류물품	제외물품
① 전기식의 순간탕비기, 저장식탕비기, 투입식가열기 -가이저(geyser), 저장식 탕비기, 투입식 가열기 -이중식 가열기 : 물이 전기식으로 가열되거나 연료가열식 온수장치에 연결됨으로써 가열된다. -전극형 온수보일러, 온수생산용 전기기기. ② 전기식난방기기 및 토양가열기 -저장식의 전기가열기 : 전열체가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저장열을 활용 -전기식난방기(팬가열기 및 방사가열기) -전기식 라디에이터, 대류식가열기, 가열판 -자동차 · 철도객차 · 항공기 등용의 가열기로서 제상기 및 제무기를 제외한다. -서리의 형성 방지용 철로가열장치 및 특히 토양가열장치로서, 보통 이 전열체는 땅에 묻혀 있다. -엔진히터 :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 밑에 부착하는 것. ③ 전열식의 이용(理容)용기기 및 손건조기 -헤어드라이어, 헤어커얼러 및 전기식의 퍼머넌트웨이브장치, 커얼링용 고대, 손건조기. ④ 전기아이론: 전기 스팀 아이론 포함 ⑤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 ⑥ 전열저항체: 탄소의 전열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 제8403호 -전기가열식의 모포 · 베드 패드 · 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 · 신발 · 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류주1참조). -로울러형 아이론기: 제8420호 -의류 아이론 또는 프레스기: 제8451호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 차 및 밀크탕비기 · 소테남비 및 칩 냄비(예를들면, 칩가게에서 사용하는 것 과,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전열기기): 제8419호 -공업용 마이크로웨이브 노, 오븐 및 기기(예 : 식당에서 사용되도록 고안된 형태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열체를 갖춘 가구(예: 런네르 찬장과 배전차): 제94류 -담배용라이터, 가스라이터 및 이와 유사한 것: 제9613호 -탄소의 전열저항체: 제8545호

아. 유무선 통신 및 방송장비(8517호, 8525~8529호)



무선기기에는 보통 유선전신 또는 유선전화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부분품 (예 : 電鍵·영상송신용의 스캐너)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분품이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제8517호에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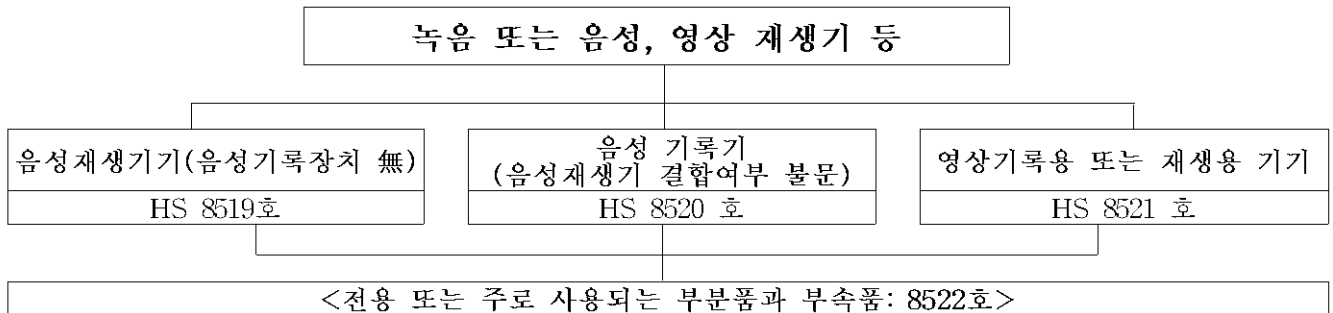
자.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가청주파증폭기 등(8518호)

<분류물품>			
①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마이크(mike)로 약칭하며, 음파를 음성 전류로 바꾸는 장치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전화기의 송화기도 포함된다.  -마이크로폰이 설치되는 대(臺) 또는 장치는 분리 제시되도 마이크로폰과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마이크로폰에 부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인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무선 마이크로폰은 HS 8525호에 분류	②확성기(스피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으로서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하는 기계적 진동음향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정합용 변압기 및 증폭기가 결합된 것도 있음 -구조물,샤시,상자등이 분리 제시되도 주로 확성기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은 이 호에 분류	③헤드폰과 이어폰 -헤드폰과 이어폰  -헤드세트: 머리에 걸치는 것으로서 수화기와 마이크로폰이 세트된 것  -유선전화 핸드세트: 마이크로폰과 스피커가 세트  →헤드세트 형식의 것으로서 유선전화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태아검진용 청취기기: 마이크로폰, 헤드폰, 확성기, 원추형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며, 소리기록장치는 포함되지 않음. 비의료용으로 설계된 것임. 따라서, 의료 및 외과 또는 수의학계에서 전문가용으로 설계 제작된 전자진단기는 9018호에 분류	④가청주파증폭기,전기음향증폭장치 -가청주파증폭기:가청주파수(20~2만Hz)의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장치로서 마이크로폰·픽업·자기테이프 재생 헤드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증폭하여, 스피커나 자기녹음 헤드 등에 강력하고도 충실한 신호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는 개개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분류 -전기음향증폭세트: 마이크로폰,가청주파증폭기,확성기로 구성.

4. 녹음 또는 음성재생용 기기, 영상기록기 또는 재생기(8519~8522호)

가. 관련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519	턴테이블(레코드 턱)·레코드 플레이어·카세트 플레이어와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음성 기록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520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비디오 튜너를 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2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나. 음성재생기기(HS 8519호)

<분류물품>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모든 음성재생장치				
①턴테이블  -음향장치 또는 음성증폭장치 無	②레코드 플레이어  -음향장치와 음성증폭장치 有	③카세트 플레이어등  (transcribing machine)	④영화용 음성재생기 -자기처리장치와 결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전광식으로 작동하는 것	⑤전화응답기 -음향기록장치에 의해 미리 기록된 전언을 송신함으로써, 전화기에 접속하여 작동(전화기와 일체 구조가 아님)



<제외물품>
-전화기와 일체를 구성하는 전화응답기: 제8517호 -음성기록기기를 장치한 전화응답기: 제8520호 -제8524호에 해당되는 음성기록용 기록매체(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 불문).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 제8527호 또는 제8528호

다. 녹음기와 기타 음성기록기(HS 8520호)

<분류물품>	
-음성재생장치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 불문	
①음성기록기기 -음구(音溝)식의 것 · 음구: 영화 필름의 가장자리에 있는, 음성이 녹음된 부분. 사운드 트랙. -자기식의 것 -영화용 음성기록기기: 음성을 광전식으로 기록 -영화용의 재녹음기기: 자기적으로 녹음된 사운드 트랙을 광전식으로 재녹음하는 데 사용	②복합된 녹음기 및 재생기기: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장치를 결합 -테이프 녹음기 또는 카세트 녹음기 -딕테이팅 머시인 -전화응답기: 전화응답기는 전화기와 접속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단, 전화기와 일체를 구성하지 아니함)되어 있어서, 전화가입자에 의하여 미리 기록된 전언을 송신하도록 하고, 때로는 전화호출자가 남긴 전언을 녹음되도록 한다 -음성자동식 마이크로프로세서 Diary-organizer: 프로그램된 모임 등의 신호가 사용자 자신의 음성에 의해 특정되어지는 일·시(日·時)에 자동으로 발생



<제외물품>	
-전화기와 일체를 구성하는 전화응답기: 제8517호 -음성기록장치를 결합하지 않는 전화응답기: 제8519호 -제8524호에 해당되는 음성기록용 기록매체(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 불문).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 제8527호 또는 제8528호	

라.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HS 8521호)

<분류물품>	
-비디오 튜너 결합여부 불문	
①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②재생기기: 단지 영상과 음성을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하도록 설계제작



<제외물품>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에 해당하는 기록용 매체(당해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 불문) -텔레비전용 수신기기와 비디오 모니터와 비디오 프로젝터: 제8528호	

마. HS8519~8521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HS 8522호)

<분류물품>	
①픽업 카트리지는: 픽업은 레코드에 새겨진 기계적인 음성진동을 전기신호의 형태로 재생하는 장치로서 카트리지와 그것을 유지하는 톤암(tone arm)으로 구성된다. 카트리지는 레코드의 음구(홈)에 맞추어 움직이는 바늘의 진동에 따라 전기를 발생하는 일종의 기계전기 변환기이다.	
②레이저 광학식 판독장치	
③자기형 또는 광전식 사운드 헤드	
④테이프를 감거나 푸는 기계	
⑤턴테이블용 톤 아암과 테이블	
⑥축음기의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장착여부 불문)	
⑦레코드 커터: 음향진동을 기계적으로 변환시키고 음구(音溝)의 형을 변형	
⑧특별히 설계제작된 가구	
⑨자기헤드를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카세트(세정용액과 세트 포장 여부 불문)	
⑩자기 소거용 헤드,비디오 신호 기록용 헤드 드럼 등 전용부품과 부속품	



<제외물품>

- 스푸울 · 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마그네틱테이프가 감겨있지 않은 비디오 및 오디오 카세트: 그 구성재료에 따라, 예를 들면, 제39류 또는 제15부에 분류
- 녹음기 또는 재생기용의 전동기로서 그러한 녹음기 또는 재생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것: 제8501호
- Synchronisation table위에서 frame viewer와 함께 사용되는 사운드헤드를 부착한 장치: 제90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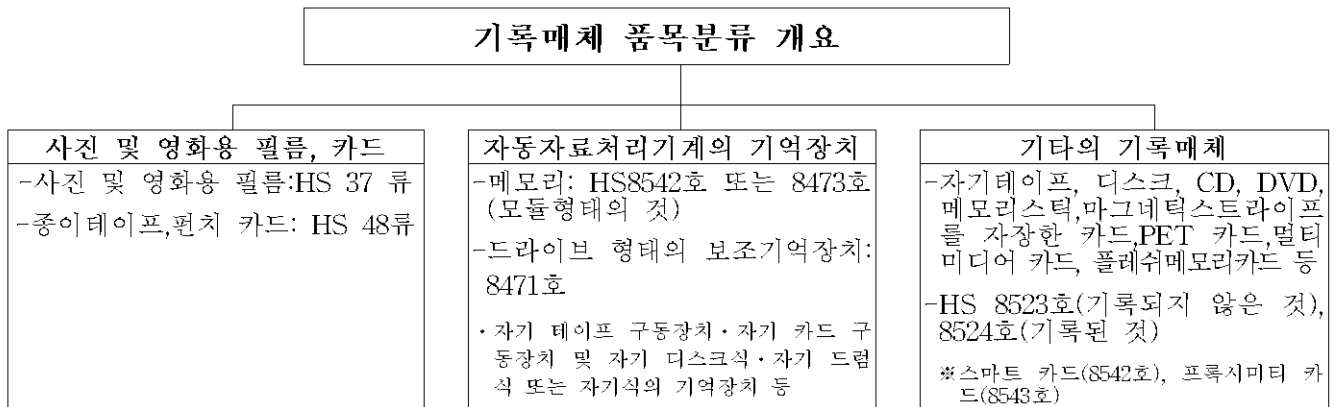
5.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유사 기록물용 기록매체(8523~8524호)

가. 관련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523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기록이 안된 것에 한하며 제37류의 물품 제외)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 · 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나. 분류개요

1) 기록매체의 품목분류 개요



2) 기록매체 세부 분류기준(85류 주6)

가) 기록매체가 사용기기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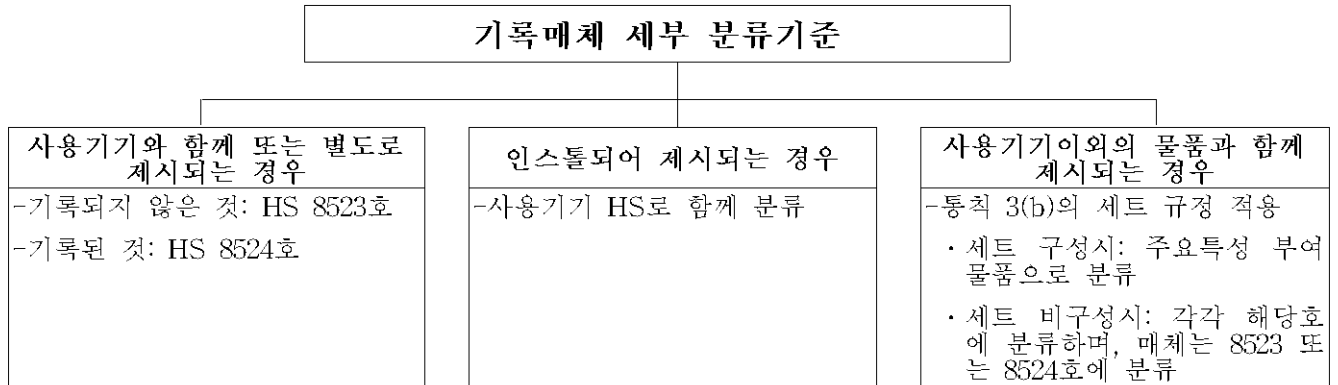
-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매체 : 제8523호
-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매체 : 제8524호

나) 사용기기에 인스톨되어 제시되는 경우: 사용기기 HS로 함께 분류

다) 사용기기이외의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 통칙 3(b)의 규정에 의한 Set를 구성하는 경우: 주요특성을 부여하는 물품과 함께 분류

- 통칙 3(b)의 규정에 의한 Set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매체는 HS 8523 또는 8524호에 분류
- 상기한 분류기준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

가. 관련호의 구조

HS	호의 해당
8532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축전기
8533	전기 저항기(가감 저항기와 전위계차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
8534	인쇄회로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 억제기·플러그·접속함) 다만, 전압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홀더·접속함) 다만,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39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 램프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자관(예 진공관·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 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8545	탄소전극·탄소부러쉬·램프용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나. 인쇄회로, 능·수동소자와 집적회로

인쇄회로, 능·수동소자, 집적회로								
인쇄회로		수동소자				능동소자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HS 8534 호		인덕턴스	축전기	저항기	접촉자등	HS 8541 호		HS 8542 호
		8504호	8532호	8533호	8535호 8536호	-다이오드, 트랜지 스터 등		

다. 전기회로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HS 8535 ~ 8536호)

전기회로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

부분품: 8538호

HS 8535호(1,000볼트 초과)

HS 8536호(1,000볼트 이하)

①전기회로 개폐용 기기

-개폐기

- 로타리 스위치 · 푸쉬버튼 스위치



- 마이크로 스위치: 전기접점(電氣接點)의 스프링 부분을 합성수지 속에 묻히게 한 초소형의 미소 전류용의 스냅 스위치
- 토글스위치



- 마그네트 스위치: 전자석의 동작에 의하여 개폐되는 스위치

-절환 스위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선로에 접속시키는 데 사용. 전동기의 시동용 스위치, 전동차용 제어장치 등

-계전기(Relay):일반적으로 전기회로를 개폐(開閉)하는 조작을 다른 전기회로의 전기적(電氣的)인 세력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행하는 장치

-기타의 접속기 및 터미널,터미널 스트립

㉠dominoes: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Terminal: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



<링 터미널>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등):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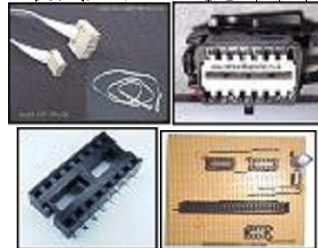
②전기회로 보호용 기기

-퓨즈: 예정되지 않은 이상한 전류가 흐르면 발열 때문에 용단하여 회로를 열어서 기기를 보호하는 소자

-피뢰기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장치(예 :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자식의 장치)

- 소켓(잭): 주로 고정설비에 부착



- 램프 홀더



③전기회로 접속용 기기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한 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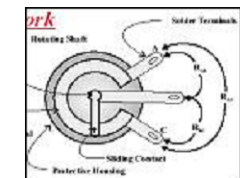
-플러그,소켓(잭) 및 기타 콘택트

- 플러그 및 소켓: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속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이상의 핀 또는 측면 접속자를 갖고 있다.

- 플러그: 주로 케이블에 연결



- Sliding contact



(overhead 및 current-collector)



-접속함(Junction Box)



(Spade터미널)(crocodile 클립)

㉣터미널 스트립:전기배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약간의 금속 터미널 또는 접속기를 갖춘 대상(帶狀)의 절연재료로 됨



(터미널 스트립) (태그 스트립)

라. 전기 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등(HS 8537호)

<분류요건>	
-전기회로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2가지 이상을 보드, 패널, 콘솔 등 위에 조립한 것 및 캐비넷, 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 진공관,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등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분류물품>	
①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 제어반 : 공작기계 제어용	
<NC 공작기계 구조>	
②기기 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	
③프로그램 가능 제어기기	
<제외물품>	
①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9032호	
②전화용 스위치 보드: 8517호	
③타임스위치: 9017호	
④두개의 스위치 및 연결자로 구성된 단순 스위치 조립품: 8535호 또는 8536호	
<부분품: 8538호>	

마.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 램프와 아크 램프(HS 85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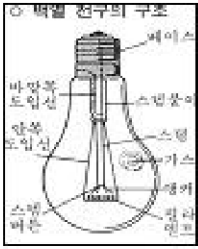
가) 조명, 신호용 기구 및 램프의 분류구조

조명, 신호용 기구 및 램프의 분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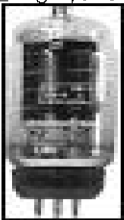
자동차, 자전거용 (8512)	휴대용 램프(8513)	신호등 및 시각신호용기기 (8530,8531)	램프(8539)	조명기구(9405)
◇분류요건 -자동차용,자전거용 ◇기기종류 -각종 헤드램프 -미등,측등,정지등,등록 판등 -브레이크등,방향지시 등등 -내부조명등 -택시표시등 신호기	◇분류요건 -자장된 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전지 램프 ◇기기종류 -포켓 램프 -기타 휴대식 램프 -모르스 신호용 램프 -광부용 안전등 -보석공 등이 사용하는 시험용 램프	◇8530호 분류요건 -정지식 신호가 아니어 야함.(8310,9405) -신호등,점멸등 ◇8531호 분류요건 -정지식 신호가 아니어 야 함.(8310,9405) -항공기,선박,열차등의 점멸,신호등 표시반: 지도판이나 전기식 광고표지판은 제외	◇여러가지 형상의 유 리제나 석영제의 용 기로 구성된 전구 ◇필라멘트,방전,적외 선 및 자외선, 아 크램프	◇램프와 조명기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각종의 광원(양초,기름, 석유,가스,전기등) 사용 -램프홀더,스위치,플 러그등이 부착 -열차,선박,항공기용 -서치라이트,스포트라 이트 ◇조명용 사인,조명 용 네임플레이트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 -광고용 판,광고용 램프

☞ 일반적으로 8539호에는 9405호 조명기구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전구 형태의 것이, 9405호에는 가구의 일부로서 사용가능토록 제작된 형태의 조명기구가 분류됨.

나) 8539호 램프의 종류

실드램프 램프 유니트	기타 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자외선, 적외선 램프	아크램프
-가스를 넣었거나 또는 진공형 램프 내측에 렌즈, 반사경 및 필라멘트가 밀봉되어 있음. 	-필라멘트에 전류를 통하여 백열이 될 때까지 가열시킴으로서 발생  -할로겐 램프 포함:봉입 가스에 미량의 할로겐 족 가스를 첨가한 백열 전구 -자외선, 적외선 램프는 제외	-전극을 갖춘 구에 방전작용에 의해 발광되는 가스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저압상태로 봉입하여 만든 것으로서 형광램프가 대표적임. -종류 · 가스방전관 · 나트륨 램프 · 수은 램프 · 가스입 이중램프 · 메탈할라이드 램프	-자외선 램프: 의료용,이화학용,살균용, 기타의 목적 · back light lamp: 연극에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 -적외선 램프: 적외선을 발생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필라멘트 램프 · 의료용 또는 공업용의 가열원	-빛은 아크, 또는 아크를 유지하는 전극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백열에 의하여 발생되며,전극은 일반적으로 탄소 또는 텅스텐으로 되어 있다. -즉,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아크의 발광을 이용한 등.
<제외물품> -형광램프 점등용의 자동식 열전기 개폐기(starters): 제8536호 -열전자관: 제8540호 -아크 램프용의 탄소 및 탄소제 필라멘트: 제8545호 -사진용 섬광전구: 제9006호				

바.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HS 8540호)

<전자관(electron tube)의 개념>			
-기밀용기(氣密容器) 속에서 또는 증기라는 매질(媒質)을 통하여 전자가 운동함으로써 전기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한 전자장치 -정류·증폭·발진·변조·복조(검파) 등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전자회로의 능동소자(能動素子) -전자관은 기밀용기 속에 전자를 방출하는 음극, 여기서 방출되는 전자류(電子流)를 제어하는 제어 전극 및 전자를 다시 모으는 양극을 가지고 있다. -방출 전자류는 열전자(熱電子)·광전자(光電子)·냉음극(冷陰極) 방출 등에 의하여 얻어지며, 진공 속에서 열전자 방출음극을 사용한 것이 진공관이며 광전자 방출음극을 가진 것이 광전관이다. 낮은 기압의 가스를 열전자나 냉음극방출로 얻어진 전자로써 이온화하여 그 이온의 흐름을 이용한 것이 방전관이다. 음극선관은 전자류를 좁은 단면적을 갖도록 쪼여서 빔상태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다.			
<정류관>	<음극선관>	<광전관>	<기타의 관>
-교류전력에서 직류전력을 얻기 위해 정류작용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전기적인 장치로서 -양극에 양(陽), 음극에 음(陰)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만 전류가 흐르며, 반대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정류기이다. -방전관과 진공관이 있으며, 열전자(熱電子)를 방사하는 음극과 이 전자를 받는 양극으로 구성.	-TV촬상관: 통상 주사법에 의해 광화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전자빔관 -像변환관: 진공관으로서 그 안에 어떤 상이 광전음극면에 투영되며, 광전음극관은 형광면에 가시상을 비춰준다. -像증강관: 전자관으로서 그 안에 있는 광전음극면에 투영된 상이 형광면에 적절히 증강된 상으로 비추어 준다. -기타 음극선관: 전기적 신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으로 변환하는 관 ※CRT에 대한 별도 아래 설명 참조	-물체가 빛의 조사(照射)를 받을 때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한 진공관. -사진전송, 화재탐지기, 자동문, 도난경보기, 제품의 빛깔 검사, 화학변화에 의한 변색의 측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빛을 받아 광전자(光電子)를 방출하는 음극과 광전자를 모아 광전류로 하기 위한 양극으로 되어 있다.	-통상 진공관식이나, 어떤 것은 몇 개의 전극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고주파발진용으로 사용되며, 증폭기, 검파기, 주사변환기(광전관의 사용 없이) 등으로 사용된다
			

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HS 8541호)

<분류물품>		
①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 단자 또는 導線을 장착하여 밀봉시킨 것,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Element), 소편으로 절단되지 않은 디스크상(웨이퍼)의 것 포함 • 28류: 실리콘이나 셀레늄을 인발(drawn)로 가공하지 않은 것, 실린더상의 것 또는 로드(rod)상의 것 • 3818호: 28류의 원소를 도프처리한 것(디스크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낮은 비율로 특정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는 화학화합물(형상 불문) -다이오드: 2단자 소자로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보내나 역방향으로는 고저항이 발생하여, 검파용,정류용,개폐용 등으로 사용됨  -트랜지스터: 3단자 또는 4단자 소자로서 전류를 증폭,발진,주파수변환 또는 스위칭용으로 사용됨.  • 트랜지스터에는 이미터와 베이스 그리고 콜렉터라고 하는 3개의 단자가 있으며, 베이스는 수도의 밸브, 콜렉터는 수도꼭지, 이미터는 수도배관에 비유할 수 있음. 수도 밸브를 작은 힘(베이스의 입력신호)으로 콘트롤하여 수도꼭지에서 물의 양(콜렉터 흐르는 전류)을 조절.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 다이리스터(Thyristor): 제어 정류기, 스위치,증폭기로 사용됨. 공통 콜렉터/베이스 접합을 갖는 2개의 연동하는 상호 보완형 트랜지스터로 기능. • 트라이악 • 다이악 • 바랙터(가변용량 다이오드) • 전계효과형 소자 • 건효과형 소자	②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起電力(전류를 일으켜 전기 회로에 흘려 보내는 작용)을 발생 • 외부 광전효과를 이용한 광전관은 8540호에 분류 -광전도셀: 두 전극사이에 반도체 재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반도체 재료의 전기저항은 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 • 광전도소자라고도 하며, 빛의 변화를 전기의 변화로 변환(광전변환)하는 데 사용된다. 광전도재료로 만들어진 저항체에 정전압(定電壓)의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흐르게 해 두고, 이 저항체에 빛을 비추면 저항이 감소되어 전류가 증가하며, 광량(光量)을 전기량으로 바꿀 수가 있다. • 화염검출기,자동카메라용 노출계,移動物의 계수용, 자동정밀 측정 장치용,자동문 개폐장치 등에 사용 -광전지: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여부 불문. • 태양전지: 다른 소자를 부착한 패널 또는 모듈은 8501호에 분류 • 포토다이오드 • 포토카플 및 포토릴레이: 포토다이오드,포토틀랜지스터 또는 포토다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	③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발광다이오드: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제어장치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 데 사용되며, 레이저 다이오드도 포함.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재료: 티탄산 바륨 또는 로셀염, 타르타르산에틸렌디아민,암모늄·루비듐 또는 세슘의 오르토인산염 및 이들의 혼합결정 또는 지르콘산티탄염, 메타니오브산염, 지르콘산 스트론튬 티탄염, 티탄산 칼슘등의 결정과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 • 상태:판,봉,원판,환 등의 형태로서 최소한 전극 및 전기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부착되지 않은 엘리먼트 상태의 것은 재료에 따라 분류(3824,7103,7104호 등) • 제외: 기타 구성요소 부가로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

☞광디바이스 [opto devices]: 빛을 내거나 받음으로써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소자(素子)로서 크게 3가지로 나눈다. ①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전기에너지로 빛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광표시소자·레이저 등 발광소자(發光素子)와 ②빛을 받아서 그것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포토다이오드와 포토트랜지스터 등 수광소자(受光素子) 및 ③이들 2가지의 중간에서 빛을 변조하거나 혼합하는 광전관이나 광전자 증배관(倍增管)등 광전변환소자(光電變換素子)가 있다.

아. 전자 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HS 8542호)

가) 집적회로 개념 및 분류기준

구분		내 용
집적회로	개념	<관세율표> -수동 또는 능동소자나 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디바이스이며, 단일 유니트로 간주되는 것이다. 수동소자로만 구성된 회로는 제외 <백과사전> -많은 전자회로 소자가 하나의 기판(基板:substrate) 위 또는 기판 자체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초소형 구조의 기능적인 복합적 전자소자 -집적회로는 혼성집적회로(混成集積回路:hybrid IC)와 모놀리식집적회로(monolithic IC)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혼성은 박막(薄膜:thin film) 혼성집적회로와 후막(厚膜:thick film) 혼성집적회로로 나눈다.
	종류	<모노리딕 집적회로> -관세율표상 개념: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백과사전상 개념: 칩(chip) 또는 다이(die) 위에 전자회로를 형성시켜 만들며, 이들 칩에 들어 있는 개개의 회로 소자수는 소규모 집적회로(SSI)에서는 약 100개 미만, 중규모 집적회로(MSI)에서는 100~1,000개, 대규모 집적회로(LSI)에서는 1,000~10만개, 그리고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에서는 10만개 이상이다. -스마트 카드: 칩형태의 하나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자장한 것. 2이상의 전자 집적회로를 자장한 것은 8543호 프록시미티 카드로 분류 <혼성집적회로> -관세율표상 개념: ①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②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딕 집적회로 등)를 ③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소자는 이론상은 제거하고 대체할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제조 상태 하에서는 비경제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이다. -백과사전상 개념: 막(膜)집적회로에 반도체소자와 개별적 수동회로(受動回路) 부품을 합쳐서 전자회로를 구성시킨 것이며, 막집적회로는 절연성기판 위에 박막 또는 후막의 형태로 여러 개의 회로소자(주로 수동회로소자)를 형성하고, 이들 소자 사이를 막으로 접속시켜 회로를 이루게 한 것이다.
	제외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된 막회로: 8534호 -혼성집적회로로서 분리 가능한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 ·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를 구성하는 것: 당해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 · 기타의 조립품: 16주 주2 (b), (c) 규정 적용

<막회로 기술>

구분	내 용
박막회로 (Thin Film)	기판위에 진공증착법이나 화학적 방법 등(PVD,CVD)에 의해 막을 형성한 후 마스크를 사용하여 또는 식각방법을 통해 패턴을 형성하는 회로
후막회로 (Thick Film)	孔版인쇄방식인 스크린 인쇄[비화전부(非畫線部)가 되는 부분을 형지(型紙) 또는 아교재(材)로 덮어씌운 다음, 그 위에서 잉크를 부여하면 화전부(畫線部)에만 잉크가 스크린을 통하여 인쇄되는 방식]에 의해 패턴을 형성한 후 판을 가열하여 만든 회로

나) 전자 초소형 조립품 개념 및 분류기준

구분		내 용
초소형 조립 회로	개념/ 기준	-초소형조립품은 초소형화된 별개의 능동부품 또는 별개의 능동부품 및 수동부품을 조립 또는 상호접속시켜 만들어진 것이다. -별개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전자 구성부품으로서, 단순능동 전기기능(제85류 주5(A)에 정의된 반도체다이오드)또는 단순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종류	-주형 모듈 -마이크로 모듈

자. 탄소전극, 탄소브러쉬, 램프용 탄소, 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HS 8545호)

<분류요건>					
-형상·치수 기타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					
①탄소전극	②탄소 브러쉬	③램프용 탄소	④전지용 탄소	⑤마이크로폰의 탄소제 부분품	⑥기타 흑연 또는 탄소제품
-爐用 전극 -용접용 전극 -전해용 전극 등	-전동기용 등의 슬라이딩 자, 전기기관차 등의 집전자 등으로 사용 -3801호 탄속의 블록 또는 판으로부터 절단 제조 -흑연으로 된 외부 윤활층을 도포한 금속브러쉬는 제외	-보통 봉 또는 연필 형상 -전기저항 램프용의 탄소필라멘트도 포함	-봉, 판, 관 등의 형상	-원판(disc)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	-노용 탄소를 함께 접속하기 위한 접속편(nipple) -정류관용 양극, 격자,스크린 -전열저항체: 봉, 바아등의 형상으로 각종 전열기에 사용 -자동전압조정기용의 원판상 및 판상의 저항체 -탄소제의 기타 접촉자 또는 전극

<제외물품>	
-분상 또는 입상의 흑연 또는 기타 탄소: 38류	

7.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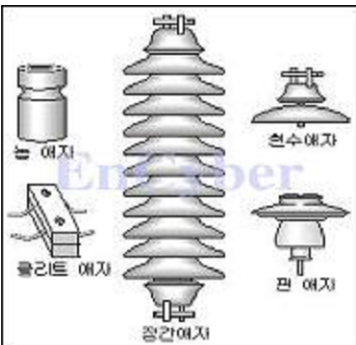
가. 관련호의 구조

HS	호의 heading
8544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8546	애자(재료의 종류여부를 불문한다)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판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낸 것에 한한다)

나. 절연전선·케이블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및 광섬유 케이블(HS 8544)

<분류요건>			
-물품유형: 전기기기 등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 케이블, 기타 도체(braid, strip, bar),비금속 도체도 포함 -구성요소: 도체, 피복 절연재료(전류의 누설 및 도체의 손상 방지), 경우에 따라 금속 외장 또는 armor(지하,해저 케이블 보호 목적) -절연전선 및 케이블 유형: 단선 또는 연선, 둘 이상의 선을 함께 꼰 것, 절연 외장내에 둘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 -비(非)금속 도체도 포함 -접속자 등이 부착된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케이블등도 함께 분류: 각 기기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길이로 제작된 것			
<케이블 유형>			
①동축케이블(Co-axial cable) -긴 원통 모양의 외부도체(外部導體)와 그 중심축에 놓인 1개의 내부도체로 이루어진 데이터통신에 사용되는 전송선로로서 선로의 단면을 보면 외부도체와 내부도체가 동심원(同心圓)을 이루고 있다 	②광섬유 케이블  -하나 이상의 광섬유 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은 9001호에 분류	③기타 전기도체 -통신용: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 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과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2002-1회; 품목분류47281-865; 02.10.7)	-전력용 등: 통신용을 제외한 전기도체

다. 애자 (HS 8546)

	-전류의 도체를 고정·지지 또는 안내하는 한편, 동시에 도체를 다른 도체 또는 대지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사용
---	--

라.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 용 도판과 그 연결구류 (HS 8547)

<분류물품>

①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것
-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
- 스위치용 · 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 · 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 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대 및 도미노(dominoes) · 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접화플럭의 본체
-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 · 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07호).

②비금속제의 전선용 도판과 그 연결구류

- 절연재료의 내장을 조건으로 전선을 절연 및 보호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전기설비(예 :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금속제의 관이 포함된다. 절연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관은 때때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15부).
- 이 호에 속하는 관의 접속에 사용되는 연결구류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결구류는 절연재료로 도포 또는 내장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예 : 직관연결구 · 엘보우(elbow) · T형연결구 및 cross-overs).
- 관은 절연재료제의 내부관 위에 금속제의 대가 나선상으로 감겨졌거나 또는 절연재료를 내측에 도포 또는 내장한 단단한 금속제의 관(보통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부가 절연재료(예 : 고무 · 플라스틱재료 · 편조한 섬유제의 직사 또는 유리 섬유의 사)로 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제8546호의 애자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8. 기타의 전기기기 및 전기 부분품

가. 관련호의 구조

HS	호의 해당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HS 8543호의 분류체계

<분류요건>	
①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물품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
②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예) 오존발생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제습기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 예) 재봉기와 결합되어 실을 끊어주는 체인커터 - 다만,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당해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 내연기관용 기화기(기화기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HS 8409호의 엔진 부분품으로 분류), 기계식 또는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
<분류물품>	
①입자가속기: 엑스선 발생 입자가속기는 9022호	
②신호발생기: 신호를 지정 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 내는 기기. 임펄스 발생기,패턴발생기, Wobblers(스윙발생기)	
③탐광기(Mine detector): 금속탐지기 포함	
④음성을 먹싱하는 기기: 영화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은 9010호	
⑤소음감쇠기	
⑥전기저항체를 제상기 및 제무기: 자전거용 및 자동차용의 것은 8512호	
⑦Synchronisers: 수개의 발생기로부터 한 개의 공통회로에 給電될 때 사용	
⑧광산용 전기식 폭파기	
⑨고주파 또는 중간주파 증폭기(계측 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 포함)	
⑩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 영동용 기기: 9027호의 전기 영동용 기기는 제외	
-전기 영동용 기기: 전기 영동은 전장내에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임으로서 서로 분리되는 것이다. 전압차가 전기 영동 매체를 통해 형성되면 음전하를 띤 입자는 양극(ANODE)으로 이동하고 양전하를 띤 입자들은 음극(CATHODE)으로 이동	
⑪일반 공업용 자외선 조사기기	
⑫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 발생 및 확산 기기	
⑬전자 뮤지컬 모듈: 손목시계나 인사용 카드등에 결합	
⑭프록시미티 카드: ROM을 내장한 집적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인쇄된 안테나를 부착한 것으로 버스카드가 대표적임.	
-1개의 전자집적회로로 구성된 스마트 카드는 8542호에 분류. 8543호 프록시미티 카드는 2개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로 구성됨.	
⑮반도체 재료 도핑용 이온 주입기	
⑯일렉트릭 팬스 에너지이저 등	

나. HS 8548호의 분류체계

<분류물품>

①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 제조 과정 중에 나온 웨이스트로 인정되는 것 또는 파손·절단, 소진 등 기타의 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한 일차전지 및 축전지 또는 재충전 할 수 없는 것과 이들의 스크랩(85류 주 7)
- 일반적으로 금속(납, 니켈, 카드뮴 등), 금속 혼합물 또는 슬래ק을 회수하기 위한 가공용으로 사용
- 수명이 끝난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전해액이 제거되어 있으며, 사용했다는 표시가 있다.

②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다음 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기기류의 모든 전기식 부분품이 포함
 - ㉠ 특정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 이 류의 전호에 포함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 1에 의하여 제외되는 물품
- 특정한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가 아닌 기계류의 전기식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과 전기적인 접속자·절연부분·코일·접속자 또는 기타 특히 전기소자를 갖춘 물품이 포함된다